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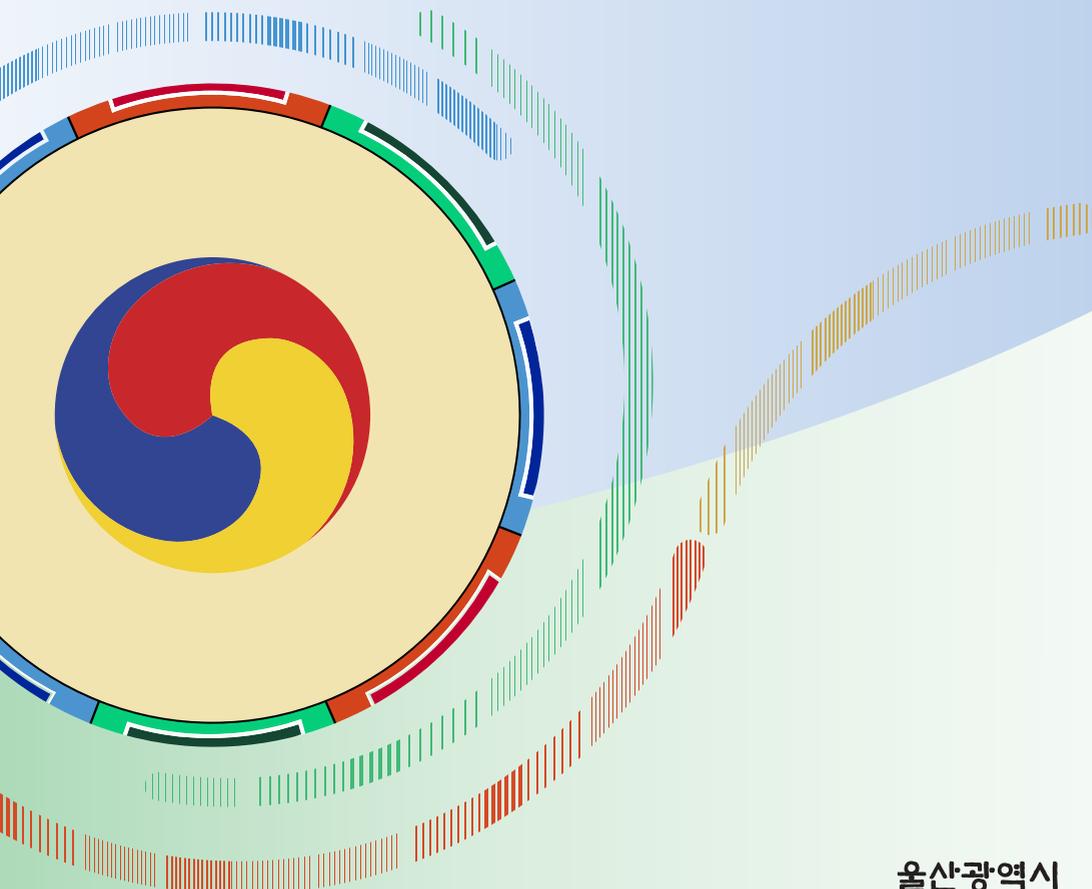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57-6310000-000643-09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시민신문고위원회
시민의 고충해결과 권익향상이
우리의 사명과 보람입니다



2020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보고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발간사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는 2018년 9월 10일 울산 시정(市政)에 있어 처음으로 “시민의 권익 구제를 최고의 가치”로 하여 출범한 우리시 최초의 고충민원 해결 전담기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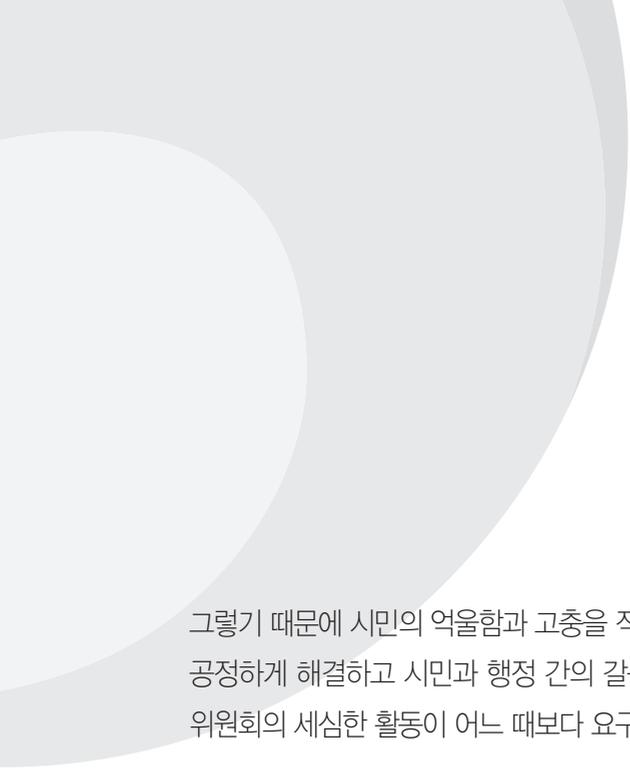
시민들이 몰라서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놓치는 권리가 더 이상 없도록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 어디든지 한걸음에 달려가서 시민의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해 온지도 이제 3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출범 1~2년차는 양적성장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면, 지난 2020년 3년차는 질적성장을 이루며 진정한 시민의 소통기구로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0년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총 156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108건을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직접 조사·처리 하였으며, 24건을 상담안내하여 처리하였고, 그 외 해당부서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한 민원에 대하여 24건을 이첩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2021년에도 여전히 녹록치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과 대내외적 요인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민의 작은 소리와 침묵으로 말하는 고충은 자칫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억울함과 고충을 직접 찾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경청하며 공정하게 해결하고 시민과 행정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본연의 기능으로 하는 신문고 위원회의 세심한 활동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에 이은 세 번째 보고서로 2020년 한 해 동안 신문고위원회의 운영상황과 함께 접수된 민원에 대한 분석 및 해결사례 등을 수록 한 것으로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여러분께 공표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문고위원회는 우리의 최고 가치인 “억울함이 없는 시민의 고충해결”을 위해 해당 부서의 입장과 규정에 갇히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와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며 대안을 찾는 진정한 시민의 대변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차 태 환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CONTENTS

I

총평

06

II

위원회 운영 개요

1. 2020년 주요 활동	13
2. 위원회 구성 현황	14
3. 위원 자격 및 현황	15
4. 위원회 직무권한 및 기능	17
5. 고충민원 처리절차	22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울산시민의 변호인입니다

III

위원회 운영 성과

1. 시민이 체감하는 고충해결과 권익향상 활동	31
2.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 전개	35
3. 명예민원상담관 운영	45
4. 금융민원상담관 운영	46
5.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	47
6. 고충민원처리 역량 강화	48
7.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협력	49
8. 제2회 시민신문고의 날 개최	50
9. 국민참여예산 집행현장 모니터링 방문	51

IV

주요 처리사례

1. 고충민원 처리현황	55
2.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결과	179
3. 기획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214

V

참고

1. 주요 언론 보도사례	237
2. 시민이 바라는 시민신문고 “시민신문고에 바란다”	246
3.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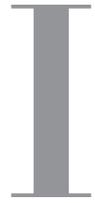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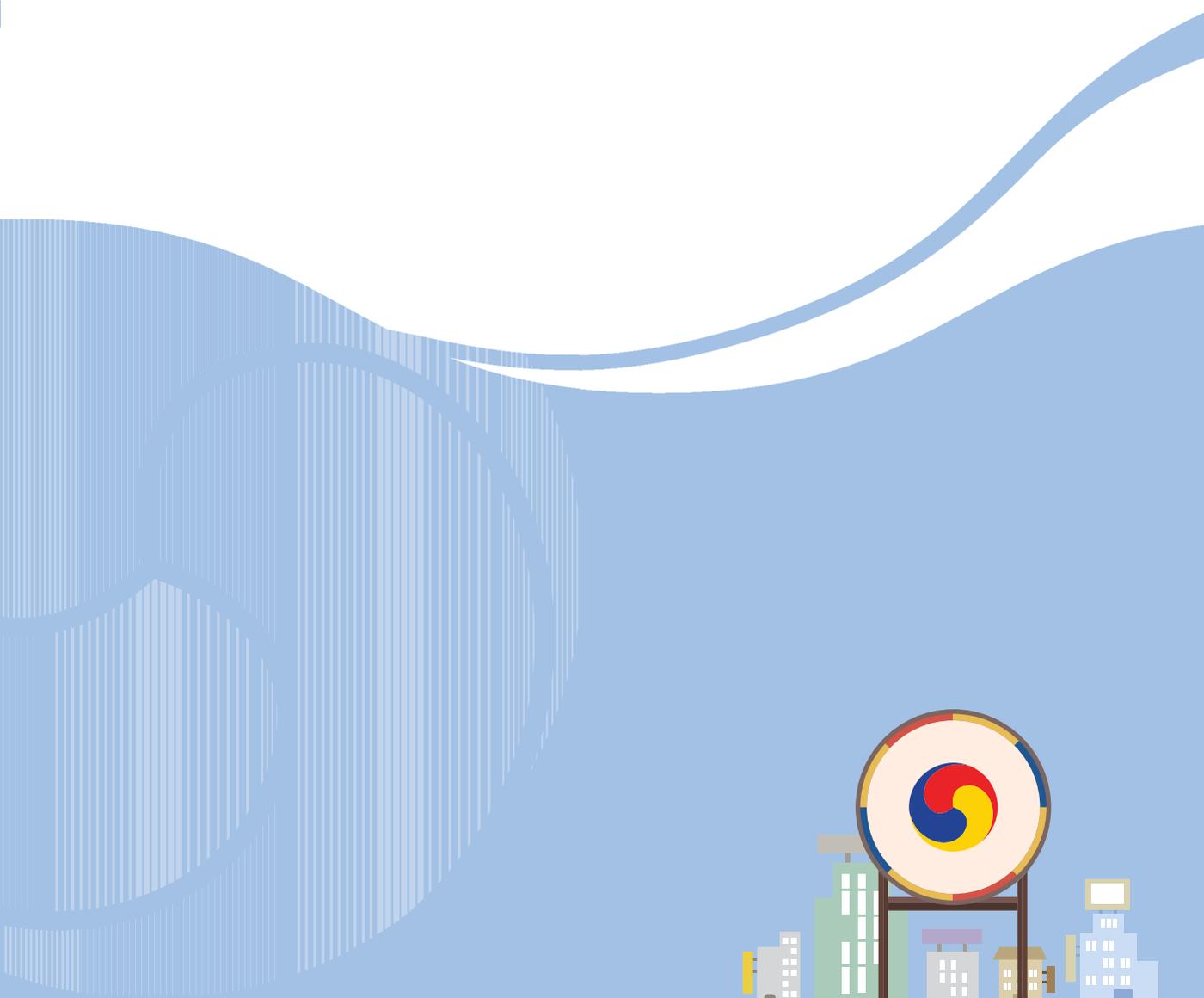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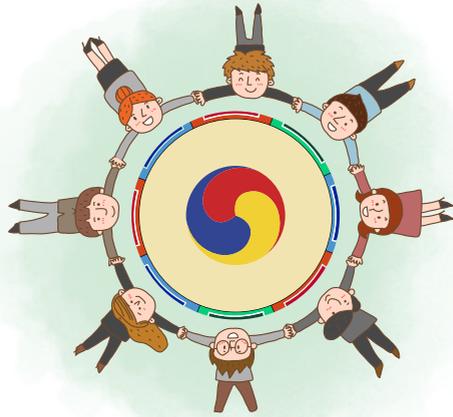
2020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보고서



총평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1. 총평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익구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2020년 운영상황에 대해 자체 평가를 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시민 고충해결과 권익향상을 위한 “시민 권익보호 기구”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에 걸맞게 각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의 의사결정으로 책임성과 독립성을 실현하여 시민 권익보호와 시정감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였다. 따라서 시민의 고충해결과 권익제고가 민선 7기 시정의 최우선 가치임을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확립한 시기였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시민과의 대면접촉이 제한되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여러 사람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민원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현장밀착형 조사와 선제적 해결책 제시*를 통해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실질적인 시민의 대리인으로 평가 받은 시기였다. 그간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빈도별로 분석하여 동일·유사한 민원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시민의 이심전심(以心傳心) 고충해결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인정받았다.

* 지역주택조합·도로영조물로 인한 피해배상·폐기물 재활용 관련 제도개선 외 2건

셋째, 행정 스스로 관료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기시정의 기회를 만들고 확산하는 계기를 도모함으로써 자발적 시정혁신을 촉진하고, 여전히 공무원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인식을 가진 시민들에게는 공정한 처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정착되는 한 해였다. 즉, 행정기관에 민원이 제기되면 공무원 스스로 적극 행정을 통해 시정이나 개선점을 모색하거나 민원인과 합의나 조정 가능성을 이끌어 내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와 시민의 권익보호가 동반상승”하는 한 해였다.

2021년에도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치와 다양한 사회갈등 요인이 지속증가하고 공공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하기 편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서도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 요인을 철저히 감시하고 시정할 것이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2020 시민신문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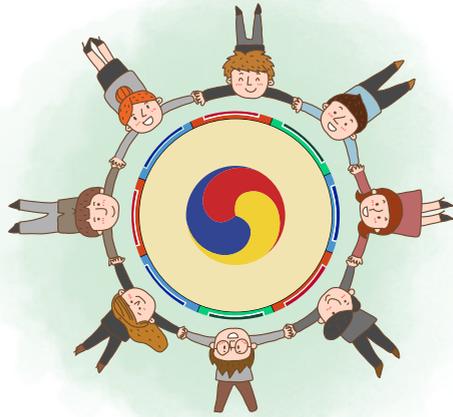
운영보고서

III

위원회 운영 개요

1. 2020년 주요 활동
2. 위원회 구성 현황
3. 위원 자격 및 현황
4. 위원회 직무권한 및 기능
5. 고충민원 처리절차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1. 2020년 주요 활동

- 1.31.~2. 1. 2020년 시민신문고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 2. 19. 금융민원상담관 1명 위촉 (금융감독원 소속 협력관)
- 3. 4. 2020년도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 5. 8.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간담회 개최(1차)
- 5. 28. 시민신문고위원회 명예상담관 2명 위촉
- 6. 2.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사례집 제작·배포
- 6. 12. 시, 구·군 신문고담당자 간담회 개최
- 6. 18. 제1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동구)
- 7. 1.
 -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인권 업무 추가
 -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개정에 따른 정원 증원(9명→11명)
- 9. 10. 제2회 시민신문고의 날 개최
- 7. 27. 하반기 시민신문고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 10. 26. 기재부 국민참여예산 집행현장 모니터링 방문
- 10. 29.
 -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인권 담당관 설치로 인권업무 삭제(시행 2021. 1. 1.)
 -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개정에 따른 정원 감원 (11명→9명)(시행 2021. 1. 1.)
- 11. 5. 제2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북구)
- 11. 8.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간담회 개최(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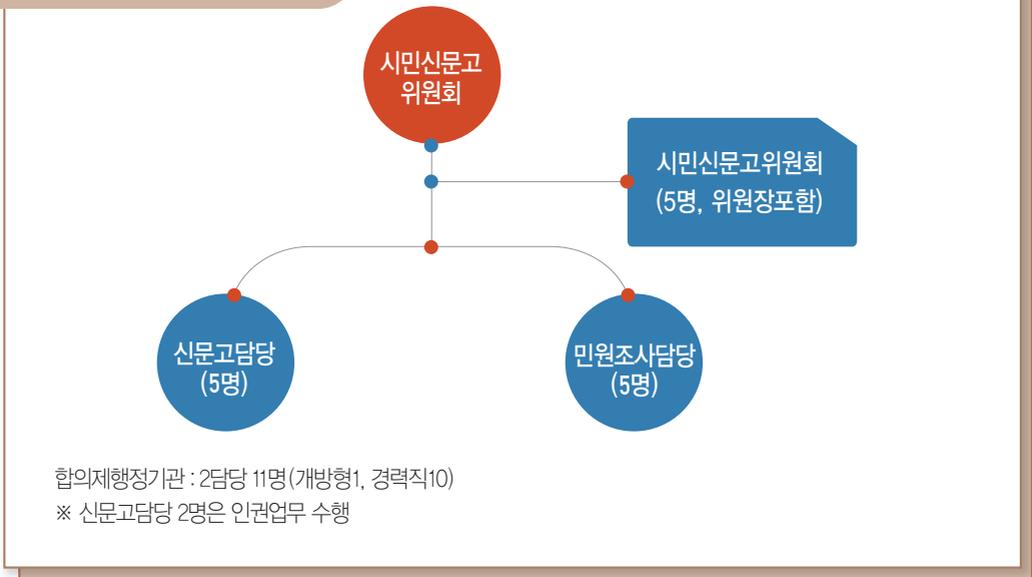


2. 위원회 구성 현황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장 직속 합의제 기구로 독립된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조례 제3조)되어 있으며, 현재 위원 5명이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심의·의결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조례 제27조). 현재 2담당(신문고, 민원조사)을 두어 민원 조사 및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조직 구성



• **인력** : 정원 11명 / 현원 15명

(2020. 12. 31. 현재)

구분	총계	일반직					시간선택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정원	11	11	1	2	4	4	-
현원	15	11	1	2	4	4	4



3. 위원 자격 및 현황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심사를 통해 선발했으며

위원장은 상기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능력과 적격성을 갖춘 인물로 심사를 통해 선발하였다.

-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 중앙행정기관 이외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 구성현황

계 경력	옴부즈맨	대학교수	변호사	사회단체	공무원
5	1	1	1	1	1

위원 주요경력



차태환 위원장

現 전국지방옴부즈만협의회 회장
前 서울시 구로구 옴부즈만
前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장



임용균 위원

前 울산시 도시개발과/담당
前 북구청 건설도시국/국장



김승호 위원

前 울산대/겸임교수
前 고려아연/감사팀 외
LG금속/관리팀



오영은 위원

前 (재)울산발전연구원
평생교육 관련 업무
前 울산시민연대/사무국장



권준우 위원

변호사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4. 위원회 직무권한 및 기능

1

직무권한 / 관할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직무권한은 시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위원회가 발의한 사안의 조사 및 감사, 시장 또는 시의회에서 발의한 사안의 조사 및 감사,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및 청렴계약 부조리 사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 등이다.

조례 제4조(직무권한 및 관할)

제4조(직무권한 및 관할)

① 위원회의 직무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시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2.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위원회가 발의한 사안의 조사 및 감사
4. 시장 또는 시의회에서 발의한 사안의 조사 및 감사
5.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및 청렴계약 부조리 사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7.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8. 행정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및 권고
9. 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공표
10. 위원회가 처리한 조사·감사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11.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12.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1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4.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속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된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분청 및 소속기관
2. 구·군(시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지방보조사업자

2 주요기능

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권고(의견표명)

- 위원회는 '관할권 내에 있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고충민원(다수인민원 포함)으로 접수하여 조사한다.
- 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게 하도록 시정권고 할 수 있으며,
- 행정기관 등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민원요구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권고(의견표명)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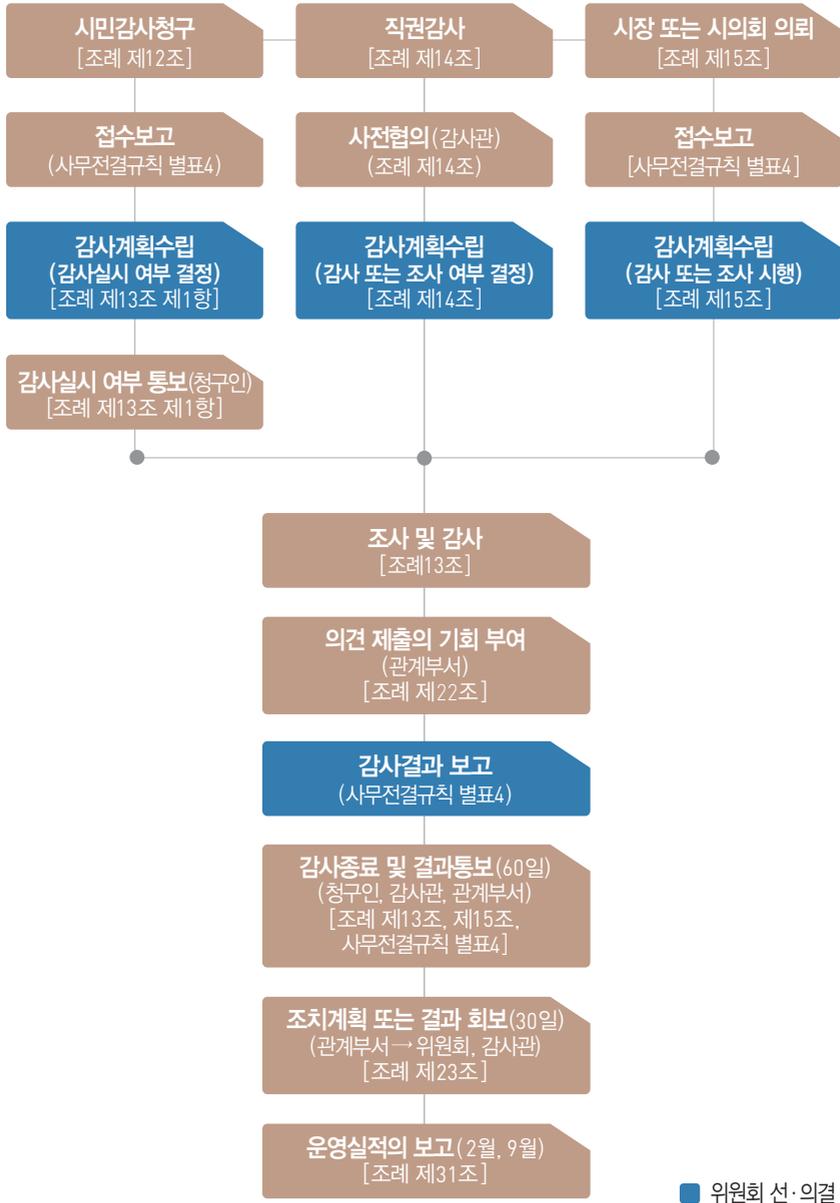
2. 불합리한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민원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관할권 내 법령(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등) 및 제도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계 행정기관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법령과 제도·정책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3. 시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의 대표자에 의한 시민의 감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감사의 실시 여부를 통보한다.
- ※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시민의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조례 제12조) ② 직권에 의한 감사(조례 제14조) ③ 시장 또는 시의회 의회(조례제15조)에 의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민감사청구 등의 처리절차



4. 청렴계약 감시·평가

- 위원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서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감시·평가한다.

조례 제20조~21조

제20조(청렴계약 감시·평가대상)

위원회가 감시·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서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감시·평가한다.

1.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
2. 2억5천만 원 이상의 용역
3. 5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4. 그 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21조(자료제출 및 요구)

- ① 제20조의 감시·평가 대상에 대하여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0조의 감시·평가대상인 공사, 용역,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위원회에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감시·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5. 홍보·교육 및 교류·협력

-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운영, 전광판 영상표출, 울산광역시 공식유튜브 채널 등재 등의 홍보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주요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알리고 있다.
- 이와 함께 위원 및 조사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처리 관련 워크숍 및 전문교육과정에 참석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한 기법·사례 등을 습득·공유하고 있다.

3 주요권한

1. 민원 조사

- 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실시된다. 위원회에서는 정확한 민원조사를 위해 관련 부서에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관련 부서의 장은 자료 등의 제출 요구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조례 제18조

제18조(조사의 방법)

- ① 위원회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 및 시 소속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시 및 시 소속기관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시 및 소속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2. 시정권고 및 권고(의견표명)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경우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이에 대한 취소·변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고(의견표명)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구제하고 있다.

3. 직권감사

-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청렴계약에 대한 감시·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

제14조(직권에 의한 감사)

위원회는 시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청렴계약에 대한 감시·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조사결과 보고 및 공표 권한

- 위원회는 매년 2월, 9월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현황, 시정권고 및 권고한 내용, 관련 부서의 처리결과 등에 대해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한다.



5. 고충민원 처리절차

1

고충민원 신청 및 조사

1. 고충민원 신청

- 민원인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신문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신문고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조례 제16조

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 ① 민원인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항에 따라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③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가 고충민원의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청인은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이 원할 경우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한다.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 민원체계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2. 민원의 조사

-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

제17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재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민원처리 예외 대상(민원의 각하)

- 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 ③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④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⑤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⑥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⑦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⑧ 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2 심의·의결 / 조사결과의 통지

1. 심의·의결

- 조사가 완료된 민원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 회의는 매주 1회 개 최함이 원칙이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회의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위원회의 조치(결정) 유형



2. 조사결과 통지

- 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 관계기관·관계부서의 장 및 감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사후관리

- 위원회는 권고 등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에 관계 서류의 제출,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운영규정 제44조

제44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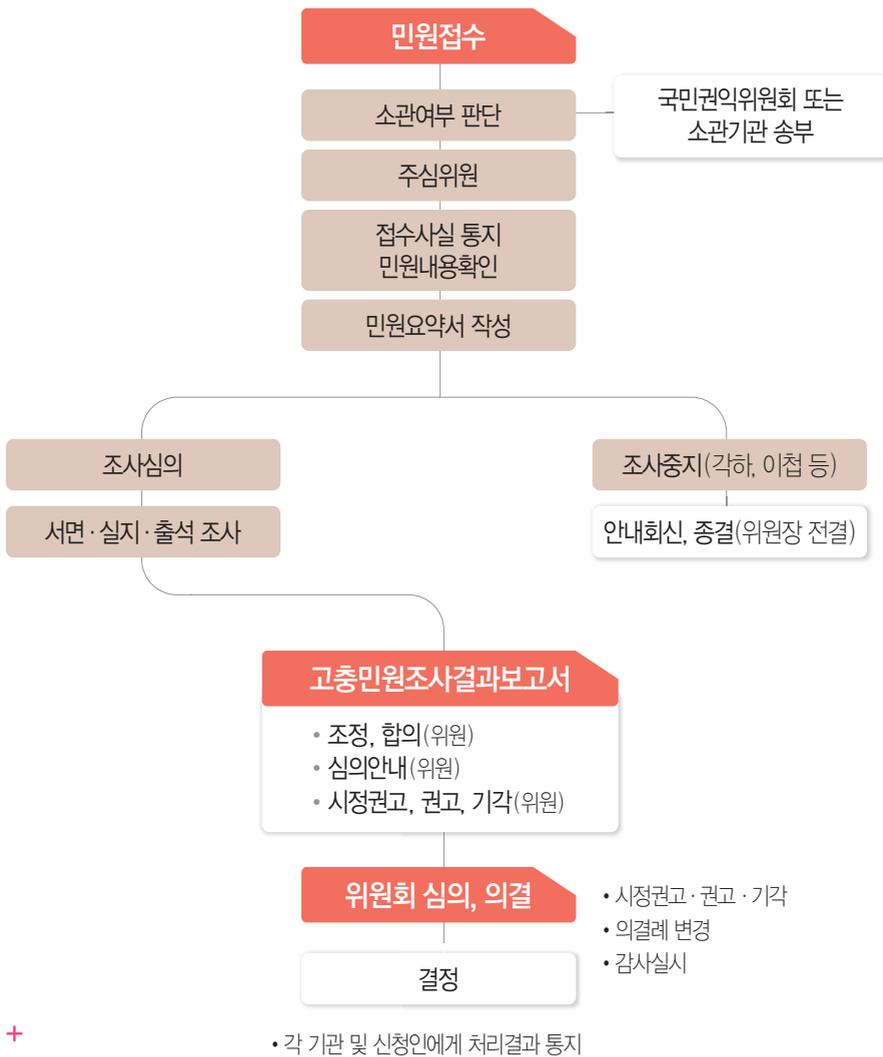
- ① 조사관은 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피신청인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그 내용을 사후관리카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② 신문고 담당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사후관리카드 입력실태 및 피신청인의 처리결과를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로 확인·점검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 및 사후관리 종결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신문고 담당은 제2항에 따라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되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주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④ 신문고 담당은 시정권고 또는 권고일부터 2년이 지난 민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목록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4 고충민원 처리 흐름도

1. 처리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

2. 처리절차



3.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의 구분

고충민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고충민원 VS 일반민원

	고충민원	일반민원
법 적 근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고충민원의 정의) •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고충민원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일반민원)
법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민원에 대한 2차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포함), 부작위 → 소극적 행정행위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 ※ 법령·제도·절차 등의 질의 및 상담, 제도개선 건의는 개인의 권리·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민원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제기는 민원처리법 35조에 따른 '이의 신청'으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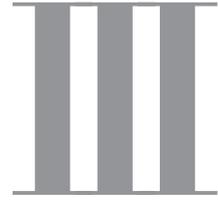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2020 시민신문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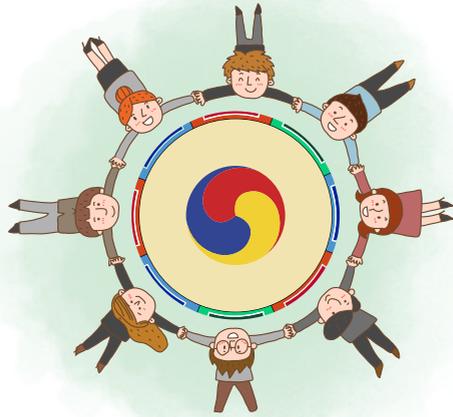
운영보고서



위원회 운영 성과

1. 시민이 체감하는 고충해결과 권익향상 활동
2.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 전개
3. 명예민원상담관 운영
4. 금융민원상담관 운영
5.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
6. 고충민원처리 역량 강화
7.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협력
8. 제2회 시민신문고의 날 개최
9. 국민참여예산 집행현장 모니터링 방문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1. 시민이 체감하는 고충해결과 권익향상 활동

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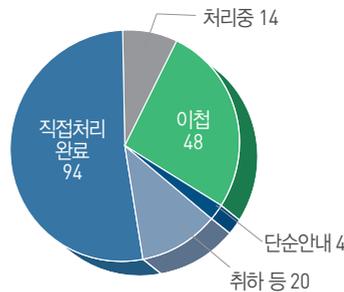
2020년 위원회는 총 156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다.

이 중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직접조사 처리한 고충민원은 108건(69.2%)으로, 매월 평균 9건을 직접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첩, 단순 문의 사항 등이 48건(30.8%)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20.12.31.기준, 단위 : 건)

합계	직접처리			간접처리			
	소계	완료	처리중	소계	이첩	단순안내	취하 등
156	108	94	14	48	48	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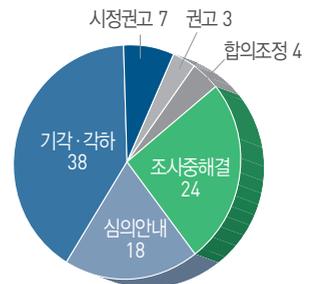
2. 고충민원 결정 유형별 현황

직접조사로 심의·의결한 94건의 고충민원을 위원회 의결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권고 7건, 권고 3건, 합의·조정 4건, 조사중 해결 24건, 심의안내 18건, 기각 32건, 각하 6건 이었다.

고충민원 결정 유형별 현황(총괄)

(단위 : 건)

합계	시정권고	권고	합의·조정	조사중 해결	심의안내	기각·각하
94	7	3	4	24	18	38



3. 고충민원 인용 현황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직접조사를 거쳐 심의·의결결과,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수용하여 결정한 인용건수는 38건(54.3%)이며, 기각된 불인용건수는 32건(45.7%)으로 나타났다.

고충민원 인용 현황(총괄)

(단위 : 건)

합 계		인 용		불 인 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70	100	38	54.3	32	45.7



기각으로 결정된 사례를 제외한 시정권고, 권고(의견표명)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피신청기관(부서)으로부터 최종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제출받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말 현재 부서에서 수용여부에 대한 수용률은 100%로 나타났다.

부서 조치 현황

(단위 : 건)

건 수	수용(a)		불수용(b)	검토중**	비 고
	수용	자체해결*			
38	33	4	-	1	* 자체해결 : 중재, 조정, 합의 ** 검토 중 : 회신 시기 미도래

※ 수용률 a/(a+b)×100

4. 고충민원 창구별 접수현황 및 처리기간

- 직·간접 처리한 고충민원 156건에 대한 접수 창구별 현황을 보면 방문 접수가 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37건, 국민신문고를 통해 9건, 우편 등 14건을 접수하였다.
- 직접조사·처리한 고충민원 108건 중 처리가 완료된 94건에 대한 평균처리 기간은 32일이었으며, 최장기간은 84일, 최단기간은 5일만에 처리하였다.

고충민원 창구별 접수현황 및 처리기간

합계	창구별 접수 현황(건)				처리기간(일)		
	방문	홈페이지	국 민 신문고	우편 등	평균	최장	최단
156	96	37	9	14	32	8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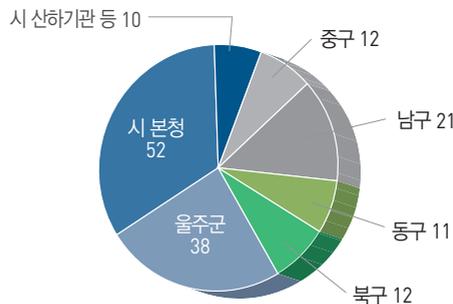
5. 피신청기관별 고충민원 현황

-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피신청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총 156건 중 5개 구·군이 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 본청 관련 민원이 52건, 시 산하기관 등이 10건 순으로 파악되었다.

피신청기관별 고충민원 접수현황

(단위 : 건)

시 본청		시 산하기관 등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52	33.3	10	6.4	12	7.7	21	13.5	11	7.0	12	7.7	38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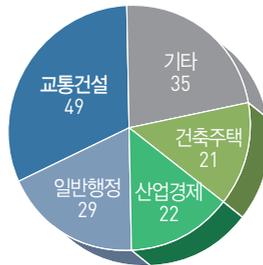
6. 분야별 민원접수 현황

-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총 156건 중 교통건설 관련 민원이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일반행정 29건, 산업경제 22건, 건축주택 21건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분야별 고충민원 접수현황

(단위 : 건)

합계		교통건설		일반행정		산업경제		건축주택		기타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건수	비율 (%)
156	100	49	31.4	29	18.6	22	14.1	21	13.5	35	22.4





2.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전개

1. 활동대상

2020년 감사평가대상으로 공사 21건, 용역 12건, 물품구매 2건 등 총 35건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 10억 원 이상 공사, 2.5억 원 이상 용역, 5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중 위원회에서 선정

(단위: 건)

구분		계	공사	용역	물품구매	비고
사업 부서	계	35	21	12	2	-
	본 청	19	10	9	-	-
	사업소	9	7	2	-	-
	출자·출연기관	7	4	1	2	-
	구·군	-	-	-	-	-

2. 활동실적

2020년 12월 현재, 공사 18건, 용역 4건, 물품구매 1건 등 23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완료하였고, 6건에 대하여 기타 처리하였으며, 6건은 정상 추진중이다.

(단위: 건)

구분		계	공사	용역	물품구매	비고
계		35	21	12	2	-
심의 결과	계	23	18	4	1	-
	시정권고	2	2	-	-	-
	권고	20	16	3	1	-
	특이사항 없음	1	-	1	-	-
기타*		6	1	4	1	-
추진 중		6	2	4		

※ 기타: 공사 중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중지 등을 사유로 예산삭감 및 사업이 취소되어 감시·평가 불가 결정된 건

3. 활동실적 분석

- 공공사업에 대한 종합적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 강화
- 공공사업 안정성과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사후 예방적 감시활동 추진

7. 활동내역

연번	사업명	활동내용		주심위원
1	2035년 울산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감시·평가일: 2020. 11. 9.]	사업기간	- 2019 ~ 2021	임용균
		대상부서	- 도시계획과	
		사업구분	- 용역	
		감시·평가 활동사항	- 도시종합재해취약성(안)의 등급을 상향 하거나 하향 조정할 경우 지역전문가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수렴 하도록 하고, 지역 전문가의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추가 현장조사 및 검토를 수행할 것을 권고 -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시 제기된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도시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 등급을 조정 할 경우 전문가 의견수렴 예정 - 공청회 개최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 토 후 반영 여부 결정			
2	울산외곽순환도로 (농소~강동) 타당성평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감시·평가일: 2020. 12. 9.]	사업기간	- 2020 ~ 2020	임용균
		대상부서	- 건설도로과	
		사업구분	- 용역	
		감시·평가 활동사항	- 의견없음	
3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 [감시·평가일: 2020. 11. 16.]	사업기간	- 2019 ~ 2021	임용균
		대상부서	- 환경생태과	
		사업구분	- 공사	
		감시·평가 활동사항	- 저영향개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정한 기능 유 지를 위한 관리(운영)비를 확보할 것을 권고 - 저영향개발시설인 코어블록의 보호 비닐을 사업 준 공 전까지 제거하여 강우 시 유입이 원활할 수 있도 록 조치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관리운영비 2021년 1회 추경 예산확보 계획, 코어블 록 보호 비닐은 2021년 4월 준공 전 비닐제거 계획	

연번	사업명	활동 내용		주심위원
4	태화강역 광장 개선사업(공사) [검토일: 2020. 12. 15.]	사업기간	- 2017 ~ 2020	임용균
		대상부서	- 녹지공원과	
		사업구분	- 공사	
		감시·평가 활동 사항	- 사업예산 삭감에 따른 공사 중지로 평가 불가	
5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감시·평가일: 2020. 9. 8.]	사업기간	- 2020 ~ 2023	임용균
		대상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사업구분	- 공사	
		감시·평가 활동 사항	- 도로 여건 변화와 교차로 구간 교통정체가 우려되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야간공사 또는 출퇴근 시간대를 감안한 공사 추진으로 교통 불편 민원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교통정체가 우려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관할 경찰서 와 협의 후 공사 시행할 계획	
6	옥동~농소1 도로개설공사 [감시·평가일: 2020. 12. 14.]	사업기간	- 2009 ~2022	임용균
		대상부서	- 종합건설본부	
		사업구분	- 공사	
		감시·평가 활동 사항	- 건설폐기물 종류별·처리방법별로 구분하여 보관하 고 각종 건설자재를 정리정돈 할 것을 시정권고 - 국가정원교 우수받이 및 은하수다리 데크 난간 파손 등에 대한 시공하자 및 파손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중	
7	울산역 복합환승 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감시·평가일: 2020. 12. 28.]	사업기간	- 2020 ~ 2022	임용균
		대상부서	- 종합건설본부	
		사업구분	- 공사	
		감시·평가 활동 사항	-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로부터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 받아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할 것을 권고 - 기존 통로암거 등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계획 검 토 시 태화강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홍수위 와 울산광역시 하수도기본계획(변경)의 결정된 강우 강도식을 반영할 것을 권고 - 지하차도 내 우수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 물 추가 설치 등 분산처리 방안 검토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중	

연번	사업명	활동 내용		주심위원
8	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2단계 [감시·평가일: 2020.11.23.]	사업기간	- 2015 ~ 2023	임용균
		대상부서	- 울산도시공사	
		사업구분	- 공사	
		감시·평가 활동 사항	-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의 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 예산 절감 및 국토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입력 및 갱신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확인 완료 - 토석정보 공유시스템 갱신현황 변경 완료 및 관리 실시			
9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부곡용연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감시·평가일: 2020.10.19.]	사업기간	- 2018 ~ 2023	임용균
		대상부서	- 울산도시공사	
		사업구분	- 용역	
		감시·평가 활동 사항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시설용지에는 시안화수소, 비소, 카드뮴 물질이 배출되는 업종이 선정되지 않도록 분양공시 시 반영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 시 반영할 계획			
10	미포국가산업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공사 [감시·평가일: 2020.12.14.]	사업기간	- 2019 ~ 2021	김승호
		대상부서	- 환경생태과	
		사업구분	- 공사	
		감시·평가 활동 사항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협력업체의 울산지역 건설업체 선정과 울산지역 장비 및 인력을 사업장에 투입할 것을 권고 - 작업현장에 무재해 현황판 설치, 근로자 휴게공간 및 흡연장 설치, 위험성 평가 재실시, 위험기계구 사용 시 특별 안전장구 보관함 설치, 작업장 내 정리정돈, 안전관리비 집행내역 철저히 관리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중			

연번	사업명	활동 내용		주심위원
11	온산국가산단(제4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용역) [감시·평가일: 2020.11.24.]	사업기간	- 2019 ~ 2020	김승호
		대상부서	- 환경생태과	
		사업구분	- 용역	
		감시·평가 활동 사항	- 설계용역 일시중지로 평가불가 (2020. 11. ~ 2021. 05.)	
12	울산 슬러지 자원화 시설 건립사업 [감시·평가일: 2020.12.28.]	사업기간	- 2016 ~ 2021	김승호
		대상부서	- 하수관리과	
		사업구분	- 공사	
		감시·평가 활동 사항	- 위험기계기구 작업반경에 대한 안전웬스 설치, 안전 기준에 맞는 사다리 작업, 이동통로 고정용 발판 교체, 철골거푸집 덮고 작업, 안전난간대 보강, 현장정리정돈 철저, 투입자재 검수 철저, 작업현황판 게시 및 위험성재평가 후 평가결과서 게시, 투명한 안전관리비 집행, 작업스케줄 면밀히 검토 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중	
13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감시·평가일: 2020.12.28.]	사업기간	- 2018 ~ 2023	김승호
		대상부서	- 하수관리과	
		사업구분	- 공사	
		감시·평가 활동 사항	- 위험기계기구 작업반경에 대한 안전웬스 설치, 사도장 흠날림 민원관리, 현장 안전장구 착용, 위험성 평가 재검토, 투명한 안전관리비 집행, 화재발생 예방, 작업현황판 게시 및 위험성재평가 후 평가결과서 게시, 안전보건에 대한 시스템 체계 구축 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중	
14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차(2공구) [감시·평가일: 2020.12.21.]	사업기간	- 2018 ~ 2021	김승호
		대상부서	- 하수관리과	
		사업구분	- 공사	
		감시·평가 활동 사항	- 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재검토, 안전관리비 집행내역 관리 철저, 작업장 내 정리 정돈, 안전보건에 대한 시스템 구축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중	

연번	사업명	활동내용		주심위원
15	중·남구 노후간선관로 정비공사 [감시·평가일: 2020. 12. 21.]	사업기간	- 2017 ~ 2021	김승호
		대상부서	- 하수관리과	
		사업구분	- 공사	
		감시·평가 활동 사항	- 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재검토, 안전관리비 집행내역 관리 철저, 경미한 재해 대책마련,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중	
16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4차)	사업기간	- 2018 ~ 2021	김승호
		대상부서	- 하수관리과	
		사업구분	- 공사	
		감시·평가 활동 사항	- 추진중	
17	울산시립미술관 건립공사 [감시·평가일: 2020. 11. 30.]	사업기간	- 2019 ~ 2021	김승호
		대상부서	- 종합건설본부	
		사업구분	- 공사	
		감시·평가 활동 사항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협력업체의 울산지역 건설 업체 선정과 울산지역 장비 및 인력을 사업장에 투입 할 것을 권고 - 터파기 공사 안전유의, 작업자 휴게공간 확보, 위험성 평가 재검토, 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작업장 내 정리정돈 등을 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각 권고사항 모두 이행완료	
18	수소충전소(7~9호기 수소충전시스템 구입) 구축사업(물품) [감도일: 2020. 11. 24.]	사업기간	- 2020 ~ 2020	김승호
		대상부서	- 테크노파크	
		사업구분	- 물품	
		감시·평가 활동 사항	- 부지선정 애로 및 장비도입 지연으로 감시평가 활동 불가	
19	제2 시립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감시·평가일: 2020. 11. 9.]	사업기간	- 2018 ~ 2022	오영은
		대상부서	- 어르신복지과	
		사업구분	- 공사	
		감시·평가 활동 사항	-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 내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 요구 및 편성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중	

연번	사업명	활동 내용		주심위원
20	청년 울산대장정 행사지원 [검토일: 2020. 12. 15.]	사업기간	- 2020 ~ 2020	오영은
		대상부서	- 관광진흥과	
		사업구분	- 용역	
		감시·평가 활동 사항	-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로 감시평가 대상 사업 아님	
21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감시·평가일: 2020. 11. 30.]	사업기간	- 2020	오영은
		대상부서	- 녹지공원과	
		사업구분	- 공사	
		감시·평가 활동 사항	- 2단계 사업부지 조성 후 잔여 부지에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부분사업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 - 관내 이식 수목이 발생할 경우 식생여건 등을 고려하 여 2단계 사업부지에 이식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중	
22	두동면 일원 송배수관 부설사업 [감시·평가일: 2020. 11. 30.]	사업기간	- 2018 ~ 2021	오영은
		대상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사업구분	- 공사	
		감시·평가 활동 사항	- 공사현장에 현장관련 표지를 게시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표지게시 완료	
23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사업기간	- 2016 ~ 2021	오영은
		대상부서	- 종합건설본부	
		사업구분	- 공사	
		감시·평가 활동 사항	- 추진중	
24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기간	- 2020 ~ 2014	오영은
		대상부서	- 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	
		사업구분	- 용역	
		감시·평가 활동 사항	- 추진중	

연번	사업명	활동내용		주심위원
25	노동화합회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기간	- 2020 ~ 2022	오영은
		대상부서	- 종합건설본부	
		사업구분	- 용역	
		감시·평가 활동사항	- 추진중	
26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감시·평가일: 2020. 12. 14..]	사업기간	- 2017 ~ 2020	오영은
		대상부서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사업구분	- 공사	
		감시·평가 활동사항	- 센터 건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센터 홍보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중	
27	울동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감시·평가일: 2020. 11. 9.]	사업기간	- 2011 ~ 2021	오영은
		대상부서	- 울산도시공사	
		사업구분	- 공사	
		감시·평가 활동사항	- 공동사용 중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토사가 공사장 밖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자동 세륜시설 공동 운용 후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살수차 운용	
28	울동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감시·평가일: 2020. 10. 20.]	사업기간	- 2015 ~ 2022	권준우
		대상부서	- 울산도시공사	
		사업구분	- 공사	
		감시·평가 활동사항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 교육과 관리감독자로서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공동사용 중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토사가 공사장 밖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모니터 설치, 안전 및 유해·위험방지업무 증진 등 - 자동 세륜시설 공동 운용 후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살수차 운용	

연번	사업명	활동 내용		주심위원
29	울산대공원 장미 축제(옹역) [검토일 : 2020. 10. 28.]	사업기간	- 2020	권준우
		대상부서	- 녹지공원과	
		사업구분	- 옹역	
		감시·평가 활동 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행사 취소, 사업예산 반납 으로 평가 불가	
30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방안 수립	사업기간	- 2020 ~ 2021	권준우
		대상부서	- 버스택시과	
		사업구분	- 옹역	
		감시·평가 활동 사항	- 추진중	
31	성암소각장(1,2호기) 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감시·평가일 : 2020. 12. 14.]	사업기간	- 2019 ~ 2020	권준우
		대상부서	- 자원순환과	
		사업구분	- 옹역	
		감시·평가 활동 사항	- 신규 소각시설 가동 전까지 기존 소각시설 1·2호기가 성 능저하 등의 사유로 오염물질 제거 효율이 저감되지 않도 록 유지· 보수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중	
32	제2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감시·평가일 : 2020. 10. 29..]	사업기간	- 2017 ~ 2021	권준우
		대상부서	- 종합건설본부	
		사업구분	- 공사	
		감시·평가 활동 사항	- 공사현장 내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작 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현장 내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처리 완료, 보관기준 준수	

연번	사업명	활동 내용		주심위원
33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옹역) [검토일: 2020. 10. 28.]	사업기간	- 2020	권준우
		대상부서	- 투자교류과	
		사업구분	- 용역	
		감시·평가 활동 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행사 연기(2021.6.), 사업에 산 반납으로 평가불가	
34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사업기간	- 2019 ~ 2020	권준우
		대상부서	- 지역개발과	
		사업구분	- 용역	
		감시·평가 활동 사항	- 추진중	
35	ICT융합 Industry4.0s (조선해양) 기반조성사업 [감시·평가일: 2020. 12. 21.]	사업기간	- 2020	권준우
		대상부서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사업구분	- 물품	
		감시·평가 활동 사항	- 긴급공고를 할 경우 공고기간이 단축되어 참여업체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물품구매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가능한 긴급공고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	
		해당부서 조치결과	- 검토중	





3. 명예민원상담관 운영

1. 운영배경

시민신문고를 방문하는 다양한 민원인에 대해 공직의 오랜경험을 가진 퇴직공무원이 응대함으로써 단순민원 안내부터 고충민원의 전문적 상담까지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안내하는 명예민원상담관을 운영하고 있다.

2. 운영

2020. 5. 28. 행정 지식과 경험이 많은 관리자급 퇴직 공무원 2명을 명예상담관으로 위촉하였으며, 2명이 격일로 시민신문고위원회 상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3. 역할

명예상담관은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일상민원에 대해서도 안내 및 상담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담당 경력을 바탕으로 민원인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치유를 병행하여 수행함으로써 민원인으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시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반감을 완화시키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명예상담관 위촉('20. 5. 28.)



민원인 상담



4. 금융민원상담관 운영

1. 운영배경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분쟁조정,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분야와 관련된 피해 및 불만 등에 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전문상담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금융민원 상담을 위해서 금융전문가를 위촉하여 시민, 기업과 밀접한 금융민원을 직접 상담·처리하고 있다.

2. 운영

- 시 기 : 2020. 2. 20. ~ 2021. 2. 19. ※ 금융협력관 파견 기간
- 장 소 : 시민신문고위원회 상담실(시의회 1층)
- 근무형태 : 매주 1회(목요일) 상담실에서 1명 상시근무, 본관 협력관실 사무실에서 수시 전화 상담·처리
- 상담관 현황 : 1명(금융감독원 소속 김세모 금융협력관)

3. 처리현황

주요사례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 상환 완료된 차용증서에 대한 채권추심 대응방법 등 금융관련 상담이 5건, 수술로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 지급거절에 대한 상담 1건 등 총 6건을 상담하였다.



금융민원상담실



금융민원 상담



5.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

1. 목적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수렴 등 시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고충민원 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생활민원 등 현장중심의 민원해결로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시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2. 운영

2020년도 당초계획으로는 분기별 1회 실시를 계획으로 정례화 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차질이 발생하여 코로나19 안정화 추세에 있던 시기를 활용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하였으며, 개최결과 30건의 민원을 상담하여 24건에 대해 현장해결 하였으며, 6건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였다.

- 2020년 제1회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 : '20. 6. 18. 동구청 대강당
- 2020년 제2회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 : '20. 11. 5. 북구청 대강당

- 고충민원 처리현황 : 6건(동구 2, 북구 4)

구분	시정권고	심의안내	이첩	취하	처리중
합계	1	2	1	1	1



동구('20. 6. 18.)



북구('20. 11. 5.)



6. 고충민원처리 역량 강화

1. 목적

행정수요 다변화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최적의 고충민원 해결책 모색은 위원과 조사관의 개별적인 역량에 크게 좌우되므로 위원과 조사관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였다.

2. 결과

- 시민신문고위원회 상반기 워크숍(2020. 1. 31. ~ 2. 1.)은 간절곶에서 개최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 인사에 따른 신규전입 직원과 조사관·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위원장 및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특강 및 정보를 공유하였고
- 하반기 워크숍(2020. 7. 27.)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신문고촉 회의실에서 개최 하였으며, 신규 전입 직원과 조사관·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시민신문고위원장이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주요 판례 및 국민권익위원회 우수사례 접목방안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민원처리의 정확성·공정성·신속성 향상을 주문하는 시간이었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워크숍(2020. 8. 5.)에도 우리 위원회 5명이 적극 참여하여 고충민원처리능력을 배양하였다.



신문고촉 역량강화 워크숍('20. 1. 31.)



신문고촉 역량강화 워크숍('20. 7. 27.)



7.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협력

1. 목적

시민접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고충해결과 권익향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 결과

-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분기 1회씩 정례화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정례화 추진이 곤란하여, 울산이 코로나19 안정화 추세에 있던 시기를 활용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협력 회의를 개최하였다.
- 상반기에는 시민단체 대표 등 8명 외 신문고위 7명이 참석하여 2019년 운영성과보고 및 현안 과제 등을 토론했고
- 하반기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6명 외 신문고위원회 7명이 참석하여 2021년 업무계획 및 내년도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20. 5. 8.)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20. 11. 8.)



8. 제2회 시민신문고의 날 개최

- 2020. 9. 10. 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울산시장, 시의회 의원,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시민신문고의 날'을 개최 하였다.
-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행사'에 비해 참석 규모는 줄였지만,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애쓴 유공공무원 및 유공부서에 대한 시상, 시민신문고의 2년차 활동 보고, 유수지 위치변경 및 제방도로 계속 사용 외 1건의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 발표, 지역 시민단체 대표 및 시민들의 "시민신문고에 바란다" 영상 상영 등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축하하고 신문고위원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의의를 대내외 알리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울산시 최초로 도입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지방옴부즈만 기구로서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직무 전념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는 물론 시정의 공정성·투명성 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시민과 직접 소통·공감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소통과 협치의 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제2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행사('20. 9. 10.)



9. 국민참여예산 집행현장 모니터링 방문

- 2020. 10. 26. 시민홀에서 기재부 국민참여단, 국민권익위 담당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참여예산 집행현장 모니터링 현장점검”을 위한 방문이 있었다.
- 이번 방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역별 고충민원 전담처리 센터 운영 우수사례”로 우리시 신문고위원회가 채택되어 이에 대한 국민참여단의 현장점검을 위한 것으로 국민참여단 7명을 대상으로 신문고위 출범 후 현재까지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사업설명,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 소개, 질의·응답을 내용으로 하여 한 시간 동안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개 및 추진실적을 설명하였다. 국민참여단 위원들은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고, 지역별 고충민원 전담처리 센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국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울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많은 기관이 찾아와 배우는 시민권익구제의 선도 기구가 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국민참여예산 집행현장 모니터링 방문('20. 10. 26.)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2020 시민신문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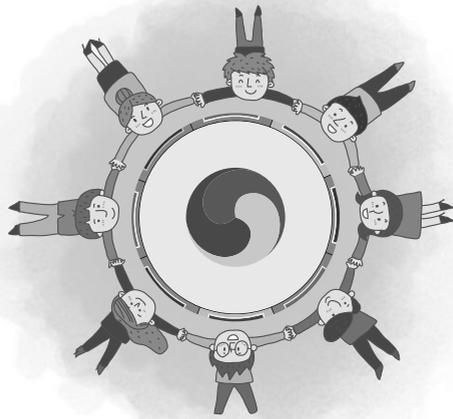
운영보고서

IV

주요 처리사례

1. 고충민원 처리현황
2.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결과
3. 기획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1. 고충민원 처리현황(2020. 1.~12.)

시정권고

연번	내용	신청인	관계기관	주심위원
1	하천구역 내 편입토지 보상 등	○○○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차태환
2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차태환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오영은
4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 통지	○○○	동구 (일자리정책과)	오영은
5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 부당	○○○○○ 부동산건설탕(주)	중구 (건축과)	권준우
6	도로공사 관련 영업 보상 등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차태환
7	관리처분계획 부적정 통보 부당	○○○	중구 (도시과)	권준우

권고

연번	내용	신청인	관계기관	주심위원
1	차량말소등록 신청수리	○○○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권준우
2	토지 분할	○○○	중구 (민원지적과)	권준우
3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 내 잔여지 매수 보상	○○○	울주군 (시설지원과)	권준우

합의 / 조정

연번	내용	신청인	관계기관	주심위원
1	상수관로 인입 요청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김승호
2	건물 벽면 누수	○○○	동구 (건설과)	임용균
3	음식물류처리장 악취피해 방지대책 요구	○○○	울주군 (생태환경과)	김승호
4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 조치 요청	○○○	남구 (건축허가과)	김승호

조사중 해결

연번	내용	신청인	관계기관	주심위원
1	토종별 육성사업 신청 추가접수 요청	○○○	울주군 (축수산과)	오영은
2	도시가스 설치 요청	○○○	*이해관계인 (경동도시가스)	김승호
3	선암지구커뮤니티센터 건축공사 민원해결 요청	○○○	남구 (도시창조과)	권준우
4	교차로 교통 체계 개선 등	○○○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 종합건설본부)	임용균
5	오피스텔 건축공사장 사용승인 보류 요청	○○○	남구 (건축허가과)	권준우
6	근태관리 방식 개선	○○○	울산시설공단	오영은
7	주차장 비탈면 안전성 검토 등	○○○	동구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차태환
8	공유재산 수익매각 요청	○○○	울산광역시 (회계과)	권준우
9	도시가스 배관 인입에 따른 민원해소 요청	○○○	*이해관계인 (경동도시가스)	김승호

기각

연번	내용	신청인	관계기관	주심위원
1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과)	김승호
2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	울주군 (세무과)	권준우
3	불법행위 조치요청	○○○	울주군 (도시과)	권준우
4	호계매곡지구 준주거용지 오수관 이설요청	○○○	북구 (건설과)	김승호
5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지구도시 개발사업조합장	북구 (부과과)	권준우
6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취소 요청	○○○	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 북구 (도시과)	김승호
7	농업진흥구역 해제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차태환
8	도로공사 관련 담장설치요구 등	○○○	동구 (건설과)	임용균
9	결혼식장 뷔페 집합금지 행정조치 유예결정 부당	○○○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권준우

각하

연번	내용	신청인	관계기관	주심위원
1	신축아파트 품질검수 시행	입주예정자 협의회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김승호
2	폐쇄명령처분 취소 요구	○○○	울주군 (환경지원과)	김승호

가 | 시정권고

1 하천구역 내 편입토지 보상 등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044(2020. 5. 8.) / 2020. 6. 15.
- 신청인/피신청인 : ○○○(울주군 ○○읍) / 울산광역시(건설도로과)
- 결정결과 : 시정권고(주심위원 : 차태환)

1 민원취지

- 신청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읍 ○리 330 답 24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중 105㎡가 지방하천 ○○천(이하 '이 민원 하천'이라 한다)에 편입되어 사용수익이 곤란하니 이 민원 토지를 매수 보상하고,
- 폐천부지인 국유(농림축수산부)의 같은 리 733-7 구거 5,989㎡ 중 596㎡(2017. 11. 14. 같은 리 733 구 37,085㎡에서 분할, 이하 '이 민원 폐천부지'라 한다)를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니 이 민원 폐천부지를 신청인이 매입할 수 있도록 용도폐지를 요청하여 달라.

2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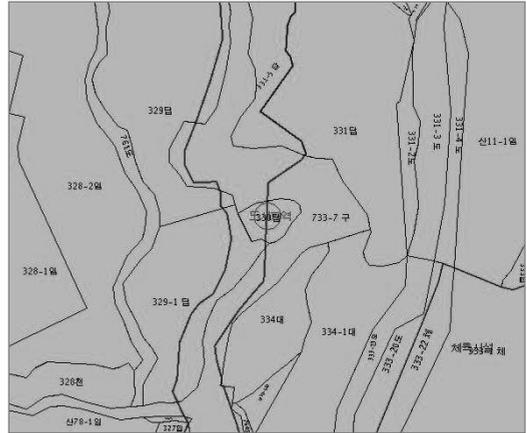
- 이 민원 하천은 1982. 11. 29. 경상남도 고시 제271호로 준용하천(즉,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후, 2004. 1. 15. 울산광역시 고시 2004-8호로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구역으로 고시되고, 2016. 12. 1.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216호로 하천기본계획**(이하 '이 민원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 변경 고시되었음. 한편, 신청인은 1983. 7. 3.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2004. 1. 15. 고시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 중 106㎡가 이 민원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2016. 12. 1. 변경 고시된 하천기본계획에는 이 민원 토지 중 105㎡가 이 민원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음.

* 발리천, 국수천, 은현천, 고연천, 공암천, 보은천 하천정비기본계획(2003. 5. 울산광역시)

** 약사천 등 5개소[약사천, 무거천, 호계천, 매곡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보고서(2016. 10. 울산광역시)



○○천 하천기본계획도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216호, 2016. 12. 1.)



도시계획도
(울산 울주군 ○○읍 ○리 330)

[하천기본계획도 및 도시계획도 비교]

- 울산광역시장이 2016. 12. 1.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216호로 고시한 “회야강 등 9개소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따르면, 이 민원 하천의 구간은 울산 울주군 ○○읍 ○리부터 같은 읍 ○○리 태화강(지방) 합류점까지 5km, 하천구역의 면적은 145,403㎡, 폐천부지의 면적은 33,230㎡이며, 이 민원 하천의 폐천부지 전체가 관리계획상 ‘보전’으로 되어 있음.
- 울주군수는 2019. 10. 태풍 ‘미탁’으로 인하여 홍수가 발생됨에 따라 2020. 3. 18. ~ 2020. 5. 15. 기간 동안 「하천법」 제27조 및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 2]에 따라 이 민원 토지 중 105㎡가 편입된 이 민원 하천구역에 대하여 “제18호 태풍 미탁 재해 복구공사(2차)”(이하 ‘이 민원 재해복구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음.

이 민원 토지가 편입된 이 민원 하천공사 현황

- 공사명 : 제18호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2차)
- 위 치 : ○○읍 ○○리 61-1번지 외 6개소
- 기 간 : 2020. 3. 18. ~ 2020. 5. 15.
- 사업비 : 216,300,000원

- 신청인은 이 민원 폐천부지를 울주군수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울주군 농업정책과-9091호, 2016. 4. 5.)을 받아 2016. 4. 4. ~ 2020. 5. 26. 현재까지 감자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17. 5. 및 2019. 3. 울주군수에, 그리고 2017. 7.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수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울주군수 및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민원 토지에 대해서는 이 민원 하천의 정비사업에 포함될 경우 매수 보상이 가능하며, 또한 하천기본 계획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대체시설이 설치되면 이 민원 폐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았음.

* 울주군 안전건설과-23655호(2017. 5. 24.),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6153호(2017. 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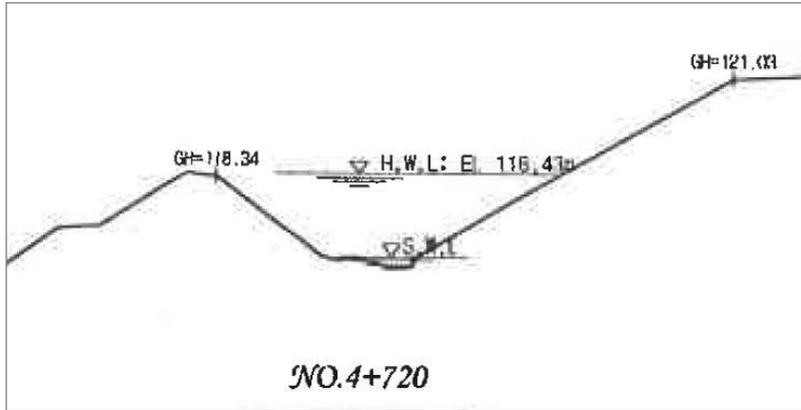
3 피신청인 의견

- 울산광역시장
 - 지방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관내 지방하천이 100개소로 하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어려운 실정임.
 - 다만,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할 경우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으나, ○○천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보상하기 어렵고,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은 토지 등의 매수 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 울주군수
 - 신청인은 이 민원 폐천부지를 농업기반시설 본래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경작하고 있으며, 이는 「국유재산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농업기반시설의 기능을 대체하는 시설이 갖추어지면 이 민원 폐천부지의 용도폐지(교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4 판 단

- 이 민원 토지 중 105㎡에 대한 매수보상 요구에 대한 판단
 - 「하천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다만 재해복구공사나 통상적인 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 시행계획 없이도 가능하고, 또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위와 같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함.
 -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울주군수는 울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아 2020. 3. 18. ~ 2020. 5. 15. 기간 동안 이 민원 재해복구공사를 시행하였는바, 비록 울주군수가 재해복구공사이기 때문에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2016. 12. 1.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216호로 고시한 “회야강 등 9개소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맞추어 시행한 같은 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하천공사라고 할 것이어서 울주군수(엄밀히 말하면 하천관리청인 울산광역시)은 이 민원 재해복구공사를 시행할 당시 이 민원 하천구역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 중 105㎡에 대한 보상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이 민원을 통하여 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하천관리청인 울산광역시장은 이 민원 토지 중 105㎡에 대하여 매수 보상함이 타당함.
- 이 민원 폐천부지의 용도폐지 요구에 대한 판단
 - 「하천법」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 등이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처분할 수 있음.
 - 2016. 12. 1.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216호로 고시한 “회야강 등 9개소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따르면, 이 민원 하천의 폐천 부지가 28개 지구 34필지 33,230㎡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 민원 폐천부지 일원(측점 NO. 4+720)의 계획홍수위는 118.43m로 되어 있고, 좌안(기설)제방고는 118.34m로 되어 있어 좌안 제방의 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민원 폐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할 것임.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민원 폐천부지 일원(측점 NO. 4+720)의 좌안 제방을 보축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하천기본계획상 이 민원 하천의 폐

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수 및 하천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울산광역시장은 이 민원 하천의 폐천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폐천부지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해서는 주 문에 별도로 표기하지 아니하기로 함.



[OO천 하천기본계획 횡단면도(No. 4+720)]

5 결론

- 이 민원 하천구역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 중 105㎡에 대한 매수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건설도로과 – 14553(2020. 11. 17.) 하반기 자체점검결과 제출
- 국수천 편입토지 보상비 2021년 당초예산(안) 반영

2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056(2020. 6. 11.) / 2020. 7. 20.
- 신청인/피신청인 : ○○○(중구 ○○○길)/울산광역시(건설도로과)
- 결정결과 : 시정권고(주심위원 : 차태환)

1 민원취지

- 신청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읍 ○○리 9-7 답 297㎡(이하 '이 민원 토지'이라 한다)는 두동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개설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서,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하거나 이 민원 토지에 진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여 달라.

2 사실관계

- 1989. 1. 27. : 울주군 ○○읍 ○○리 9-3 답 1,861㎡가 같은 리 9-3 답 665㎡, 같은 리 9-6 도로 899㎡, 같은리 9-7 답 297㎡로 분할됨
- 2019. 4. 17./ 2019. 9. 30. : 2회에 걸쳐 이 민원 토지에 농로를 개설하거나 또는 잔여지인 이 민원 토지 매수 요구
→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관 간 이첩, 농로개설 또는 토지 매수 요구 거부 회신
- 2020. 6. 29. :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1-15호선) 사업 실시계획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180호)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 울주군 ○○읍 ○○리 26-1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시설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1-15호선)사업
 - 명칭 : 선바위 ~ 망성 도로개설
-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대로1-15호선) L=1.5km, B=35m
-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실시 계획 고시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2020. 7. 1. :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시설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19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1-15호선]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5	35	주간선 도로	6,851	대1-2	소1-1	일반 도로	두동면 사무소 (두동로)	'98.5.11, 울고82호	'18.6.7. 울고119호
변경	대로	1	15	35	보조 간선 도로	6,851	대1-2	중로3-434	일반 도로		'98.5.11, 울고82호	노선축소 (노선분할, 중3-434호선)

3 피신청인 의견

- 이 민원 토지는 1989년경 경상남도(2007.12. 울산광역시로 이관됨)가 시행한 이 민원 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잔여지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매수를 청구하거나 수용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잔여지에 통로 등의 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민원 도로 개설공사는 30여 년 전에 완료됨으로써 신청인의 잔여지 매수청구권 또는 통로 개설비용의 보상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음.
- 다만,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도로의 확장 계획에 편입(도로 법면 등)될 경우 보상할 계획임.

4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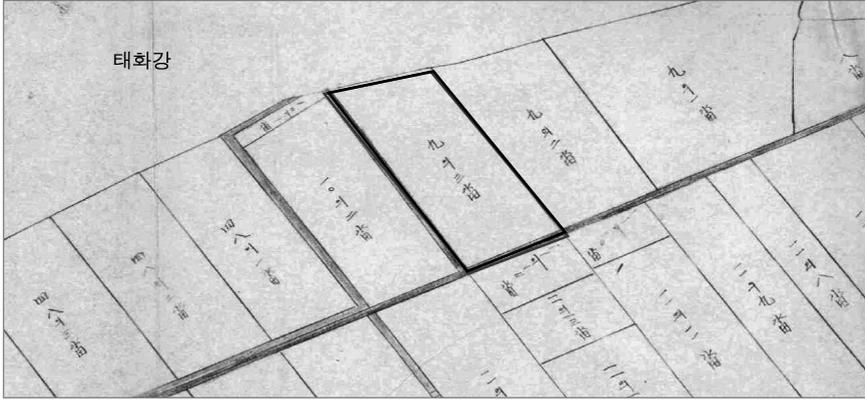
-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잔여지매수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피신청인은, 잔여지 매수청구는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잔여지에 통로 등의 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 도로 개설공사는 30여 년 전에 완료됨으로써 신청인의 잔여지 매수청구권 또는 통로 개설비용의 보상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토지의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이 민원 도로 개

설공사의 시행 시점으로 추정되는 1989년 당시에 시행된 구 공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토지보상법 제73조 및 제74조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잔여지매수청구권 등의 행사기한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한을 최초로 규정한 2007. 10. 17. 법률 제 8665호로 개정된 토지보상법 부칙 제2항은 “...제73조 제1항 단서·제2항·제3항·제5항·제7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5조(제2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토지는 토지보상법 제73조 및 제74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의 잔여지매수청구권 및 통로개설 비용의 보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임.

• 이 민원 토지가 잔여지매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바, 이 민원 도로공사로 인하여 이 민원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울주군 ○○읍 ○○리 9-3 답 1,861㎡ 일대는 울주군수가 1965년경 구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제5조에 따라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한 지역으로서, [그림 1]과 같이 태화강 우안 제방을 활용하여 위 토지에 진·출입이 가능하였으나, 이후 1989. 1. 27. 이 민원 도로 공사로 인하여 위 토지 중 일부(즉, 같은 리 9-6 도로 899㎡)가 이 민원 도로에 편입됨으로써 이 민원 토지와 같은 리 9-3 답 665㎡가 남게 되었는데, 이 민원 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민원 도로를 이 민원 토지보다 약 2.5m 높게 설치함으로써 [그림 2]와 같이 이 민원 토지에의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맹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빗변이 움푹 들어간 삼각형으로 되어 기계화 영농이 곤란한 토지, 즉 농지로 이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야 영농을 할 수 있는 등 이 민원 토지는 농지로서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하락되었다고 판단됨. 한편,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보상과 잔여지 공사비보상은 병행하여 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농지의 가격감소에 따른 보상과, 이 민원 토지에의 통로개설비용을 보상하여야 할 것임.

[그림 1] 1965년도 울주군 OO읍 OO지구 토지개발사업(경지정리사업) 도면



[그림 2] 지적 및 도시계획 현황도



-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나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특

히 이 경우에는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도 고려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민원 도로공사로 인하여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도로와 약 2.5m의 단차가 발생함으로써 사실상 맹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빗변이 움푹 들어간 삼각형으로 되어 농지로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즉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것임. 나아가 피신청인이 2020. 6. 29.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180호로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1-15호선) 사업 실시계획에 따르면, 이 민원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9-3 답 665㎡ 도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될 예정인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이 민원 도로공사에 편입되기 전의 같은 리 9-3 답 1,861㎡ 중 84%가 이 민원 도로공사 및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게 되어 토지이용가치의 하락은 물론 종래대로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것임. 한편,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이 민원 토지의 매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수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건설도로과** – 14553(2020. 11. 17.) 하반기 자체점검결과 제출
- 두동로 개설관련 잔여지 보상비 2021년 당초예산(안) 반영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058(2020. 6. 16.) / 2020. 7. 20.
- **신청인/피신청인** : ○○○(남구 ○○로) / 울산광역시(환경보전과)
- **결정결과** : 시정권고(주심위원 : 오영은)

1 민원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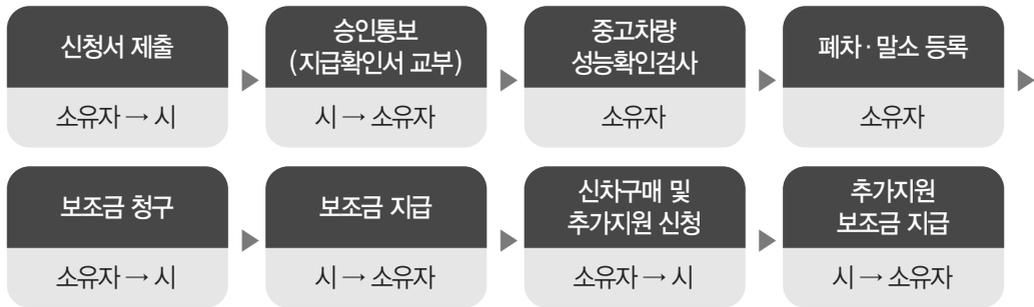
- ○○소○○○○ 신타페 차량은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의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자진폐차함으로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울산광역시 누리집을 통해 이 민원 사업 내용과 신청인의 차량이 이 민원 사업 대상 차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2020. 5. 25.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문의하였는바, 피신청인으로부터 6월 초순 경에 시청 누리집에 2차 사업이 공고될 예정이므로 그에 따라 접수가 가능’함을 안내받았음. 아울러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폐차 후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또한 신청인은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중고차를 구입할 예정이어서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0. 5. 29. 이 민원 차량을 자진말소(폐차) 하였음.
- 이 민원 사업의 1차 공고(울산광역시 공고 제2020-101호, 2020. 1. 29. 이하 ‘이 민원 사업 공고’라 한다)에 따르면,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② 울산지역 6개월 이상 연속등록, ③ 신청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④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인 차량, ⑤ 정부지원(매연저감 장치 부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차량, ⑥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비로소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액은 총 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시 폐차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하고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20. 1. 1. 이후 등록)을 신규로 등록 시(확인서 교부일 이후 신차 등록된 차) 폐차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 민원 차량 형식 및 모델연도는 7SM4WDA-03, 2003연식으로 2002. 12. 6. 제작되어 2020. 12. 13. 최초로 등록하였고 정기검사 만료일(2020. 12. 12.)이 경과하지 않은 2020. 5. 29. 차량 등록말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민원 차량과 동일한 조건을 지닌 차량에 지급된 보조금은 1,280,000원 임.
- 피신청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은 총사업비 11,951,970천원이 책정되어 약 7,430대 가량 지원 가능한 규모로서 2020. 2.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되며, 개별 차량 지원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2,100,000원의 범위에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하고, 경유 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20. 1. 1.이후 등록차량)을 신규로 구입·등록할 경우에는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급하며,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음.

[이 민원 사업 지원 절차]



- 피신청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의 2차 예산은 7,921,000,000원으로 약 4,700대 가량 지원이 가능하고, 2020. 6. 30. 기준 신청 차량은 1,941대로 신청인이 6월 중에 이 민원 사업의 지원 신청을 하였다면 2020. 8. 3. 경 이 민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것임.

3 피신청인 의견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에는 기본보조금과 추가보조금이 있는데,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추가보조금은 받을 수 없고 기본보조금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5. 신청인과의 전화상담 과정에서 이를 잘못 전달하였음.

- 이 민원 차량이 이 민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려면 우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민원 차량은 이미 폐차되어 그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지만 나머지 모든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2020년 이 민원 사업(2차) 예산은 7,921,000,000원으로 4,700대 정도 지원이 가능한데, 2020. 6. 30. 기준 신청대수가 1,941대임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2020년 6월 중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였다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이 민원 차량의 지원 금액을 산출하면 1,280,000원임.
- 그러나 유선상담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안내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2020. 1. 29. 울산광역시청 누리집(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신청대상 차량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보조금의 지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에 따른 지급확인서를 교부받고 중고자동차 성능확인검사('정상가동' 판정) 후 폐차·말소된 자동차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미 폐차(자진말소)된 차량은 이 민원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4 판단

-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 비록 신청인이 울산시 누리집을 통하여 이 민원 사업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2020. 5. 25. 업무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화할 당시에는 이 민원 사업에 대한 2차 공고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업무담당자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통화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입장으로서 막연하게 파악한 공고의 내용보다 이 민원 사업의 업무담당자가 안내한 내용을 더욱 신뢰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업무담당자의 답변을 믿고 이 민원 차량을 자진 말소등록(폐차)을 함으로써 결국,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매연발생이 많은 대상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청인은 2003년부터 운행해 온 이 민원 차량이 이 민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임을 인지하고 국가의 배출가스저감 정책에 적극 동참하려고 피신청인 업무담당자에게 이 민원 사업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업무담당자로부터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조기폐차(말소등록)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가의 배출가스저감 정책에 적극 동참한 신청인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고, 나아가 이 민원 사업(2차)에 약 4,700대를 지원할 수 있는 7,921,000,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30. 현재 신청차량은 1,941대에 불과하여 신청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민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존 신청자, 즉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는 등 이로써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차량을 자진 폐차하여 이 민원 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사업의 보조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환경보존과 – 15222(2020. 8. 12.) 조치결과 제출
 - 2020. 8. 11.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완료

4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 통지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062(2020. 6. 18.) / 2020. 7. 27.
- 신청인/피신청인 : ○○○(동구 ○○길) / 동구(일자리정책과)
- 결정결과 : 시정권고(주심위원 : 오영은)

1 민원취지

- 신청인은 2019년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이하 '이 민원 에너지이용권'이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신청인이 신청한 것과 다른 에너지이용권(전기)이 발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한 에너지이용권 발급 여부에 대한 결과를 법이 정한 기간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주었다면 신청인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겪었으니,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이를 시정하여 달라.

2 사실관계

- 이 민원 에너지이용권 발급은 「에너지법」 제16조의5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담기관으로 지정 위탁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가구원특성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또는 세대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 만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인 경우에 1인 가구 91,000원(하절기 5,000원, 동절기 86,000원), 2인 가구 128,000원(하절기 8,000원, 동절기 120,000원), 3인 이상 가구 156,500원(하절기 11,500원, 동절기 145,000원)을 차등 지원함.
- 에너지이용권 발급은 해당 읍·면·동에 접수·신청하여 구·군에서 자격기준 조사 후 선정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 통지하면 대상자가 카드사로부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또는 에너지공급사가 에너지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전담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정산·모니터·정보관리·사후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절차로 진행됨.

- 피신청인은 2019. 5. 22. ~ 2019. 9. 30. 기간 동안 신청인의 전화 및 방문을 통하여 이 민원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을 하였음.
- 피신청인도 인정하듯이 신청인은 2019. 8. 9. 전화로 이 민원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을 하면서 동절기 동안 지역난방을 지원받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화정동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 에너지원을 전기로 잘못 신청하여, 이 민원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받지 못하였으며 당시 작성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의 가상카드 에너지원 란에는 동절기, 하절기 모두 전기[고객번호 3000000, 주택관리공단(전기)]로 선택 표기되어 있음.
- 에너지이용권은 하절기(2019. 7. 1. ~ 2017. 9. 31.) 및 동절기(2019. 10. 16. ~ 2020. 4. 30.)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동절기에 난방비를 차감 받을 것을 기대하였으나 사용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차감이 되지 않고 관리비가 부과되자 2020. 5. 초경과 5. 22.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에 대한 사항을 문의하였고 동 복지센터 담당자는 이 민원 에너지이용권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이나 환급은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음.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 및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발간한 2019년 에너지바우처사업 교육 자료에 따르면 주거환경, 행정착오, 지리제약 등의 사유로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2020. 5. ~ 7. 기간 동안 금전 또는 현물의 지급신청을 하여 2020. 7. ~ 9. 기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신청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은 에너지바우처 포기서를 작성하고 2020년도부터는 노인가정세대 냉방비·월동비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전화 문의 및 항의를 함에 따라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2020. 5. 28. 신청인에게 전화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한 후 예외지급(환급형바우처) 신청하여 7. 16. 88,000원을 지급받았음.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및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발간한 2019년 에너지바우처사업 교육 자료에 따르면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 여부, 가구특성, 가구원 수 등을 확인하고 대상가구를 선정한 후, 지원금액을 산정·결정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3 피신청인 의견

• 동구 일자리정책과

- 화정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이 민원 에너지이용권을 직권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원한 것과 다른 에너지이용권이 발급되었고 이후 행정착오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에너지이용권 발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경우 신청·지급할 수 있는 '예외지급(환급형바우처)'에 대한 안내가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에너지이용권 발급 안내 지침에는 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결정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통지 이후에 발생하는 업무가 가중되어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므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함.
- 신청인이 미사용 가구에 해당하여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에 대한 유선 또는 우편 안내가 되었다면 변경 또는 중지 후 재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신청인은 동절기 기간이 지나도록 재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 민원은 제도에 대한 신청인의 무관심 및 특이 사례 발생에 따른 동 담당자의 안내 부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민원 사업 대상가구 개별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여부 등은 신청·접수 실무를 담당하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화정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은 2019. 8. 9. 동주민복지센터에 전화로 이 민원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문의·접수하였는데 행정착오로 잘못 신청되어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20년 5월경 전화 및 방문으로 미지급된 지역난방비 확인 및 소급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이 민원 에너지이용권 발급사업이 종료되어 지원받을 수 없었음. 그러나 이후 고지서 금액 차감형식인 에너지바우처 대신 현금지원을 해주는 노인가장세대 냉방비·월동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해 드렸으며, 미지급된 바우처의 경우 '예외지급(환급형바우처)'은 미정이었으며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신청인에게 안내하지 못하였음.
- 에너지이용권 지원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한 반면, 대상자 수급현황을 읍면동에서는 바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대상자 본인의 주기적인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미사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은 에너지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4 판단

- 피신청인은 에너지이용권 발급 안내 지침에는 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결정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통지 이후에 발생하는 업무가 가중되어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므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정착오로 신청인이 원하는 에너지원을 발급받지 못하여 '예외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 88,000원의 현금지원을 받았지만, 당초 피신청인이 이 민원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에 따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면 피신청인의 행정착오도 쉽게 바로잡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예외지급 신청을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그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점, 에너지이용권발급제도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함으로써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이므로 행정착오나 제도의 불충분한 안내 등으로 인해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에 따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부작위는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임. 나아가 위와 같은 통지의 업무로 인하여 에너지이용권발급 업무가 가중되어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통지미이행에 대한 위법성 조각(阻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5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에너지이용권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동구 일자리정책과** – 15962(2020. 11. 18.) 자체 점검결과 제출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자에게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e그린우편을 이용하여 신청 결과를 서면 통지 실시
 - 생활지원과와 협의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 통지에 필요한 2021년 예산 확보 예정

5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 부당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104(2020. 9. 6.) / 2020. 10. 19.
- 신청인/피신청인 : ○○○○○부동산컨설팅(주) (남구 ○○로) / 중구(건축과장)
- 결정결과 : 시정권고(주심위원 : 권준우)

1 민원취지

- 피신청인이 2020. 7. 9. 신청 외 △△△(이하 '△△△'라 한다)에게 중구 ○○동 212-2번지 대 12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상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이유 없이 발급하여, 이 민원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부당하게 멸실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2 사실관계

- 이 민원 건축물 개요
 - 대지위치 : 중구 ○○동 212-2번지
 - 대지면적 : 122㎡
 - 규 모 : 건축면적 82.86㎡, 연면적 343.8㎡, 지상5층
 -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단독주택(단독)
- 추진경위
 - 2018. 3. 20. : 건축허가(건축주 : ○○○○○부동산컨설팅(주))
 - 2018. 3. 26. : 착공신고
 - 2019. 9. 9. : 등기(소유자 : ○○○○○부동산컨설팅(주))
 - ※ 등기원인 : 가압류등기 촉탁(2019카단14102)
 - 2019. 11. 21. :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부동산컨설팅(주) → △△△ 외 2인)
 - 2020. 6. 19. : 사용승인(건축주 : △△△ 외 2인)

- 2020. 7. 6. :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 신청(△△△ 외 2인)
- 2020. 7. 9. :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중구청)
- 2020. 7. 14. : 건물멸실등기 신청에 따른 기존 등기 폐쇄 및 신규 등기 생성 (소유자: △△△ 외 2인)

[건축물 현황]



■ 건축물실명부 기재 및 관리·분쟁·분할·변경·폐지 제2호(건축물) [개정 2017. 1. 26.]					
일반건축물대장(을) 소유자현황					
고유번호	3111010800-1-02120002			영점	(총 1층 중 1층) 호수/가구수/세대수 0호/1가구/0세대
당지위치	울산광역시 울주 우정동	지번	212-2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울주 달산4길 22 (우정동)
소유자 현황					
성명(영점)	주민등록번호 (부동상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변동일자	변동원인
△△△	800411-1-*****	울산광역시 북구 황정1길 21-12	6/10	2020.06.19	소유자등록
▽▽▽	870508-2-*****	울산광역시 남구 안동로 33, 104동 703호 (아파트, 공동소유주택)	2/10	2020.07.14	소유권보존
□□□	810715-2-*****	울산광역시 울주군 광명로 92, 304동 1105호 (상업용건물단지)	2/10	2020.07.14	소유권보존
△△△	800411-1-*****	울산광역시 북구 황정1길 21-12 (용산동)	6/10	2020.07.14	소유권보존
- 이항여백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소유자: △△△, □□□, ▽▽▽ </div>					

- 이 민원 건물에 대한 건축 인·허가 처리과정은 2018. 3. 20. 건축허가, 2018. 3. 26. 착공신고, 2019. 11. 2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건축주가 신청인으로부터 △△△ 외 2인으로 변경) 수리, 2020. 6. 19. 사용승인 순으로 진행되었음.
- 이 민원 건물은 사용승인 전인 2019. 9. 9. 신청인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의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신청인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서 등기부가 생성되었으며, 폐쇄되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등기목적	소유자	건물내역	등기원인(기타사항)
소유권보존	○○○○○부동산 컨설팅주식회사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1층 51.06㎡ 2층 73.74㎡ 3층 73.74㎡ 4층 82.30㎡ 5층 65.50㎡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9년 9월 9일 등기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2020년 7월 9일 부존재에 따른 본 등기기록 폐쇄 (2020년 7월 14일)

- 이 민원 토지의 공유자 중 한 명인 △△△는 2020. 7. 6. 이 민원 건물에 대하여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등기부를 폐쇄하고 이 민원 토지 공유자 3인이 이 민원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내용의 새로운 등기부를 생성하기 위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건축물부존재증명원을 발급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2020. 7. 9. 신청인에게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였음.

3 피신청인 의견

- 이 민원 건물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의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소유로 등기가 되었는데, 이후 이 민원 건물의 건축주가 된 △△△(△△△는 이 민원 토지의 공유자 3인 중 1인임)가 이 민원 건물에 대하여 기존에 생성된 등기부를 말소하고 이 민원 토지 공유자 3인 소유의 새로운 등기부를 생성하기 위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 신청함에 따라 발급한 것임.

4 판단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대법원 등기예규」 제1207호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라. 항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관의 착오나 등기명의인의 착오에 기한 말소신청 또는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말소됨에 따라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 그 말소가 착오에 의한 것이 밝혀지거나 확정판결이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회복하여야 할 경우 폐쇄된 등기

기록을 부활한다.”고 하고 또한 2 항에서는 “이 경우 등기기록의 폐쇄가 등기관의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부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피신청인이 2020. 7. 6. △△△에게 이 민원 건물에 대한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① 건축물부존재증명서는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로된 상태로 해당 대지에 현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은 등기부 상 소유자가 아닌 △△△가 이 민원 건물에 대한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을 때 등기부 상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의견조회만 했어도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이 명백히 현존하고 있음에도 착오로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 할 수 있도록 2020. 7. 9. 발급한 이 민원 건물의 건축물부존재증명서가 착오로 잘못 발급되어 이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신청인에게 보내야 할 것임.

5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2020. 7. 9. 착오로 이 민원 건물의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한 것을 바로잡아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중구 건축과** – 47966(2020.11. 10.) 조치결과 제출
 -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동 21-2 건축물부존재증명서 착오발급으로 인한 발급취소 통지 시행(2020. 11. 5.)

6 도로공사 관련 영업 보상 등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112(2020. 10. 14.) / 2020. 12. 7.
- 신청인/피신청인 : ○○○(북구 ○○길) /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
- 결정결과 : 시정권고(주심위원 : 차태환)

1 민원취지

- 피신청인은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도로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교의 건설로 ○○교 하부의 통행로(즉, ○○천 제방도로, 이하 '이 민원 통행로'라 한다)를 폐쇄함에 따라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 북구 ○○동 소재 동전노래방(이하 '이 민원 노래방'이라 한다)의 영업수입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니,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아울러 위 건축물의 임대수입 감소에 따른 보상을 하여 달라.

2 사실관계

- 이 민원 도로공사 추진 및 민원 처리 경위
 - 2015. 8. 6. : 도로구역 결정 고시
 - 2016. 9. 5. : 공사 착공
 - 2018. 10. 9. : ○○교 교량가설 공사추진에 따른 기존 교량하부 통행로 폐쇄
 - 2019. 3. 14.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 민원 내용 : ○○교 하부 보행 통행로 폐쇄에 따른 보행자가 감소됨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 요구
 - 민원 회신 : 횡단보도 설치 등 우회 통행로를 설치·운영 중이며, 관계법상 영업 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2019. 3. 18.)
 - 2019. 4. 17.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
 - 민원 내용 : 2019. 3. 14. 접수된 민원 내용과 같음
 - 민원 회신 : 우회통행로 확보로 영업손실상 곤란(2019. 6. 17.)
 - 2019. 8. 30. :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수리(울산광역시 북구)
 - 2019. 10. ~ 12. : 기존 교량(○○교) 철거작업

- 2019. 12. 31.: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재접수
 - 민원 내용 :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재조사
 - 민원 회신 : 영업 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2020. 2. 3.)
- 2020. 2. 3.: 국민신문고 민원 재접수
 - 민원 내용 : ○○교 가설구간 기존교량 철거공사 등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 민원 회신 : 공사 중 가설방음벽 설치 및 지속적인 소음 측정, 관리를 통해 관계법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등 준수 및 현장관리 철저(2020. 2. 10.)
- 2020. 4. ~ : 이 민원 건물 옆 신설 교량 말뚝 기초(SIP공법) 시공 중
- 이 민원 도로공사 현황
 - 공사명 :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
 - 위치 : 북구 신천동 신답교 ~ 경주시계(국도7호선)
 - 사업개요 : 도로확장 L=4.63km, B=20m→30m(4차로→6차로)
 - 사업기간 : 2014. ~ 2021.
 - 총사업비 : 91,891백만 원(보상 31,911, 공사 56,485, 기타 3,495)

3 피신청인 의견

- 영업장의 영업 보상은 휴업 및 폐지의 사례로 한정하고 있어 이 민원 노래방의 영업손실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이 민원 통행로(비법정 도로)를 일시적으로 폐쇄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손실 보상을 할 수 없음.
- 이 민원 도로공사로 인하여 이 민원 통행로가 일시적으로 폐쇄[2018. 10. ~ 준공 예정일(2021. 3.)]되었으나, 이 민원 도로공사 준공 예정일 이전에 통행로를 재설치할 계획임.

4 판단

-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로 인하여 공익사업지구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업 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토지보상법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함(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8038 판결, 1998. 1. 20. 선고 95다29161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등 참조).

- 피신청인은 비록 이 민원 도로공사로 인하여 이 민원 통행로가 2018. 10. 9.부터 이 민원 도로공사가 준공되는 시점(2021. 3.)까지 통행이 제한(임시 폐쇄)된다 하더라도 ○○천의 교량인 ○○교 인근에는 이 민원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이용한다면 종전보다 약간 우회하기는 하나 이 민원 노래방에 접근하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어 이 민원 노래방에 대한 영업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노래방은 동전(또는 코인)노래방으로서, 카운터에서 비용을 지불한 후 시간을 입력받아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기존의 노래방과 달리, 방이나 부스에 들어간 후 부를 곡의 수나 시간 만큼에 해당하는 동전이나 지폐(대체로 1000원에 3~4곡을 부를 수 있음)를 코인기를 통해 기기에 직접 투입한 후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잠시 짬을 내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점 때문에 동전노래방은 자연스럽게 통행량이 많은 귀가길이나 퇴근길의 길목에 입지하게 되는데, 신청인도 인근 △△아파트나 □□□□□아파트 주민들이 ▽▽초등학교 방향으로, 또는 ▽▽초등학교에서 위 아파트 등으로 이동할 경우 ▽▽사거리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가 아닌 이 민원 통행로를 이용하여 이 민원 노래방을 경유하여 통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민원 노래방을 운영하여 온 점, 이 민원 도로공사로 인하여 이 민원 통행로가 폐쇄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종래와 같이 이 민원 노래방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사거리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함에 따라 결국 이 민원 노래방의 수입은 2018. 10. 9. 이 민원 통행로가 폐쇄되기 전인 2017년도에는 7,200,000원이었던 수입금액이 2018년도에는 4,700,000원, 2019년

도에는 3,600,000원으로 급감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도로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민원 통행로가 폐쇄되면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영업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이 민원 노래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업장이 거의 휴업의 상태에 있고, 신청인의 경우도 이 민원 통행로의 폐쇄로 인하여 휴업을 하고 있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할 기간은 2018. 10. 9.부터 2019. 12. 31.까지라고 할 것임. 또한 신청인이 요구하는 임대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손실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5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노래방의 영업손실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 27875(2020.12. 31.) 조치결과 제출
 - 민원인에게 통행로 일시 폐쇄 된 기간동안의 매출감소분에 대한 최소한의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청구 안내문 발송(2020. 12. 31.)

7 관리처분계획 부적정 통보 부당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117(2020. 10. 26.) / 2020. 11. 30.
- 신청인/피신청인 : ○○○(동구 ○○로) / 중구(도시과)
- 결정결과 : 시정권고(주심위원 : 권준우)

1 민원취지

- 피신청인이 舊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시 도시 주거 정비 조례'라 한다) 위반으로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민원 조합'이라 한다)에 발송한 '관리처분계획 부적정 사항 발견에 따른 조치 요구' 공문은 사실과 다른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을 해 달라.

2 사실관계

- 이 민원 도로공사 추진 및 민원 처리 경위
 - 사업명 :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치 : 중구 복산동 460-7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03,745㎡
 - 기존현황 : 건축물 1,271동, 1,746세대, 토지소유자 1,351명
 - 사업규모
 - 택지 : 공동주택 5개단지 29개동 2,625세대(임대 136세대) 종교시설, 유치원 등
 - 기반시설 : 학교, 공공청사, 공원, 광장, 공공공지, 녹지, 주차장,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추진사항
 - 2007. 8. 23. : 정비계획 수립(區) 및 정비구역 지정(市)
 - 2011. 11. 10. :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75.35%)
 - 2014. 9. 27. : 시공자 선정
 - 2016. 1. 11. : 사업시행계획인가
 - 2017. 2. 27.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20. 8. 28.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 이 민원 관련 그간 추진 사항
 - 2020. 10. 19. : 조례 부적정 사항 통보(區 → 조합)
 - 2020. 10. 23.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조례 부적정 사항 통보에 대한 이의 제기)
 - 2020. 10. 29. : 민원 회신
 - 주택 미분양 사실과 조합에서 작성한 분양설계서의 단순 오기로 인한 부적정 사항이라면, 이와 관련된 서류가 포함되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신청시, 이를 반영토록 할 예정임.
- 이 민원 조합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제출서류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분양설계서와 공급계약서가 있고 신청인의 분양설계서 상 주택부분은 'g84f 타입' 분양면적 113.56㎡ 표기되어 있으나 배정동호수 및 분양액은 표기가 되어있지 않으며, 상가부분은 G블럭 1, 분양면적 59.77㎡, 근린생활시설 △△△호, □□□호, 분양액 각각 189,350,000원, 187,50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인 조합원 공급계약서(상가)가 제출되었음.

[분양설계서]

[공급계약서(상가)]

분양 규모	주택	배정타입	지분 대지면적	배정동호수	분양면적	전용면적	분양액	
		g84f	47.11	-	113.562	84.971	-	
상가	상가	대지위치	지분 대지면적	용도	분양면적	호수	분양액	순위
		G블럭1	12.397	근린생활시설	29.885	△△△호	189,350,000	5순위
		G블럭1	12.397	근린생활시설	29.885	□□□호	189,500,000	5순위

[분양설계서(확대표)]

3 피신청인 의견

-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상가 취지의 민원이 이 민원 조합의 계약서 작성 오류로 인해 발생한 부정 사항이라면 향후 이 민원 조합에서 이 사항을 수정 후 적용시킨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신청 시 이를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4 판단

- 주택재개발사업의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는 시 도시 주거 정비 조례 제25조(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순위)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분양하되, 분양시설의 단위규모 구획 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권리가액의 20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의 범위에서 분양할 수 있음.
- 피신청인은 관리처분계획 당시 상가분양 서류는 최종단계의 계약서만 존재하고 신청인의 계약서는 주택분양, 상가분양내용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어 시 도시 주거 정비 조례상의 권리가액 한도가 초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20. 10. 19. 부정정 사항 조치계획 및 향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부정정 사항 발견에 따른 조치 요구' 공문을 이 민원 조합에게 발송을 한 사항이며, 만약 신청인의 주장대로 조합의 계약서 작성 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면 향후 이 민원 조합에서 이 사항을 수정 및 적용한 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신청이 제출되면 이를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주장함.
- 피신청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의 분양관련 서류인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와 조합원공급계약서(상가)를 보면 분양설계서 상에 주택부분은 배정타입(d84f), 지분대지면적(47.11㎡), 분양면적(113,562㎡), 전용면적(84,971㎡)이 표기되어 있으나 배정 동호수 및 분양액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상가부분은 대지위치(G블럭), 지분대지면적(12,397㎡, 12,397㎡), 용도(근린생활시설), 분양면적(29,885㎡, 29,885㎡), 호수(△△△호 □□□호), 분양액(187,500,000, 189,350,000), 순위(5순위)가 표기되어 있고, 조합원공급계약서 상에 106호, 107호 상가부분에 대하여 2017. 12. 1. 이 민원 조합, 시공자, 신청인 간에 계약을 체결을 하였음.
- 분양설계서 상가부분 순위(5순위)는 시 도시 주거 정비 조례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이므

로, 신청인은 공동주택은 분양받지 않은 자로 볼 수 있고 조합원 공급계약서(주택)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보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계약서에 주택분양, 상가분양 내용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고 조례에 따른 권리가액 한도가 초과된 것으로 본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됨.

- 이 민원에 대하여 2020. 10. 19. 피신청인이 이 민원 조합에게 발송한 공문내용과 같이 관리처분 계획 부적정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즉시 제출하고 아울러 추후 시행되는 관리처분 계획(변경)에 반영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민원 조합이 신청인의 분양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이 민원 사항을 해결이 되었을 사항이나 이 민원 조합의 사정(조합장 해임 등)으로 2020. 11. 20. 현재까지 이 민원 조합에서 어떠한 조치계획을 제출한 바 없음.
-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신청인이 주택을 분양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되나, 그 사실여부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주체인 이 민원 조합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합에게 신청인의 조합원공급계약(주택) 부존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보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을 시에 신청인을 제외한 ‘관리처분계획 부적정 사항 발견에 따른 조치 요구(정정)’ 통보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2020. 10. 19. ‘관리처분계획 부적정 사항 발견에 따른 조치 요구’ 통보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중구 도시과** – 12782(2020.12. 31.) 조치결과 제출
 - 신청인의 조합원공급계약(주택) 부존재에 대한 사실조회를 실시(2020. 10. 19.)
 - 조합에 신청인의 주택분양 사실 조회결과 공급계약 사실없음 확인(2020. 12. 28.)
 - 부적정 대상자에 대한 정정공문을 조합에 재통보(2020. 12. 30.)

나 | 권고

1 차량말소등록 신청수리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008(2020. 1. 23.) / 2020. 4. 20.
- 신청인/피신청인 : ○○○(울주군 ○○면) /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 결정결과 : 권고(주심위원 : 권준우)

1 민원취지

- 신청인은 신청외 망 △△△(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과 함께 공동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가 지나치게 노후되어 폐차를 하고자 말소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공동소유자와의 가족관계가 증명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말소등록신청을 거부하였는바, 이 민원 차량은 생산된지 20여년이 경과되어 현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말소등록의 거부로 계속하여 보험료 및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니, 조속히 말소등록을 수리하여 달라.

* 스타렉스 장축 오피지9인, 2000년, 승합자동차
보험가입내역 : 명의(신청인), 기간(2019. 12. 3. ~ 2020. 12. 3. AXA손해보험)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7. 11. 19. 이 민원 차량을 공동소유자와 신청인의 공동명의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였고,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를 수리하였음. 신청인은 공동소유자가 사망한 2013. 3. 26. 이후에도 이 민원 차량을 유지 관리하여 오던 중 이 민원차량이 지나치게 노후되어 이를 유지 관리해 오던 이 민원 차량을 폐차하기로 결정하고, 2020. 1.경 자동차말소등록 신청하였으나 이 민원 관계서류의 미비 등을 이유로 접수신청(수리)이 거부되었음. 또한 신청인은 공동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확정판결문 역시 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하였음.

- 이 민원 신청과 관련된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른 신청인 및 공동소유자의 관계
 - 故 △△△(2013. 3. 26. 사망)은 □□□의 계모, 가족관계 없음
 - 신청인은 □□□의 자녀이며, 故 △△△과 이 민원차량 공동소유임.
- 이 민원 진행 경과
 - 2007. 11. 19. : 이 민원 차량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부산 차량등록사업소)
 - 공동명의 : ○○○, 공동소유자 망(亡) △△△
 - 2020. 1. 13. : 신청인 1차 방문
 - 신청인의父 □□□이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 필요서류 안내
 - 2020. 1. 15. : 신청인 2차 방문
 - 친모자 관계가 아니어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불가. 제적등본 구비함
 - 필요서류 미비 및 가족관계 증빙 불가 이유로 상속 및 말소 진행 불가 안내
 - 2020. 1. 20. : 신청인 3차 방문, 말소 가능한 방법 안내 요청
 - 2020. 1. 21. : 고충민원 접수

3 피신청인 의견

- 이 민원차량이 지나치게 노후되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말소등록을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민법」상 상속인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른 상속인의 존재 및 상속 포기 여부 불분명)에서 말소 등록을 할 수가 없어, 상속 확인을 위하여 관계서류*(이하 '이 민원 관계서류'라 한다)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차량등록 말소신청의 수리는 거부되었음.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분할협의서(상속인 및 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인감 첨부), 공동소유자 신분증 등

4 판 단

- 자동차 말소등록은 등록된 차량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 및 도로운행 요건을 소멸케 하는 것으로, 「자동차등록령」제31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함. 따라서 ‘소유자 사망에 따라 폐차말소등록’ 등 상속으로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 「민법」에 따른 상속권자의 동의 또는 포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법」에 따른 상속권자의 동의 또는 포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미첨부 등을 이유로 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신청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 다만,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상속재산 확인 판결문 제출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여 상속인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상속포기 관련서류의 제출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위해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부과·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모두 납부한 후 운행하지도 못하는 이 민원 차량을 위하여 책임보험까지 가입한 점, 나아가 이 민원 차량의 폐차로 인한 금전적 이득은 폐차대금 40~50만 원에 불과한 반면에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이 지체됨으로써 신청인이 향후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 손실, 즉 자동차보험료 및 자동차세 납부 등은 이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 외 망 △△△의 상속인으로부터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문제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를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소를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5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차량 말소등록 신청 수리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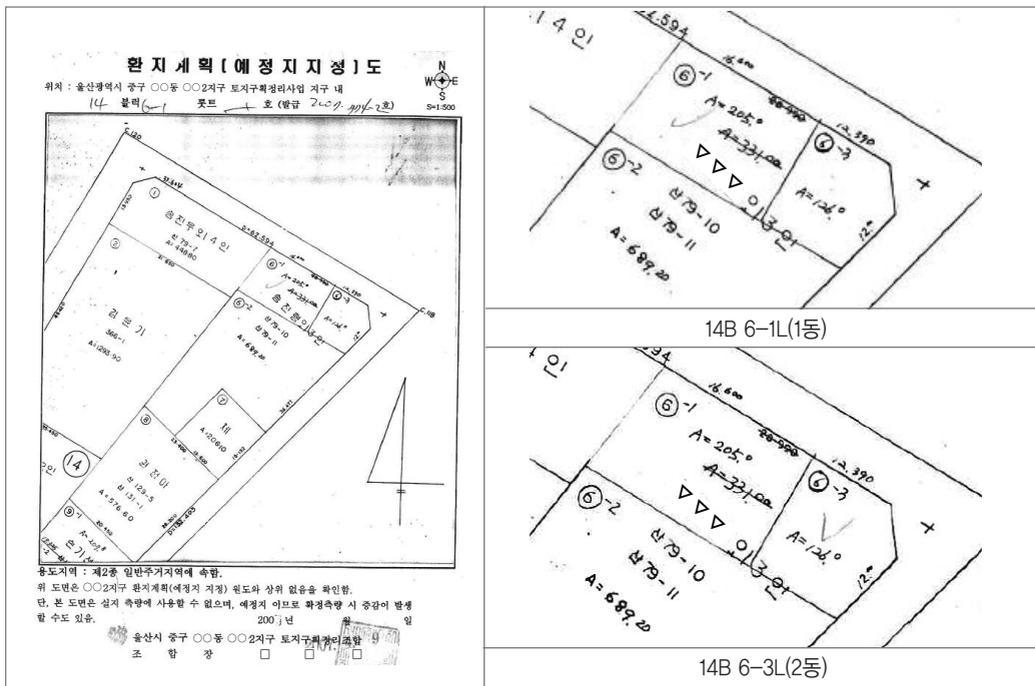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차량등록사업소 – 9049(2020. 5. 8.) 조치결과 제출
 - 2020. 5. 8. 권고사항 이행 및 말소등록 완료

● 추진경위

- 2007. 4. 11. : 1동, 2동 건축허가 신청
- 2007. 4. 13. : 1동, 2동 건축허가
- 2007. 7. 24. : ○○지구 환지계획변경인가(14B 6-1L, 14B 6-3L → 511-14번지)
- 2007. 7. 31. :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 2007. 8. 6. : 1동 건축물 사용승인
- 2007. 8. 10. : 2동 건축물 사용승인

●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건축물(1동, 2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2007. 4. 9. ○○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발급한 환지설명서(아래 그림 참조)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1동의 대지면적을 205㎡, 2동의 대지면적을 126㎡로 보아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또한 대지면적 변동 없이 건축을 허가한 대로 사용승인 처리되었음.



- 2007. 7. 24. ○○지구 환지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이 민원 토지는 14B 6-1L, 14B 6-3L에서 511-14번지로, 대지면적은 331㎡에서 304㎡로 변경되었으며, 부족면적 27㎡는 청산절차에 따라 전(前) 소유자인 신청 외 △△△에게 18,630,000원의 청산금을 교부하였음.

2020. 5. 28. ::: 울산시 중구청 환지조서 발급 :::

환 지 설 명 서

지정번호 : 397구 성 명 : □□□ 외1인 주민번호 : 610710-*****
 주 소 : 울산시 중구 ○○○ 996-9

출원토지의 표시				환지의 표시							환산내역				비고					
종	지번	지적	토지 대량 면적	환 지 면적	가 산 면적	기 존 면적	감 방 면적	감 방 율	번 리	롯 트	동	지 번	지 적	환 지 면적		권 리 면적	과 도 면적	부 족 면적	㎡ 당 환 지 가 액	환산금액(환)
																			정수	교부
○○	산79-13	임	460.0						14	6-1	○○	511-14	△	304.0	331.0		27.0	690,000.0		18,630,000.0
○○	산79-26	임	324.0																	
○○	계		804.0																	

상기 토지는 울산광역시 ○○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허용인가조서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 : 확인용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상기와 여히 상위없음을 증명함
 서기 120년 5월 28일

구입공지가 정주 소인되지 아니한
 증명은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3 피신청인 의견

- 민원지적과장
 - 이 민원 토지는 2007. 7. 31. 완료된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의 토지로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2필지로 분할함에 있어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55조 건폐율의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저촉 되어 분할이 불가함.
- 건축과장
 -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을 할 경우 「건축법」 제55조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게 분할되어야 함.
- 도시과장
 - 이 민원 토지는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감소로 건폐율의 상한선을 초과하였으나,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완화할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법 상 건폐율 규정은 달리 없음.

4 판 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에는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는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토지를 분할하려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만, 「건축법」 제57조 제2항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살피건대, 이 민원 토지(대지)의 면적이 304㎡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면적(1동, 2동 합계)은 194.51㎡, 이에 따른 건폐율은 63.98%로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를 초과함으로써 「건축법」 제57조에 저촉이 되어 신청인의 토지 분할 신청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다만, 이 민원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에서 토지분할 가능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비록 하나의 대지를 2개의 대지로 분할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이 「건축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①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서 상에는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였고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점, ② 그 이후 소유자가 변동되거나 또는 추가적인 건축행위가 없었던 점, ③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는 신청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처분사실이 없었던 점, ④ 이 민원 토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면 신청인 소유의 2개 동의 건축물 중 1개 동을 개별적으로 매도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토지의 분할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의 분할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중구 민원지적과** - 16906(2020. 9. 10.) 조치결과 제출
 - 2020. 9. 10. 분할측량 검사 후 토지분할 완료

3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 내 잔여지 매수 보상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138(2020. 11. 17.) / 2020. 12. 21.
- 신청인/피신청인 : ○○○(울주군 ○○읍) / 울주군(시설지원과)
- 결정결과 : 권고(주심위원 : 권준우)

1 민원취지

- ○○읍 ○○리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선이 후퇴되어 분할 된 ○○읍 ○○리 198-1번지 도 17㎡(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 매입이 되도록 해 달라.

2 사실관계

- 이 민원 토지의 건축물 개요
 - 대지위치 : 울주군 ○○읍 ○○리 198번지
 - 대지면적 : 277㎡
 - 규 모 : 건축면적 168.66㎡, 연면적 327.69㎡, 지상2층
 - 용 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현재까지 발생한 사실관계의 경과
 - 2013. 2. 4. : 건축허가(건축주 : ○○○)
 - 2013. 2. 7. : 착공신고
 - 2013. 4. 16. : 토지 분할(○○리 198번지(대) : 277㎡, ○○리 198-1번지(도) : 17㎡)
 - 2013. 6. 5. : 사용승인(건축주 : ○○○)
 - 2019. 10. 8. : 공유재산 심의
 - 2020. 2. 28. : 토지·건축물 보상(○○리 198번지)
 - 2020. 9. 1. : 공사 착수
 - 2020. 9. 14. : 민원 접수(우편)
 - 건축선 후퇴되어 분할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잔여지 매수 청구

- 2020. 9. 14. : 법률자문 의뢰
- 2020. 9. 17. : 민원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보상이 되는 잔여지로 보기 어렵고, 건축선후퇴선을 적용한 결과 그 대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게 된 경우 행정청이 손실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99헌마636 결정)
 - ○○리 198-1번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개설된 도로로 보아 비과세 되고 있으므로 소유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된다고 보기 어려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리 198-1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 의사가 없음을 알림.

[위 치 도]

■ ○○읍 어우름 기반 구축 사업 : ③ 커뮤니티 나눔 센터

구분	주요내용	
위치		
규모	① 커뮤니티 나눔센터 조성 • 사업위치: ○○읍 ○○리 198 • 사업규모: 327.69㎡, 2F (연면적)	

- 이 민원 건물에 대한 건축 인·허가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2013. 2. 4. 건축허가, 2013. 2. 7. 착공 신고, 2013. 6. 5. 사용승인 순으로 진행되었음.
-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 건물 허가 당시 통과도로가 건축법 상 도로 폭 요건인 4미터에 미치지 못하여 건축선을 후퇴시킨 후 건축허가 처리되었고 2013. 4. 16. 이 민원 부지로 분할되었음.

3 피신청인 의견

- 이 민원 토지는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른 보상이 되는 잔여지로 보기 어렵고,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그 대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게 된 경우이므로 손실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4 판단

-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잔여지 등의 매수 청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하고, ②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여야 하며, ③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는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이 민원 토지 및 ○○리 198번지 대 277㎡는 소유자가 신청인으로 동일하고,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 볼 수 있으나, 이 민원 토지는 2013년경부터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됨으로 인해 세금도 감면받고 있었으므로 ○○리 198번지 토지 및 건물만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개설된 도로'라는 이 민원 토지의 사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청인에게 곧바로 토지보상법 제74조 소정의 잔여지 매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힘들고, 이에 따라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한 피신청인의 주장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① 피신청인이 2020. 2. 28. 신청인에게 ○○리 198번지 대 277㎡ 및 이 민원 건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취득한 이후 이 민원 토지는 재산적 활용가치가 현저히 낮아 신청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② 피신청인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공유주방 및 자치모임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이 민원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토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 민원 토지를 이용하는 편익에 대해 지불된 대가가 전무하다는 점, ③ 만약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토지를 수용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지출은 두드러지게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 당시 이 민원 토지를 포함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5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의 분할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울주군 시설지원과 – 1000(2021. 2. 5.) 조치결과 제출
 -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협의 및 계약완료(2021. 1. 26.)

다 | 합의 · 조정

1 상수관로 인입 요청

조 정 서									
민원 표시	2020-고-0001 ○○면 ○○리 341-1번지 일원 상수관로 인입 요청								
조정 일시	2020. 03. 18.(수), 16:00								
조정 장소	○○면 ○○리 341-1번지								
<p>조정내용</p> <p>신청인과 피신청인(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장, 울주군 도로과장)은 신청인의 ‘○○면 ○○리 341-1번지 일원 상수관로 인입 요청’ 고충민원에 대한 아래의 조정 내용을 수용한다.</p> <p>가. 신청인의 ○○면 ○○리 341-1번지 일원 상수관로 인입 요청 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장, 울주군 도로과장)은 상수관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한다.</p> <p>나. 피신청인(울주군 도로과장)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언양 반송 ~ 삼동 상작 간 도로개설공사 문수교차로 구간 내 상수관로(D=50mm, L=600m, 추가공사비 약 60백만원) 매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추진한다.</p> <p>(다만, 현재 계획공정 상 상수도관 매설(예정) 시기는 2022년도이며 공정 진행 상황 및 예산반영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 <p>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협조하며, 피신청인은 위 조정내용(사업계획변경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바로 통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20. 3. 18.</p> <table style="width: 100%; margin-top: 20px;"> <tr> <td style="width: 50%;">신청인 ○○○</td> <td style="width: 50%;">성명 ○○○ ○○○</td> </tr> <tr> <td>피신청인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 급수담당</td> <td>성명 이우열 </td> </tr> <tr> <td>피신청인 울주군 도로과 도로개설담당</td> <td>성명 박경제 </td> </tr> <tr> <td>시민신문고위원회 주심위원</td> <td>성명 김승호 </td> </tr> </table>		신청인 ○○○	성명 ○○○ ○○○	피신청인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 급수담당	성명 이우열 	피신청인 울주군 도로과 도로개설담당	성명 박경제 	시민신문고위원회 주심위원	성명 김승호 
신청인 ○○○	성명 ○○○ ○○○								
피신청인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 급수담당	성명 이우열 								
피신청인 울주군 도로과 도로개설담당	성명 박경제 								
시민신문고위원회 주심위원	성명 김승호 								

2 건물 벽면 누수

조 정 서							
민원 표시	2020-고-0006 건물 벽면 누수						
조정 일시	2020. 2. 14.(금) 10:30						
조정 장소	울산 동구 ○○ 5길 54(○○동)						
<p>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건물 벽면 누수 고충민원'(이하 '이 민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 내용을 수용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 이 민원 개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울산 동구 ○○ 5길 54 소재 건물 (이하 '이 민원 건물' 이라 한다) - 주요내용 : 상기 도로와 접해 있는 이 민원 건물 벽면으로 지하수가 스며드는 피해 발생 </div> <p>가. 피신청인은 2020. 4. 30.(월)까지 이 민원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정비 공사[제포장(방수포 설치, 맹암거 설치)]를 완료한다.</p> <p>나. 신청인은 가.항의 도로정비공사가 완료되면 이 민원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20. 2. 14.</p> <table style="width: 100%; margin-top: 20px;"> <tr> <td style="width: 50%;">신청인 울산 동구 ○○ 5길 54(○○동)</td> <td style="width: 50%;">성명 ○ ○ ○ ○ ○ ○</td> </tr> <tr> <td>피신청인 동구 건설과장</td> <td>성명 김 무 식 </td> </tr> <tr> <td>시민신문고위원회 주심위원</td> <td>성명 임 용 균 </td> </tr> </table>		신청인 울산 동구 ○○ 5길 54(○○동)	성명 ○ ○ ○ ○ ○ ○	피신청인 동구 건설과장	성명 김 무 식 	시민신문고위원회 주심위원	성명 임 용 균 
신청인 울산 동구 ○○ 5길 54(○○동)	성명 ○ ○ ○ ○ ○ ○						
피신청인 동구 건설과장	성명 김 무 식 						
시민신문고위원회 주심위원	성명 임 용 균 						

4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 조치 요청

조 정 서										
민원 표시	2020-고-0093 ○○○○○○○○○○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 조치 요청									
조정 일시	2020. 10. 14.(수), 10:00									
조정 장소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실									
<p>조정내용</p> <p>신청인과 ○○건설(주)은 신청인의 ‘○○○○○○○○○○○ 아파트 공사(이하 ‘이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한 △△△△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조치 요청’ 고충민원에 대한 아래의 조정내용을 수용한다.</p> <p>가. ○○건설(주)은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 아파트 부지 내 공사차량의 불법주차 및 공사장 인부들의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 교육 실시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한다.</p> <p>나. ○○건설(주)은 △△△△ 아파트 주민들이 진출입을 하는 이 민원 공사 복측 도로에 대하여 10월중 도로보수공사 실시, 공사대기차량(대형트럭) 최소화, 주말공사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p> <p>다. 신청인은 위 조정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향후 공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한다.</p> <p>(※ 문제발생 시 현장대리인과 협의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20. 10. 14.</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40%;">신청인 □ □ □</td> <td style="width: 20%;">성명 □ □ □</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right;">(서명)</td> </tr> <tr> <td>○○건설(주) ○○○○○○○○○○ 현장대리인</td> <td>성명 ○ ○ ○</td> <td style="text-align: right;">(서명)</td> </tr> <tr> <td>시민신문고위원회 주심위원</td> <td>성명 김 승 호</td> <td style="text-align: right;">(서명)</td> </tr> </table>		신청인 □ □ □	성명 □ □ □	(서명)	○○건설(주) ○○○○○○○○○○ 현장대리인	성명 ○ ○ ○	(서명)	시민신문고위원회 주심위원	성명 김 승 호	(서명)
신청인 □ □ □	성명 □ □ □	(서명)								
○○건설(주) ○○○○○○○○○○ 현장대리인	성명 ○ ○ ○	(서명)								
시민신문고위원회 주심위원	성명 김 승 호	(서명)								

라 | 조사중 해결

1 토종별 육성사업 신청 추가접수 요청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005(2020. 1. 7.) / 2020. 1. 28.
- 신청인/피신청인 : ○○○(남구 ○○로) / 울주군(축수산과)
- 결정결과 :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오영은)

1 민원취지

- 토종별 육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와 업무처리 미숙으로 신청하지 못하였으니 처리하여 달라.

2 사실관계

- 피신청인은 양봉업을 하고 있으며, 평소 피신청인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토종별 관련 사업을 문의하였으나 사업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고, 2020. 1월초 이 민원 사업을 인지하고 시에 문의 하였으나 접수기간이 지나 접수를 하지 못하였음.
- 피신청인의 이 민원 사업 처리 경과
 - 2019. 12. 17. : 2020년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및 토종별육성사업 지침 알림(농림축산식품부 → 시(농축산과) → 피신청인 → 읍면동)
 - 2019. 12. 27. : 말벌퇴치장비 및 토종별육성사업 수요조사 결과 제출(피신청인 → 시)
 - 2019. 12. 31. : 이 민원 사업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0년 토종별 육성사업」
 - 사업목적 : 낭충봉아부패병(Sacbrood Disease) 저항성 토종벌을 농가에 보급하여 토종벌 산업의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사업대상 : 사육경력 5년이상, 토종별 10군 이상 보유한 토종별 분야 농업경영체
- 총사업비 : 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 주요내용 : SD 저항성 토종별 및 벌통 구입비 지원(30만원/군, 최대 3천만원)
- 기관역할 : 농림축산식품부(예산배정), 시·도(사업자 선정), 농촌진흥청(홍보, 교육), 농림축산
검역본부(검사, 교육), 한국한봉협회(기술교육)

3 결론

- 우리 위원회가 2020. 1. 10. 농림축산부(축산경영과) 담당자와 유선 통화한 결과 추가 신청을 받아주기로 한 사실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안내하였고, 이에 2020. 1. 13. 신청인은 삼동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 해당 신청서는 피신청인 및 시 농축산과를 거쳐 2020. 1. 15. 농림축산식품부로 최종 제출되었으므로 이 민원은 조사 중 해결된 것으로 함.

2 도시가스 설치 요청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017(2020. 2. 18.) / 2020. 3. 16.
- 신청인/*이해관계인 : ○○○(남구 ○○로) / 경동도시가스
- 결정결과 :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김승호)

1 민원취지

- 남구 ○○동 364-40번지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에 도시가스 설치를 해달라.

2 사실관계

- 이 민원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상 1978. 03. 29. 사용승인 된 건축물로서 남구 ○○동 364-37번지 골목길(이하 '이 민원 토지'이라 한다.)을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으나 이 민원 토지 소유자 소재 확인불가로 사용동의를 받지 못해 도시가스 설치를 못하고 있음.

3 판단

- 이 민원 건축물에 도시가스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민원 토지를 통하여야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경동도시가스가 이 민원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설치해야하는 사항이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제7호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해당하여 우리 위원회의 관할 대상에서 제외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과 경동도시가스 간에 협의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중재를 하였음.
-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2 규정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함. 다만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

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지나고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어 협의를 할 수 없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신청인은 경동 도시가스에 이 민원 건축물 도시가스신청을 하고 경동도시가스에서 이 민원 토지 소유자 소재확인이 곤란할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 절차(2020. 5월경)를 거칠 예정으로 이 민원 건축물 현장에서 상호 간 협의를 하였음.

4 결론

- 현지조사 시 신청인은 경동도시가스에 이 민원 건축물 도시가스신청을 하고 경동도시가스에서 이 민원 토지 소유자 소재확인이 곤란할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 절차(2020. 5월경)를 거칠 예정으로 이 민원 건축물 현장에서 상호 간 협의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고충이 조사 중에 해결된 것으로 종결하고자 함.

3 선암커뮤니티센터 건축공사 민원해결 요청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023(2020. 3. 4) / 2020. 9. 23.
- 신청인/피신청인 : ○○○(남구 ○○로) / 남구(도시창조과)
- 결정결과 :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권준우)

1 민원취지

- 남구 ○○로 339번길 9-1 앞 ○○지구커뮤니티센터 건축공사(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로 인하여 집 내부가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담장을 옹벽으로 시공을 해 달라.

2 사실관계

- 이 민원 건축물의 사업개요
 - 사업 명 : ○○지구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 위 치 : ○○동 180-189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 2. ~ 2020. 3.
 - 사업 비 : 7,750(부지매입 1,250, 공사비 4,750, 동이전 1,750. 이상 단위 백만 원)
 - 연 면 적 : 2,654.7㎡, 지하1층 / 지상3층
 - 주요시설 : 행정복지센터, 문화교실, 체력단련실, 공중목욕탕 등
 - 사업목적 : ○○동 주민들의 공동체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현장 확인결과 옹벽기초 0.3m 부분은 이미 시공이 완료되었으며 조적담장 설치구간과 인접대지 건축물 사이 이격 거리는 평균 1m ~ 2m 정도임.



3 피신청인 의견

- 이 민원 건축물에 설치 예정인 담장은 옹벽기초 0.3m, 디자인형 울타리 1.2m로 계획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디자인형 울타리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높이 1.8m 옹벽 담장 설치를 요구.

- 책임건설관리기술자의 검토결과 옹벽 담장은 전도 위험성이 있어 구조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옹벽기초 0.3m, 조적담장 1.5m 높이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신청인에게 설명하였음.

4 결론

- 피신청인이 추진 중인 이 민원 건축물은 4월 중순경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고충민원 조사 중 피신청인이 제시한 조적담장을 1.5m 높이로 설치하는 것에 신청인이 동의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고충이 조사 중에 해결된 것으로 종결하고자 함.

4 교차로 교통 체계 개선 등

- 민원표시 : 2020-고-0030(2020. 3. 23.), 2020-고-0031(2020. 3. 23.)
- 의결일자 : 2020. 4. 13.
- 신청인/피신청인 : ○○○(울주군 ○○면) / 울산광역시(교통기획과, 종합건설본부)
- 결정결과 :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임용균)

1 민원취지

- 울리~삼동 간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구간 중 작동교차로는 중리마을에서 삼동면사무소 방향 직진 차량이 신호 대기 시, 울리 방향 우회전 차량의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
- 이 민원 도로 구간 중 하작마을 앞 교차로는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가 좌회전 및 직진차로로 운영되고 있어 하작마을로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 대기 차량과 직진 차량 간 충돌 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
- 상작·하작마을 간이상수도 관로(이하 '이 민원 용수 관로'라 한다)가 이 민원 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노출되었으므로 우수기 집중호우 시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매설)하여 달라.

2 사실관계

- 교차로 교통 체계 개선 관련 추진현황
 - 2016. 12. 1.: 시설 공사 및 감리용역 착공
 - 2017. 3. 28.: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울산지방경찰청 → 종합건설본부)
 - 심의결과(요청시설물): “가”지점 중앙선 절선 및 횡단 신호기 신설, “나”지점 *신호기신설 및 횡단보도 신설, 무인단속장비 신설, “다”지점
 - ** 제한속도 하향
 - * 하작마을 앞 교차로 ** 작동교차로
 - 2017. 5. 25.: '17년 1차 교차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기술 검토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장)

- 2019. 6. 19. : '19년 2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울산지방경찰청 → 종합건설본부)
 - 심의결과(요청시설물) : “가”지점 경보형 신호기 신설, “나”지점 신호기 신설
- 2019. 12. 26. : '19년 3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울산울주경찰서 → 종합건설본부)
- 2019. 2. 11. : 교통안전시설 변경 심의 요청(종합건설본부 → 울산지방경찰청)
- 2020. 2. 26. : 교통안전시설 변경 심의 요청에 대한 선 조치 통보
(울산지방경찰청 → 종합건설본부)
- 2020. 3. 13. : 작동교차로 교통 체계(우회전 차로 확보) 개선 건의(신청인)
- 2020. 3. 20. : 의견 회신(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향후 교통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 여부 검토)
- 2020. 3. 15. : 공사 준공
- 2020. 3. 26. : 도로 사용 개시(공고)
- 2020. 4. 6. : 교차로 교통 체계 개선안 마련(교통기획과 → 종합건설본부)
- 간이상수도 정비 관련 추진현황
 - 2019. 9. 1. : 간이상수도관 연장 요청 민원제기
 - 2019. 3.(1차), 2019. 9.(2차) : 관로 부설 320m(1차 150m, 2차 170m)
- 이 민원 도로공사 현황
 - 공 사 명 : 울리~삼동 간(상작, 하작구간) 도로개설
 - 위 치 : 울주군 청량읍 문수C ~ 삼동면 하잠리
 - 사업기간 : 2016. 12. 1. ~ 2020. 3. 15.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4.8km, B=20m(터널 1개소 L=585m, 교량 2개소 L=121m)
 - 사 업 비 : 74,927백만 원(보상 12,468, 공사 58,459, 기타 4,000)
- 이 민원 도로 개설 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7. 3., 2017. 5., 2019. 6., 2019. 12. 울산지방경찰청(울산울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현재 운영 중인 하작마을 앞 교차로와 작동교차로가 설치되었음.

- 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산 23-3일원에 설치된 이 민원 용수 관로는 시 상수도가 공급되어 급수 여건이 안정적으로 변화되어 2019. 1. 1. 「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에서 폐지(울주군 안전건설과-56469호, 2018. 12. 31.) 되었음. 이후 이 민원 용수관로는 상작·하작 마을 일부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해 오던 중 이 민원 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하천수(지표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종합건설본부장)에게 기존 취수지점으로부터 약 300m 상류 측에 위치한 지점으로 이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종합건설본부장)은 민원 해소 차원에서 2019. 3., 2019. 9. 두 차례 용수 관로를 부설하였음.

3 피신청인 의견

- 작동교차로 상 울리 방향 우회전 전용 차로 추가 확보
 - 작동교차로는 주민 건의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지 교차로 운영 체계에서 현재 운영 중인 4지 교차로 운영 체계로 변경 시공하게 되었음. 신청인이 요구하는 교차로 주변 잔여지를 활용한 우회전 차로의 확장은 기존 우회전 차로의 폭과 울리(터널) 방향 직진 차량과의 간섭 등에 대하여 교통관련 부서(교통기획과)와 협의하여 교통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작동교차로 현황]

- 하작마을 앞 교차로 좌회전 전용 차로 확보

- 하작마을 앞 교차로의 좌회전 전용 차로의 확보는 울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행 도로와 같이 설치되었음. 좌회전 전용 차로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 선형의 변경 등 교통관련 부서(교통기획과)에서 교통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하작마을 앞 교차로 현황]

- 간이상수도 용수(취수) 관로 노출 구간의 정비

- 간이상수도 관로 노출 구간 중 암반 위로 부설된 구간은 큰 돌 등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고정하였고 암반 외 구간에 대하여 2020. 3. 24. 정비(매설)를 완료하였음.

4 판 단

- 이 민원 도로상의 하작마을 앞 교차로에서 하작마을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과 농기계 등은 중리마을 방향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 상에서 비보호 좌회전으로 통행하도록 하는 교통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좌회전 대기 차량과 중리마을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 간 추돌사고의 우려가 있어 좌회전 대기 차로 확보 등의 교통 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작동교차로는 중리마을에서 율리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회전하는 차량이 삼동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교차로 내 교통 체계 혼잡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교통 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피신청인(교통기획과)은 2020. 4. 6. 교차로 교통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실시 설계 후 관계 기관(울산지방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교통 체계 개선 사업을 시행하게 할 계획임.
- 이 민원 용수 관로의 정비는 사실관계에 언급된 내용과 같이 시 상수도가 보급되어 안정적인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나 피신청인(종합건설본부장)은 주민 요청에 대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 현재의 위치로 취수 지점 변경을 해 준 것으로 보임. 피신청인(종합건설본부장)은 우리 위원회가 2020. 4. 1.(수) 현지조사 시 이 민원 용수 관로 정비 요청 구간 중 일부 구간에 대한 정비(일부 매설, 일부 큰돌 고정)를 완료하였으나 암반 위로 부설된 일부 구간의 정비를 위해서는 암반을 파쇄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더 이상의 정비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도 이해하였음.

5 결 론

- 피신청인(교통기획과장, 종합건설본부장)은 교차로 교통 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서 실시 설계 및 관계기관(울산지방경찰청, 울주경찰서) 협의를 거쳐 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 민원 용수 관로 정비는 우리 위원회가 현장조사 시 현장여건 상의 어려움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도 이해하였으므로 이 민원 조사 중 해결된 것으로 종결함.

5 오피스텔 건축공사장 사용승인 보류 요청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034(2020. 4. 1.) / 2020. 7. 27.
- 신청인/피신청인 : ○○○(복구 ○○○○로) / 남구(건축허가과)
- 결정결과 :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권준우)

1 민원취지

- 남구 ○○동 1562-13번지에 위치한 △△△△△ 오피스텔(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과 관련한 민원요구사항(신청인이 분양받은 호실의 창문 밖에 위치한 전신주 및 변압기의 이설, 건축주와 시공자 간 부적절한 유착 관계 존부 확인, 분양 당시 건축주가 약속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한 행정청의 합당한 처분을 요구 등)이 해결될 때까지 건축물 준공 허가를 보류 해 달라.

2 사실관계

- 이 민원 건축물 사업개요
 - 건축주 : (주)○○ → (주)△△△△△
 - 사업기간 : 2016. 4. ~
 - 총사업비 : 9,461백만 원
 -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동 1562-13번지(대지면적 803.7㎡)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건축규모 : 지하 1층 ~ 지상 20층, 연면적 7,628.705㎡
 - 세대수 : 업무시설(오피스텔 163호)
 - 진행사항
 - 2015. 12. 18. : 건축허가
 - 2016. 3. 27. : 착공신고
 - 2016. 3. 29. : 분양신고
 - 2019. 10. 14. : 건축관계자 변경
- ※ 건축주 : (주)○○ → (주)△△△△△ / 시공자 : □□종합건설(주) → □□산업개발(주)

- 이 민원 관련 그간 추진 사항
 - 2020. 3. 25. : 민원신청
 - 민원내용 : 분양받은 오피스텔 앞 전신주 이설거부 및 중도금 이자납부 등에 대한 약속파기 등이 민원 건축주의 횡포가 있어 전신주 이설 될 때까지 사용승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
 - 2020. 3. 30. : 민원회신(남구청 건축허가과)
 - 회신내용 : 전신주의 이설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인 간에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 민원 건축물 관계자들에게 통보하여 적극 협조토록 요청하였음을 회신.

3 피신청인 의견

- 건축주((주)△△△△△, '이 민원 건축주'라 한다) 측에 확인한 결과 이 민원 건축주의 자금사정 상 전신주 및 변압기 이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이 민원 건축주와 시공자 간 부당한 관계 존부 확인 및 이 민원 건축주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에 대한 사항은 사인 간의 분쟁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됨.

4 판단

- 이 민원 건축물 203호 계약자인 신청인은 ① 수분양 호실의 창문 밖에 위치한 전신주 및 변압기를 이설해 줄 것, ② 이 민원 건축주와 시공자 간 부적절한 유착 관계 존부를 확인해 줄 것, ③ 이 민원 건축주가 분양 당시 신청인에게 했던 약속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것은 부당하니 이를 해결해 줄 것, ④ 피신청인에게 민원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건축물 준공 허가를 보류 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며 민원 제기를 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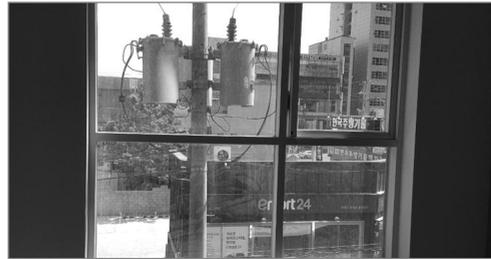
● 분양받은 호실의 창문 밖에 위치한 전신주 및 변압기 이설 문제

-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의 수분양 오피스텔 호실인 203호의 외벽 끝에서 약 4m 앞에 전신주 및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여 이 민원 건축주가 한국전력공사에 변압기 이설 신청을 하였고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이 민원 건축주 측에 이설 부담금 청구 고지서(12,000,000원)를 발급한 상태임.

※ 이설 처리절차 : 변압기 이설요청(신청인) → 설계·시공 공사비 산출(한국전력공사) → 고지서 발급(한국전력공사) → 납부(신청인) → 이설(한국전력공사)



[외부에서 본 사진]



[내부에서 본 사진]

● 이 민원 건축주와 시공자 간 부적절한 유착 관계 존부 확인 문제

- 신청인이 제기한 의혹만으로 이 민원 건축주와 시공자 간 부적절한 유착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이 민원 건축물 건축허가 과정을 살펴보았으나, 달리 위법·부당함을 발견할 수 없었음.

● 이 민원 건축주가 분양 당시 약속한 내용(수분양 호실에 대한 2년 임대보증, 취득세 보조, TV 설치, 빔프로젝트 설치 등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는 문제

- 신청인의 이 부분 민원은 당초 피신청인이 답변한대로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과 이 민원 건축주가 우리 위원회의 합의 조정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여겨지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에 소정의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해당하여 우리 위원회의 관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되고, 이와 관련해서 신청인에게 소송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였음.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건축물 준공 보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시 사용승인 처리되는 사항이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임.
- 이 민원 건축주와 신청인 양 측에 대한 조정안
 - 한편, 전신주 및 변압기의 이설과 관련하여 이 민원 건축주의 자금 사정으로 이설 부담금을 피신청인의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에나 납부가 가능하다는 답변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설 작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됨. 만약 이설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임대 목적으로 오피스텔 호실을 분양받은 신청인이 입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일회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져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민원 건축주와 신청인 양 측에 조정안으로 신청인의 수분양 호실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분양 계약 체결을 제시하였음. 이에 이 민원 건축주와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구두 합의를 하였고, 이어 양 측이 2020. 7. 15. 신청인의 수분양 호실을 203호에서 1106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 2020. 7. 16. 13:50 신청인 유선통화 확인

5 결론

- 신청인과 이 민원 건축주 간의 원만한 합의로 인하여 신청인의 고충이 조사 중에 해결된 것으로 종결함.

6 근태관리 방식 개선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046(2020. 5. 14.) / 2020. 8. 3.
- 신청인/피신청인 : ○○○(중구 ○○길) / 울산시설공단
- 결정결과 :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오영은)

1 민원취지

- 신청인이 근무하는 울산시설공단은 소속 직원 초과근무 등 근태 관리를 지문인식 방식(이하 '이민원 관리 방식'이라 한다)으로 하고 있는데 이 민원 관리 방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과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카드 인식 등 비접촉식으로 변경하여 달라.

2 사실관계

- 신청인이 근무하는 울산시설공단은 울산광역시가 2000. 11. 17.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체육시설물 등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및 가로수 등 도심 녹지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현재 이사장, 본부장, 3처 1실, 20팀 체계로 일반직 176명, 업무직 159명, 안전관리직 38명, 상담직 8명, 청원경찰 16명 등 423명 정원 중 410명이 근무하고 있음.
- 울산시설공단은 공단 본부가 위치한 중구 남외동 종합운동장 외에도 4개 공원시설, 15개 체육시설과 10개 문화·복지시설, 녹지관리소 등 총 31개 공공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므로 울산시 관내 개별 시설로 출·퇴근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총 32대의 이 민원 관리 방식을 통하여 근태 현황을 관리하고 있음.

울산시설공단 근태관리 현황

- 관리방식 : 지문인식(지문인식 불가 직원에 한하여 카드 사용 병행)
- 관리대상 : 공단 전 직원
- 관리분야 : 출·퇴근(조퇴, 외출, 유연근무 등)
- 설치대수 : 총 32대 설치(동일 기종) ※ 상세내역 불입
- 유지비용 : 1대당 33,000원/월
- 기타사항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상시 비치

- 그 간 추진 경위
 - 2020. 3. 20. : 제1회 노사협의회 개최(노조측 5인, 사측 5인)
 - (노조측) 지문인식에 따른 근태관리 방식 변경 요구(비접촉식 도입, CCTV설치)
 - (공단측) 카드 도용·분실 위험, CCTV 인권침해 소지, 손소독제 등 비치 → 지문인식을 유지 하되, 추후 비접촉식 근태관리 시스템 병행 안 검토
 - 2020. 5. 14. : 우리 위원회 고충민원 접수
 - 2020. 6. 1. : 근태인식기 추가 도입 관련 검토 보고
 - 2020. 6. 13. : 현지조사 및 피신청인 의견청취
 - 2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시 노조 측 요구안 관련 추진상황 공유 및 합의안 도출 제안
 - 2020. 6. 29. : 제2회 노사협의회 개최
 - 2020. 7. 1. : 제2회 노사협의회 개최 결과 공지
 - 별건 : '근태관리방식'관련 직원 설문조사 실시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계획
 - 2020. 7. 7. ~ 7. 9. : 근태관리방식 관련 직원 설문조사 실시
 - 2020. 7. 20. : 근태관리방식 관련 직원 설문조사 결과 공지
 - ※ 현재 지문인식기 만족도 : 만족 이상(70.1%) / 신규 근태방식 도입 필요성 : 불필요 이하(62.1%)
 - 2020. 7. 21. : 안면인식 근태관리 방식 수요 조사
 - ※ 418명 답변 중 68명(16.3%) 희망

3 피신청인 의견

- 울산시설공단은 부서(팀)별 근무 장소가 다양하여 실효적인 근태관리를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카드 인식 관리는 초과근무 부정 등록 우려와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연령(고령층), 직무수행(청소, 조경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체적으로 지문이 인식되지 않는 직원에 한해서만 카드 인식을 인정하고 있음.
- 향후 전체 직원 대상으로 근태관리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문인식 근태 관리 대비 효율성, 편의성, 보안성, 개인정보보호, 인권보호, 인식오류, 설치장소(실내)의 제한성, 설치비용,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비접촉식 시스템인 '안면인식방식'을 도입하여 병행하겠음.

4 판 단

- 신청인은 2020. 3. 20. 울산시설공단 제1회 노사협의회에서 이 민원 관리 방식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및 개인 정보 유출 등 위험이 있으므로 사측에 근태관리 방식 변경을 요청한 바, 울산시설공단은 7. 1. '근태인식기 추가 도입 검토 및 계획'을 별건 첨부하여 제2회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공지하였고(인사노무팀-3991), 이후 7. 7. ~ 7. 9. 기간 동안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태관리 시스템 변경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7. 20. 공단 내 게시판에 공지하였음(인사노무팀-4494호).
- 인사노무팀-3991, 인사노무팀-4494호 공지 내용은 신청인 소속 노동조합 측에서 요구한 '비접촉식 근태관리 방식 도입과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절충하여 2021. 1.부터 근태 관리 방식을 현재 실시중인 이 민원 관리 방식에 안면인식을 추가한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이 상기 각각의 공지 내용을 인지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속 노동조합의 근태 관리방식 변경 요구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절차 및 계획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추진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7. 27. 유선으로 확인하였음.
- 「울산시설공단 취업규칙」 제 24조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직원의 근무상황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 및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체결하는 자치적인 법규인 단체협약을 통하여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향후 피신청인의 근태 관리 방식과 관련한 내용은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조정·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결 론

- 피신청인은 이 민원 관리 방식 외 비접촉식 관리 방식 병행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현재 '근태인식기 추가도입 계획'에 따라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므로 이 민원은 조사 중 해결로 종결함.

7 주차장 비탈면 안전성 검토 등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050(2020. 5. 26.) / 2020. 8. 18.
- 신청인/피신청인 : ○○○(동구 ○○길) / 동구(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 결정결과 :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차태환)

1 민원취지

- 피신청인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이하 '이 민원 주차장 조성공사'라 한다)를 시행 하면서 터파기 등의 무리한 토목공사로 인하여 이 민원 주차장 조성공사 구역에 연접한 신청인 소유의 울산 동구 ○○15길 38 ○○ 원룸(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이 붕괴할 우려가 있으니, 절토사면 안전성에 대한 검토 후 공사를 진행하게 해 달라.
- 이 민원 주차장 조성공사로 신청인은 비산 먼지, 소음·진동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으니 공사장 주변 환경 개선(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달라.
- 이 민원 주차장 조성공사의 진입로의 계획이 변경되어 이 민원 건축물への 진출입 불편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니, 교통성 검토를 통한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

2 사실관계

- 이 민원 주차장 조성공사 관련 추진 경위
 - 2018. 10. :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
 - 2019. 1. : 편입토지 등 보상계획 통지 및 열람 공고
 - 2019. 5.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 인가
 - 2019. 8.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 2019. 11. 26. : 이 민원 주차장 조성공사 착공(준공 예정 2020. 5. 23.)
 - 2019. 11. 29. :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
 - 2020. 5. 20. : 이 민원 주차장 조성공사 공사기간 연장(준공 예정 2020. 8. 31.)
 - 2020. 5. 26. : 신청인 고충민원 접수

- 2020. 5. 27. : 이 민원 주차장 조성공사 공사 중지 및 사면안전성 검토 의뢰(현지 조사 1차)
- 2020. 5. 29.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예고
 - 공사장 출입구 임의 변경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방진벽) 임의 철거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제3항 위반 과태료 각각 60만원(2020. 6. 1. 납부)
- 2020. 6. 11. :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변경 신고 수리(환경위생과-15979호)
 - 변경 내역 : (당초) EGI웬스 (변경) EGI웬스(분진망 포함), RPP방음벽(분진망 포함) 등
- 2020. 6. 12. : 현지 조사(2차)
 - 집중호우 대비 협조 요청(방수포 추가 설치, 토사 유출 방지용 모래주머니 설치 등)
- 2020. 6. 18. :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 따른 행정 처분(경고)
- 2020. 6. 22. : 주민설명회 개최(현지조사 3차)
 - 사면 안전성 검토 결과 설명(이완진 박사, 울산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 절토 사면 보강 및 향후 이 민원 주차장 공사 추진계획 설명(교통행정과)
 - 비산 먼지, 소음·진동 등에 대한 조치 사항 및 관리 계획(환경위생과)
- 2020. 6. 22. : 이 민원 주차장 조성공사 설계 변경
 - 차량 진입로 추가(○○ 원룸 방향)
 - 가설 울타리(EGI 펜스) 설치 누락분 추가
 - 사토장 운반 거리 조정 등

3 피신청인 의견

• 환경위생과장

- 2020. 5. 27. 현장점검 시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아 해당 피해의 발생 정도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공사장 출입구의 임의 사용,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벽) 및 방음·방진시설의 변경 신고 없이 임의로 철거한 사실을 확인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및 제94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과태료 60만 원을, 「소음·진동관리법」 제 60조에 따라 특정공사 변경 신고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60만 원을 각각 부과하였음.
- 향후 이 민원 주차장 조성공사를 재개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방진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관련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부과할 계획이며, 비산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벽의 설치가 어려운 구간이 있어 터파기, 토사 운반 작업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공사로 하여금 이동식 살수 장비를 이용한 살수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임.

• 교통행정과장

- 이 민원 주차장공사를 추진하던 중 2020. 5. 15. 울산 동구 ○○동 332-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원룸의 소유자인 신청인으로부터 절토 사면에 대한 불안함 및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안내 부족 등을 이유로 이 민원 건축물에 인접하여 흙 깎기 공사를 추진하지 말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 민원 토지로부터 2m 정도 이격 거리를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음.
-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울산시 안전총괄과의 2020. 5. 27. 현장 확인 시 이 민원 건축물과 절토사면 상단부 끝부분의 이격 거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진입로 선형 변경 검토 요청에 따라, 이 민원 주차장 남측 국·공유지를 활용한 선형 변경으로 추가적인 흙 깎기 공정이 필요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민원 토지 경계로부터 당초 1.0m에서 약 5.0~6.0m로 이격되었음.

4 판 단

- 이 민원 주차장의 절토 사면으로 인한 이 민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여부
 - 피신청인(교통행정과장)은 이 민원 주차장 조성공사의 진입로 일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 건축물과 접하는 절토 사면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검토 없이 토목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절토 사면이 당초 계획보다 5m 가량 높아진 8m 정도로 높아짐에 따라 이 민원 건축물은 시각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음.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과 접한 절토사면 상단부의 끝부분이 이 민원 토지의 경계와 약 1m의 이격 거리를 두고 있어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이 민원 건축물의 붕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 후 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2020. 5. 27. 현지 조사 시 위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교통행정과장)과 이 민원 주차장 공사의 시공사인 (주)△△△△△(이하 '이 민원 주차장 조성공사 시공사'라 한다) 현장 대리인과 협의하여 이 민원 주차장 조성공사를 일시 중단할 것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절토 사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방수포 설치와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음. 이후 6. 22. 우리 위원회 2차 현장 조사(이하 '2차 현장 조사'라 한다) 시 피신청인(교통행정과장)은 절토 사면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하였고 신청인도 이에 대하여 수긍하였음.

* '○○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비탈면 안전성 검토서'(2020. 6. 이완진 공학박사)

[검토 결과]

- ① 지질도상 기반암은 흑운모 화강암(현장 육안 관찰 : 화강암)
- ② 원호 활동 해석: 기준 안전율 만족
- ③ 수치 해석: 이 민원 건축물은 침하되거나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
 - 현재 건물의 외관상 안전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추가 굴착이 없을 경우 이 민원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 이 민원 주차장 조성공사 관련 소음 · 진동 및 비산 먼지 발생에 대한 환경 개선대책 및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판단
 - 피신청인(환경위생과장)은 2020. 5. 27. 공사장 출입구의 임의 사용,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벽) 및 방음 · 방진시설에 대한 변경 신고 없이 임의로 철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60만 원을, 특정공사 변경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60만 원을 각각 부과하였음. 또한, 2차 현장조사 시 이 민원 주차장 조성공사가 재개될 경우 관련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과 방진벽을 설치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하여 이 민원 주차

장 조성공사의 시공사로 하여금 이동식 살수 장비를 이용한 살수 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할 계획임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과 주민들도 동의하였음.

- 신청인은 이 민원 주차장 조성공사로 발생한 소음·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재산상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는바, 이 민원 주차장 조성공사의 시공사가 2019. 11. 29. 피신청인 환경위생과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 이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비산 먼지 억제시설(방진벽) 및 방음·방진 시설을 임의로 철거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변경 신고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특정공사 변경 신고 없이 임의로 철거한 상태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과실 유무,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그에 따른 손해액 산정 등이 행해져야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처리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신청인은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임.

● 이 민원 주차장 조성공사의 진입로의 일부 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 개선 요구에 대한 판단

- 신청인과 인근 주민들은 이 민원 주차장 조성공사의 진입로 위치가 일부 변경되어 주차장 서측 남목 20길의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이에 피신청인은 2020. 7. 31. 주민설명회(동구청장 주재)에서 이 민원 주차장 조성공사로 인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교통 소음 역시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관리 기준 이하일 것이라는 교통성 검토 결과*를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과 주민들도 수긍하였음.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교통성 검토[(주)부광엔지니어링]

- 남목20길 교통(주차장 조성 후) 26대/시간(증 13대/시간), 337대/일(증 111대/일)

- 교통 소음(주차장 조성 후) : 47.1dB(증 1.4dB)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1. 도로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dB(A))	68	58
	진동 (dB(V))	65	60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교시지역	소음 (LeqdB(A))	73	63
	진동 (dB(V))	70	65

5 결론

- 이 민원 주차장 조성공사의 절토 사면 안전성 검토 결과, 교통성 검토 결과, 소음·진동 및 비산 먼지 발생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이 민원 주차장 조성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것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이 민원을 종결.

8 공유재산 수의매각 요청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099(2020. 9. 7.) / 2020. 10. 18.
- 신청인/피신청인 : ○○○(부산 금정구) / 울산광역시(회계과)
- 결정결과 :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권준우)

1 민원취지

- 울주군 ○○면 ○○리 620-10번지 대 328.9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상 울산광역시 소유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인 옛 ○○ 농업인 상담소가 신청인 소유 토지 울주군 ○○면 ○○리 620-4번지 대 153㎡(이하 '신청인 소유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침범하고 있는데, 애로 사항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이 민원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해 달라.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2. 12. 5. 그 소유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 민원 부지는 1990. 12. 7. 이전에 취득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으로 현재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고, 이 민원 건물은 1980년대쯤으로 준공일자가 추정되며(건축물대장 1994. 12. 31. 소유권 보존) 준공된 이후 농촌지도소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나, 2010. 7. 13. 용도폐지 된 상태임

(단위 : ㎡, 원)

소재지	구분	면적	지목	기준가격*	재산구분	비고
울주군 ○○면 ○○리 620-10	계	328.96		67,293,120		
	토지	248	대지	63,488,000	일반재산	2010. 7. 13. 용도폐지 및 재산관리관 변경 (농업기술센터 → 회계과)
	건물	80.96		3,805,120	일반재산	

* 기준가격 : 토지(공시지가 256,000원 × 면적 248㎡) / 건물(시가표준액)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은 침범한 면적의 확인을 위해 2020. 5. 25. 측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 소유 토지를 이 민원 토지가 일부 침범(21m²)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추진경과
 - 2020. 5. 8. : 민원(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요청) 검토 요청(울주군 회계정보과-16068)
 - 2020. 5. 15.~ 20. : 토지사용승낙여부 및 건축관련 자료 조회
 - 2020. 5. 19.~ 22. : 자료 부존재 회신(농기센터 농업지원과-3830, 울주군 건축과-33357)
 - 2020. 5. 25. : 이 민원 건물 측량 실시
 - 2020. 6. 16. : 민원서 접수에 따른 검토 결과 제출(회계과-18951) → 울주군
 - 2020. 6. 30.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1차) – 공유재산 매각 재요청
 - 2020. 7. 17. : 국민신문고 민원(1AA-2006-0883358)-처리결과 안내
 - 2020. 7. 23.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2차) – 민원회신 근거자료 제출 요청
 - 2020. 7. 31. : 국민신문고 민원(1AA-2007-0622417)-처리결과 안내
 - 2020. 9. 7. : 시민신문고위원회 민원 접수
- 현장사진



3 피신청인 의견

- 이 민원 토지는 울산광역시청 소유의 일반재산으로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향후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보존하여야 할 부지로 판단하고 있어 이 민원 토지 및 건물의 매각은 어려운 상황임.
- 신청인의 재산권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예산 확보 후 이 민원 건물의 철거 및 이 민원 건물이 신청인 소유 토지를 침범한 면적에 대하여 감정평가 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음.

4 판단

-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침범한 것에 대한 해결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은 2020. 5. 25. 침범면적 확인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였고, 측량 결과 이 민원 건물이 신청인 소유 토지를 신청인이 2002. 12. 5. 취득한 시점부터 일부 침범(21㎡)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건물의 철거를 요구 할 수 있고, 이 민원 건물이 신청인 소유 토지를 일부 침범한 기간에 대하여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재정법 제8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 토지를 2002. 12. 5. 부터 일부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최근 5년간의 사용료에 대해서만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침범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이 신청인 소유 토지 정당한 권원 없이 일부 침범한 것에 대해 이 민원 건물 철거하고 그와 더불어 신청인에게 최근 5년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이 민원 토지의 매각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행정청인 피신청인이 일반재산에 대한 매각을 함에 있어서는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사적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01395 참조),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향후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보유해야 할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어 신청인에게 매각 할 수 없다는 주장한 것에 대하여 달리 위법·부당함을 찾을 수가 없음.

5 결론

- 피신청인은 이 민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① 2021년에 이 민원 건물을 철거 할 것이며, ② 위 민원 건물이 신청인 소유 토지를 일부 침범한 기간에 대하여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 할 것임을 알려온 바, 이 부분에 대하여 조사중 해결이 된 것으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함.

9 도시가스 배관 인입에 따른 민원해소 요청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148(2020. 12. 3.) / 2021. 1. 18.
- 신청인/*이해관계인 : ○○○(남구 ○○로) / 경동도시가스
- 결정결과 : 조사중 해결(주심위원 : 김승호)

1 민원취지

- 울산광역시 남구 ○○로 46번길 33 ○○시장 비동 121호(이하 '이 민원 건물' 이라 한다)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착공하려 하였으나 주변 상가 및 주택 주민들이 소음 및 건물 균열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공사를 반대하고 있어 중재를 통해 해결해 달라.

2 사실관계

- 이 민원 건물에 도시가스를 인입하는 배관 분기점이 차량통행과 주민들이 통행하는 일상의 도로 (폭 6m)에서 분기하여 도로를 횡단하여 이 민원인 건물에 지하로 매설하는 공사로서 도로 굴착 시 특수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주변상가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휴일 오전에 공사를 하여 영업시간 및 야간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음.



- 1차 공사를 진행 할 때 대형 굴삭기와 브렉카를 이용해서 굴착을 시도하여 주변 상가 및 주택의 거주민이 심한 소음과 진동을 감지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해 관계인(경동도시가스)을 불러서 최신품법인 심도 커팅기를 이용하여 심도(1.2m)까지 커팅을 하고 뜯어내기식 방법으로 굴착을 하면 진동과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하고 비용 측면에서 다소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나 이 방식으로 진행 할 것을 요청하였음.
- 본 고충민원은 신청인과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상반되는 입장 차이를 소통과 상호 이해하는 마음의 중재를 우리 위원회가 해결하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신청인의 고충을 헤아려 신청인 및 인근 상인 그리고 주택에 사는 주민과 공사방법과 피해에 대한 중재를 시도하였고 당사자 간에 2회에 걸친 회의를 하여 양측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2021. 1. 10. 공사를 실시하고 신청인으로부터 도시가스를 정상적으로 공급 받고 있고 장사도 차질 없이 영위하고 있어 고충사항이 해소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음.



3 결론

- 신청인의 고충사항이 해소되었으므로 이 민원을 종결 하고자 함.

마 | 기각

1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002(2020. 1. 6.) / 2020. 4. 14.
- **신청인** : 주식회사 ○○○○(울주군 ○○읍)
- **피신청인/관계부서** : 울산광역시(지역개발과) / 도시계획과, 자원순환과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김승호)

1 민원취지

- 신청인은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울산 울주군 ○○읍 ○○리 919-8 공장용지 4,301.2㎡, 같은 리 920 공장용지 71,317.6㎡ 및 같은 리 921-5 공장용지 25,061.4㎡(합계 100,680.2㎡.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고자 개발계획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① 폐기물시설 설치를 위한 관련법령의 법정계획(자원순환시행계획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또한 ② 장래의 산업시설용지 수급상황이 면밀히 검토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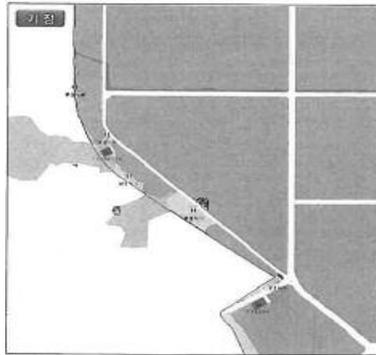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9. 11. 20.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매립시설)을 설치하고자 아래와 같은 사업계획이 포함된 이 민원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9. 12. 20. 이 민원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음.

[이 민원 신청의 사업 개요]

- 위치 : 울산 울주군 ○○읍 ○○리 919-8 · 920 · 921-5
- 토지이용계획 변경 : 산업용지 → 폐기물처리시설(100,680.2㎡)
- 폐기물처리용량 : 2,439,526㎡ → 5,583,666㎡(증 3,144,140㎡)
- 토지소유자 : 주식회사 △△△△△△
- 토지사용 동의내용 :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서류 제출에 한함

〈 토지이용계획 변경 전 〉



〈 토지이용계획 변경 후 〉



-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산업단지에 위치하여 있고, 1974. 4. 1.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 (건설부 고시 제92호)되어 1996. 9. 5. 이 민원 산업단지로 개발계획 변경고시(경남도고시 제 1996-157호)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290,515㎡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이 민원 산업단지 현황 〉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위치 : 울주군 ○○읍
- 면적 : 25,939,303㎡
- 개발기간 : 1974년 ~ 2024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 주요 유치업종 : 석유정제, 동·아연 등 비철금속, 화학펄프공업, 조선기자재 및 기타제조업, 석유비축시설

○○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



(2018. 10. 2. 기준)

(2019. 10. 31. 기준)

구분	산업용지	상업시설 용 지	지원시설 용 지	주거시설 용 지	공원·녹지 용 지	공공시설용지 (폐기물처리시설)	미지정
면적 (㎡)	16,476,430	48,805	80,480	802,180	840,862	2,382,663 (290,515)	16,476,430
구성비 (%)	63.5	0.2	0.3	3.1	3.3	9.1 (1.1)	20.5

- 토지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1994. 8. 24. 구획정리 완료되어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으며, 공장등록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임. 신청인은 2019. 11. 18.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 동의를 받고 매매대금 420억 원으로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음.
- 울산광역시 자원순환과장이 제출한 울산시 민간 매립업체 현황

(2019. 10. 31. 기준)

업체명	허가 사항		매립량 (㎡)	잔여용량 (㎡)	사용 예측기간 (년)
	면적(㎡)	용적(㎡)			
계(3개사)	337,142 (401,183)	6,527,690 (7,912,884)	6,299,678	228,012 (1,786,104)	1.0 (6.7)
(주)코엔텍	184,316 (248,357)	3,207,444 (4,409,000)	3,027,513	179,931 (1,381,487)	1.7 (13.7)
(주)유니콘	62,620	1,194,920	1,148,639	46,281	1.0
(주)이에스티	90,206	2,125,326 (2,308,964)	2,123,526	1,800 (185,438)	0.3 (5.3)

* (): (주)코엔텍 개발예정인 120만㎡, (주)이에스티 개발 중인 18만㎡ 포함했을 경우의 값

3 피신청인 의견

- 지역개발과장
 - 이 민원 토지는 ○○국가산업단지(이하 '이 민원 산업단지'라 한다)에 위치하여 있고, 이 민원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는 폐기물처리시설(290,515㎡)이 이미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 민원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매립)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서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따라서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이기 때문에 이를 매립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장래의 산업시설용지 수급상황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또한 폐기물시설 설치를 위한 관련법령의 법정계획(자원순환시행계획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음.

● 관계기관(부서)의 의견

- 도시계획과장

-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따르면, 폐기물계획은 목표연도까지의 발생량을 예측하여 처리계획을 제시하고, 사업장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제고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별도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체적인 입지를 정하고 있지는 않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에 해당할 경우 도시계획에 우선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수립이 가능함.

- 자원순환과장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라 5년마다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원순환시행계획은 국가의 폐기물관리 최상위 계획인 환경부의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시의 자원 및 폐기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 자원순환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임.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국가단위계획인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자원순환시행계획에 포함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계획은 장기적인 폐기물처리에 대한 전망을 담는 수준의 계획이므로,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법정계획서에 사업장 입지(위치)와 용량이 확정되지 않은 민간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계획의 반영은 적절하지 않음.

4 판 단

- 이 민원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는지 여부
 - 이 민원 산업단지는 다른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개발 시 일부 용지를 실수요자 개발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토지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1994. 8. 24.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이미 공장등록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민원 토지가 속한 지역은 이 민원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역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매립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적용되어야 함.
-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지 여부
 - 산업입지법 제13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1항,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특히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30,000㎡ 이상이거나, 토지이용계획상 변경되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절차를 거친 후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한편, 산업입지법 제6조 제3항·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시·도지사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민원 개발계획변경 신청은 토지이용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을 290,515.2㎡에서 100,680.2㎡ 증가된 391,195.4㎡로 변경(100분의 34 변경)하는 것이고,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을 2,439,526㎡에서 3,144,140㎡ 증가된 5,583,666㎡로 변경(100분의 128 변경)하는 것이므로, 산업입지법 제6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런데 산업입지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비롯한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이 민원의 경우와 같이 선행절차로서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규정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의 선행절차를 고집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의 취지와는 달리 산업단지의 대부분이 폐기물매립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 민원의 경우와 같이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계획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장래의 산업시설용지의 수급상황, 자원순환시행계획(즉, 관할 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어느 위치에 매립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매립)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서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임. 더욱이 이 민원 산업단지 개발계획은 이미 국가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으므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되면 그로써 국가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임.

- 이 민원 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짐. 다만 행정주체의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행정계획에서는 그에 관련되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사이에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음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467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3640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50382 판결 등)
 -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민원은 토지이용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을 290,515.2㎡에서 100,680.2㎡ 증가된 391,195.4㎡로 변경(100분의 34 변경)하는 것이고,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을 2,439,526㎡에서 3,144,140㎡ 증가된 5,583,666㎡로 변경(100분의 128 변경)하는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민원산업단지 개발계획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290,515㎡가 반영되어 이미 매립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점, 울산광역시에서는 2019. 12. 31. 현재 3개 업체에 6.7년 사용

할 수 있는 잔여매립량 1,786,104m³을 확보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이 민원 산업단지에 폐기물매립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울산시에는 국가산업단지로서 이 민원 산업단지와 미포국가산업단지가 있지만 산업집중화 현상으로 여전히 산업시설용지의 수요가 많은 점, 이 민원 산업단지에 추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로 인한 환경오염의 발생은 물론 이에 따른 인근 공장이나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달리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임. 다만, 향후 울산시의 자원순환시행계획(즉, 관할 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에 따라 추가로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5 결론

-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2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010(2020. 1. 30.) / 2020. 3. 9.
- 신청인/피신청인 : ○○○(울주군 ○○읍) / 울주군(세무1과)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권준우)

1 민원취지

- 신청인은 2008년 매입한 울산 울주군 ○○읍 ○○리 산160번지 임야 220,706㎡(이하 '이 민원 임야'라 한다)에 대해 매년 평균 10,000원 이내로 부과되던 재산세(이하 '이 민원 재산세'라 한다)가 2019년에는 2015년도 분부터 매년 270,000원씩 4년 치가 소급 부과되었는데 이미 납부한 재산세에 대한 소급 분까지 재산 공유자 간 차등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8. 5.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통해 이 민원 임야 6분의 4를 취득하였으며 이 민원 임야의 공동소유자는 1959.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1971. 7. 28. 등기접수) 현재 같은 임야의 지분 6분의 2를 소유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2008. 5. 13. 신청인이 이 민원 임야를 취득한 이후에도 기존 소유자가 적용받았던 분리과세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징수하여 왔으나, '2019년 울산광역시 종합감사'결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9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기존 부과액을 제외한 차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음.

4 판 단

- 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를 분리과세 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제야 지난 5년간의 재산세를 소급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민원 임야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같은 조 제9항에서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 1. 1.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2008. 5. 13. 이 민원 임야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됨.

* 공동소유자의 경우 1959.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1971. 7. 28. 등기접수) 이 민원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음

- 또한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토지)의 납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나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한 2008년 이후 재산세(토지)를 부과하면서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소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 부과 권한이 소멸되지 아니한 과세기간(2015. ~ 2019.) 내의 재산세를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달리 위법·부당함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5 결 론

-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3 불법행위 조치요청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039(2020. 4. 7.) / 2020. 6. 15.
- 신청인/피신청인 : ○○○(남구 ○○로) / 울주군(도시과, 건축과, 생태환경과)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권준우)

1 민원취지

- 울주군 ○○면 ○○리 1526-4번지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상에 불법 행위(형질변경 및 성토, 불법 건축행위, 오·폐수 무단 유출)를 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해 달라.

2 사실관계

- 용 도 : 가설건축물(간이축사, 가축분뇨처리용, 임시창고)
 - 위 치 : 울주군 ○○면 ○○리 1526-4번지
 - 대지면적 : 3,287㎡
 - 규 모 : 지상 1층 / 3개동, 연면적 598.56㎡
 - 존치기한 : 2022. 05. 10.까지
 - 추진경위
 - 2019. 5. 9.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접수
 - 2019. 5. 10.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 2019. 6. 14. :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2,438,980원)
 - 2019. 6. 20.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 교부
- 이 민원 관련 추진경위
 - 2020. 2. 5. : 진정민원 접수(도시과)
 - ※ 민원내용
 - 1) 축사 건축에 따른 불법 성토 신고(도시과)
 - 2) 축사 허가에 따른 도로 폭 적정 여부(도시과, 건축과)
 - 3) 축사 폐수 문제 및 주거지와 이격거리 적정 여부(축수산과, 생태환경과)

- 2020. 2. 13. : 진정민원 회신(도시과)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이 민원 토지 소유자)
- 2020. 4. 17. : 원상회복 명령(이 민원 토지 소유자)
- 2020. 6. 1. : 불법 개발행위 고발(도시과 → 울주경찰서)

3 피신청인 의견

- 울주군수(도시과장, 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
 - 이 민원 토지에 건축한 축사(이하 '이 민원 가설건축물'라 한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협의 신청서 상 성토계획이 없었으며
 - 이 민원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 성토 및 석축 시공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위반한 사항이며, 원상회복 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임.
- 울주군수(건축과장, 이하 '피신청인 (2)')이라 한다
 - 이 민원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19. 6. 20. 적법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수리되었음.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실질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해당 건축물이 이미 건축되어있고 토지 불법형질 변경 등의 불법사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주인허가) 할 경우 위반 사항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여부는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울주군수(생태환경과장, 이하 '피신청인 (3)')이라 한다
 - 이 민원 건축물은 거리제한 250m 이내인 가축사육제한구역이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 해당되어 2019. 5. 13.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됨.

4 판단

- 감사원이 2011. 7. 환경부에 대하여 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감사 실시 결과로 인해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환경부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폐쇄명령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였으며 이 개정안에 따라 행정청은 2020. 9. 27.까지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적법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 토지의 가설건축물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로 2019. 6. 20. 가설건축물(간이축사, 가축분뇨처리, 임시창고) 축조신고가 된 사실이 있음. 참고로 2020. 5. 현재 우리 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출처: 시 농축산과)은 아래 표와 같음.

관리능가	완료			인·허가 진행 중	기타
	인·허가	폐업	소계		
514개소	336개소	23개소	359개소	116개소	39개소

- 이 민원 토지가 불법으로 성토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해보건대,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토지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성토, 콘크리트 포장) 및 공작물(석축) 설치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이 민원 토지 소유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위반을 근거로 2020. 2. 13. 처분사전통지, 2020. 4. 17. 원상회복 명령, 2020. 6. 1. 고발조치(울주경찰서) 한 바 있고 이와 같은 피신청인 (1)의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달리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음.

※ 고발내용: 토지형질변경(성토 H=0~2.0m A=3,800㎡, 콘크리트 포장 A=930㎡) 및 공작물(석축매쌓기 H=0~2.0m L=110m) 설치

- 이 민원 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오·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환경부 고시 제2019-173호」(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에 따라 관련서류(축산업등록증, 건축물대장, 재산세 부과영수증, 가축사육확인서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적법화가 가능함. 이 민원 토지는 2015. 12.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5-234호」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된 바 있으며, 이

민원 토지 소유자가 제출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청서의 축산업등록증 및 가축사육확인서를 살펴보면 이 민원 토지 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신청인(2)이 2019. 5. 13.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사항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도로가 없음에도 주거용 가옥 및 대규모 축사에 대하여 허가를 해 준 것은 피신청인의 잘못된 행정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건축물은 그 소유자로부터 2019. 5. 9.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이 접수 되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에 따른 이행강제금(금 2,438,980원) 부과 후 2019. 6. 20.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된 사항으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피신청인의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보이지 않음. 또한 소유자가 같은 인근 부지(○○리 1526-2번지)에 건축된 주거용 가옥은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무단 신축하여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피신청인(3)이 적법하게 원상복구 및 시정 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위법·부당함을 찾아 볼 수 없었음.

5 결론

-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4 호계매곡지구 준주거용지 오수관 이설요청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045(2020. 5 11.) / 2020. 6. 29.
- 신청인/피신청인 : ○○○(북구 ○○○로) / 북구(건설과)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김승호)

1 민원취지

- 북구 호계매곡지구 내 준주거부지(18필지, 이하 '이 민원 부지'라 한다)가 경사형 부지로 되어있어 성토 없이 건축행위를 할 경우 오수가 역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세워 달라.

2 사실관계

- 호계매곡지구 사업개요
 - 사업명 :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 사업시행자 :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
 - 사업기간 : '08. 11. 27. ~ '18. 9. 20.
 - 총사업비 : 114,880백만 원
 - 진행사항
 - 2005. 9. 15.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 2006. 1. 24. :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14. 7. 7. : 공사착공
 - 2018. 9. 20. :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공고
- 이 민원 관련 추진경위
 - 2020. 2. 5. : 이 민원 부지 오수관 신설 요청
 - 2020. 2. 12. : 오수관 추가신설 불가 통보

3 피신청인 의견

- 호계매곡지구 내 기존 오수관로와 이 민원 부지 최하단부와의 높이 차이가 50cm미만으로 역구배 차이가 적어 건축계획 시 자연유하로 기존 오수관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부지 하단부 일부를 성토하거나 건축 설계 시 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4 판단

- 호계매곡지구 내 오수처리(아래그림 참고)는 1구역(서측지구, 노란색 부분)과 2구역(동남측지구, 파란색 부분)으로 구분되고, 1구역 오수는 호계주공아파트 오수와 합류하여 마동로 오수관(D300)에 유입되어 호계로로 나가고, 2구역 오수는 호계7길 오수관(D350)에 유입되어 호계천으로 빠져나감.



- 1구역과 연결된 마동로 구간은 청정 시 시간최대 오수량이 관단면의 90%, 여름철 강우 시에는 역류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추가로 호계매곡지구 오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관로의 용량 부족을 해소하고자 현재 시비(하수도특별회계) 200백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추가 매설공사* 중에 있음.

* 호계동 수성천 하수관거 부설 공사('20. 5.~10.) : L=212m

- 이 민원 부지는 준주거용지로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건폐율 70%, 용적률 350%, 7층 이하)이 가능하고, 이에 발생하는 오수량도 상당하므로 호계매곡지구 배수유역을 기존 2구역에서 1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관로용량 부족현상이 더 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부지는 공공하수관로와 부지 하단부와의 고저차(50cm 미만)가 적고 현재 2개 필지는 건축물 준공, 1개 필지는 건축공사 중, 1개 필지는 건축허가 처리된 것으로 볼 때 충분히 자연유하 식으로 오수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신청인의 궁극적인 요구사항은 오수관 이설 시에 대로변과 건축물 1층 바닥 레벨 차이가 해소됨에 따라 대로변에 접한 녹지를 통해 건축물 이용객의 진출입을 용이하기 위한 사항으로 녹지를 통한 이용자들의 진출입은 녹지를 훼손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합당하다 판단됨.



[준 주거용지 현장사진]



[준 주거용지 측면사진]

- 하지만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피신청인은 시공 시에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오수관로의 종합적인 계획을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음은 아쉬움으로 남음. 피신청인은 이와 유사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시 이와 같은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5 결론

-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5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063(2020. 6. 22.) / 2020. 8. 17.
- 신청인/피신청인 :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북구 ○○길)/북구(부과과)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권준우)

1 민원취지

- 울산 북구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개발사업'이라 한다) 구역 외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조성한 완충녹지 26,262㎡와 이 민원 개발사업 구역 내 공원 39,804.3㎡ 합계 66,066.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해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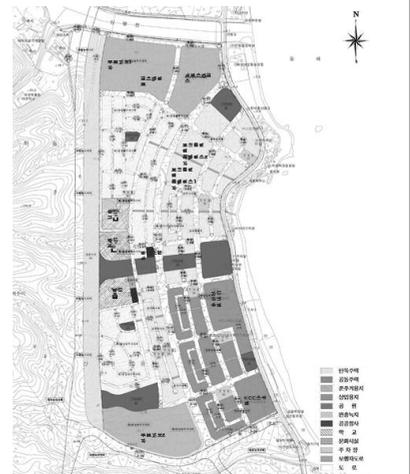
2 사실관계

- 이 민원 개발사업 현황

< 이 민원 개발사업 현황 >

- 사업명 : ○○○○지구 도시개발사업
- 시행자 :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위치 : 울산 북구 ○○동 520-3 일원
- 시행기간 : 2007. 1. 4. ~ 2020. 2. 13.
- 시행방식 : 환지방식
- 총사업비 : 193,110백만 원
- 면적 : 997,478.1㎡
- 준공일자 : 2020. 2. 10.
- 주요 기반시설
 - 도로 : 대로 1, 중로 21, 소로 36개 노선
 - 공원 : 6개소, 79,754.5㎡
 - 녹지 : 3개소, 111,102.9㎡(구역외 1개소 포함)

[토지이용계획도]



- 이 민원 개발사업 추진경위
 - 2004. 12. 23. : 도시개발구역 지정(울산광역시 고시 제2004-212호)
 - 2006. 3. 30.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 2006. 5. 17. :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07. 1. 4. : 실시계획인가
 - 2007. 11. 13. : 환지계획인가
 - 2011. 7. 14. : 구역 외(도로, 진출입램프, 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 2014. 5. 29. : △△△△△ △△△△ 1차 사용검사승인(738세대)
 - 2015. 4. 24. : △△△△△ △△△△ 2차 사용검사승인(1,270세대)
 - 2016. 3. 24. : 지형도면(변경) 고시
 - 2016. 4. 15. : □□□□□□ 사용검사승인(890세대)
 - 2018. 5. 8. : 실시계획(변경: 중앙공원, 우수관로) 인가
 - 2020. 1. 8. : 조경시설물(가로수 20m 이상, 근린공원, 완충녹지) 인계 · 인수
 - 인계자 :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 인수자 : 울산광역시(녹지공원과장)
 - ※ 시설물 관리이관 : 울산광역시 → 북구, 울산시설공단
 - 2020. 2. 13. : ○○○○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 피신청인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신청인에게 이 민원 개발사업 관련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 · 징수하였으며, 신청인은 2020. 3.경 이 민원 개발사업 토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2020. 3. 19. 이의제기 결정에 따라 이 민원 개발사업 토지 중 도로에 대한 과년도(2015. ~ 2019.) 부과 분 총 9,746,950원을 감액 · 환급 받고, 피신청인은 공원 및 완충녹지지역은 환급 대상이 아님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였음.

3 피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을 근거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 조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부과한 세금의 과세기간 동안 이 민원 토지의 소유 및 관리주체는 신청인이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도로인 토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환급하였고, 이 민원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적법하게 부과하였음.

4 판 단

- 이 민원 토지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해 살펴보면,
 -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이라 함은 법문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임. 이와 같은 비과세요건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3026).
 -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그 사용에 있어 지속성이 요구되어야 하고, 일시적, 임시적 사용인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4631).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민원 토지가 도시개발법상 공원 및 완충녹지로 고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점유 또는 관리하면서 이를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① 신청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이후인 2020. 1. 8.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시설물(가로수, 근린공원, 녹지)을 울산광역시(공원녹지과장)에게 인계한 점, ②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피신청인이 실제 사용권한을 가지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 민원 토지를 직접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토지를 비과세 대상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따라서 피신청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경감하여 과세한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판단됨.

5 결 론

-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6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취소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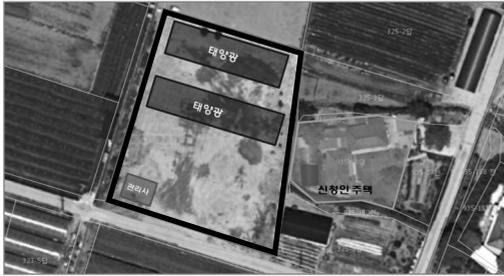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078(2020. 7. 13.) / 2020. 8. 24.
- 신청인/피신청인 : ○○○(남구 ○○로) / 울산광역시(에너지산업과), 북구(도시과)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김승호)

1 민원취지

- 북구 ○○동 325-4번지(이하 '이 민원 부지'이라 한다) 건축물 지붕 태양광 발전소(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 설치허가가 부당하니 취소를 해 달라.

2 사실관계

- 태양광 발전소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동 325-4(건축물 지붕 위)
 - 용도지역 :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
 - 규 모
 - 건축물 : 대지면적 2,047㎡, 건축면적 407.83㎡, 연면적 407.83㎡
지상1층/3동, 동·식물관련시설(작물 재배사, 관리사)
 - 태양광 : 태양광발전 99.9kW, 380V
(태양광모듈 370W×270매, 인버터 50kW×2대)
 - 진행사항
 - 2019. 12. 11. : 건축물 사용승인
 - 2020. 4. 24.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 피신청인(1)
 - 2020. 5. 15. : 개발행위허가(공작물 설치) - 피신청인(2)
 - 2020. 5. 27. : 공사계획신고 수리 - 피신청인(1)
 - 2020. 8. 19. : 개발행위준공(공작물 설치) - 피신청인(2)



[위치도]



[현장사진]

- 이 민원 관련 추진경위

- 2020. 7. 7. : 진정서 접수

- 진정내용 : 가정집 바로 옆 대용량 상업용 발전소 설치로 인한 소음, 화재위험 등 부당한 태양광 발전소 허가 취소 요청

- 2020. 7. 10.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 2020. 7. 19. : 언론보도(제일일보 - 울산, 집 앞에 태양광발전소 주민들 강력 반발)

- 2020. 7. 16. : 진정서 회신

- 2020. 7. 17. :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3 피신청인 의견

- 울산광역시장(에너지산업과장, 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 등 검토결과 문제가 없으므로 허가 취소는 불가능함.

- 북구청장(도시과장, 이하 '피신청인 (2)')이라 한다

- 울산광역시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우리 구에서 공작물설치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한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하였으므로 허가 취소는 불가함.

- 향후 피해 발생 시 민원인과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주 간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4 판단

- 피신청인(1)은 이 민원 부지가 생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발전시설의 입지는 가능하고 「전기사업법」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아래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2020. 04. 27.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처리 하였음.
- 피신청인(2)은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태양광 발전시설)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고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받았고 관련부서 협의 및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0. 5. 15. 개발행위허가 처리한 사항임. 따라서 피신청인(1, 2)이 허가 처리한 사항에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판단됨. 또한 태양광 사업자가 배수로를 새롭게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태양광 집광판 경계부분에 이동식 시설물(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혹시 모를 전자파를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제안을 통지 하였으나 신청인이 오직 철거만을 주장하는 관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소음발생, 화재발생,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성, 인근 지가 하락 그리고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취소를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 사항은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허가 취소는 불가한 사항이고 만약 신청인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직접 이를 입증하여 민사 소송을 통하여 태양광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결론

-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7 농업진흥구역 해제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071(2020. 7. 1.) / 2020. 8. 3.
- 신청인/피신청인 : ○○○(울주군 ○○읍) / 울산광역시(농축산과)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차태환)

1 민원취지

- 신청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면 ○○리 1065-9 대 659㎡, 같은 리 1065-26 답 188㎡, 같은 리 1065-27 목장용지 481㎡(이하 '이 민원 토지들'이라 한다)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은 곳이니, 이 민원 토지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해 달라.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20. 5. 20. 이 민원 토지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이 2020. 5. 28. 이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이 민원 토지는 1975. 5. 30. 경지정리가 완료된 곳으로 새들의 상단 부(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기반 시설이 잘 정비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② 망 △△△은 1994. 12. 22.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전용을 받아 축사를 신축하였고 그 중 일부인 봉계리 1065-9 대 659㎡를 2005. 10. 21. 대지로 지목 변경하였으며, ③ 이 민원 토지들 일원은 경지정리와 농업기반시설(용수로)이 잘 정비된 곳으로서, 새들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 민원 토지들을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한다면 새들 전체를 잠식할 수 있어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음.

[이 민원 토지 이용 현황]



3 피신청인 의견

-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8조에는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와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 농로 및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실제로 영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함.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1호 다목과 관련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진흥지역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의 출입, 농기계 통행 등 영농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농지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됨으로써 권역별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한 그 면적이 3ha 미만일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제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민원 토지들을 비롯한 인근 토지들은 1975. 5. 30. 경지 정리가 되어 인근 백양지(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이하 '인근 저수지'라 한다)로부터 수리시설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곳이므로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

- 또한, 1994. 12. 22. 신청인의 부 망 △△△은 이 민원 토지들로 분할되기 전의 울산 울주군 ○○면 ○○리 1065-9 답 1,328㎡에 대한 농지전용 신고를 한 후 축사(대지면적 1,140㎡)를 신축하였으나 농지의 정상적인 이용행위로 보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음. 이 민원 토지들 중 같은 리 1065-9 대 659㎡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농지 전용(축사) 이후 5년 이상 경과로 2005. 10. 21. 대지(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지목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이 민원 토지들이 경지정리와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새들(면적 130,000㎡ 정도)의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불가하며, 농업진흥구역의 농업용수 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보호구역으로의 변경도 불가함.

4 판 단

-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2016. 12. 29.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진흥지역 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①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사업 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②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경우에는 도로(교차로)·하천 등과 연결된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토질이 척박하여 보전가치가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인지의 여부, ③ 해당 시설의 기능·용도 등을 감안한 입지 가능 지역에 진흥지역 외의 활용 가능한 다른 토지가 있는지의 여부, ④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로·수로가 차단되거나 오폐수가 유출되어 인근 농지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업용수 기타 농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진흥지역 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① 농지로의 출입, 농기계 통행 등 영농에 불편함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② 용·배수소가 차단되는 등 농지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는지 여부, ③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됨으로써 권역별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살피건대, 1994. 12. 22. 신청인의 부 망 △△△은 이 민원 토지들로 분할되기 전의 울산 울주군 ○○면 ○○리 1065-9 답 1,328㎡에 대한 농지전용 신고를 한 후 축사(대지면적 1,140㎡)를 신축하였음에도 농지의 정상적인 이용행위로 보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사실, 이 민원 토지들 중 같은 리 1065-9 대 659㎡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농지 전용(축사) 이후 5년 이상 경과로 2005. 10. 21.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 또한 농지의 경작을 위한

농업인의 편익을 위하여 행해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농업진흥구역
을 해제할 정도로 사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민원 토지들은 1975. 5. 30. 경지
정리가 완료된 곳으로서 인근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을 정도로 기반 시설이 잘 정비
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이 민원 토지들의 인근 토지들도 경지정리는 물론 농업기반시설(용수
로)이 완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 토지들로 인하여 영농활동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아니
하고 있는 점, 비록 이 민원 토지들 중 ○○리 1065-9 대 659㎡를 제외한 토지들 일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또한 잡초가 무성하여 도저히 경작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하나, 이는 토지
소유자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수목이나 잡초를 제거한다
면 영농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한 농
업진흥구역 해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이를 거부한 피신청인의 처분에 달리 위법
부당함을 발견할 수 없음.

5 결론

-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고 이 민원을 종결
하고자 함.

8 도로공사 관련 담장설치요구 등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095(2020. 8. 24.) / 2020. 10. 26.
- 신청인/피신청인 : ○○○(동구 ○○길) / 동구(건설과)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임용균)

1 민원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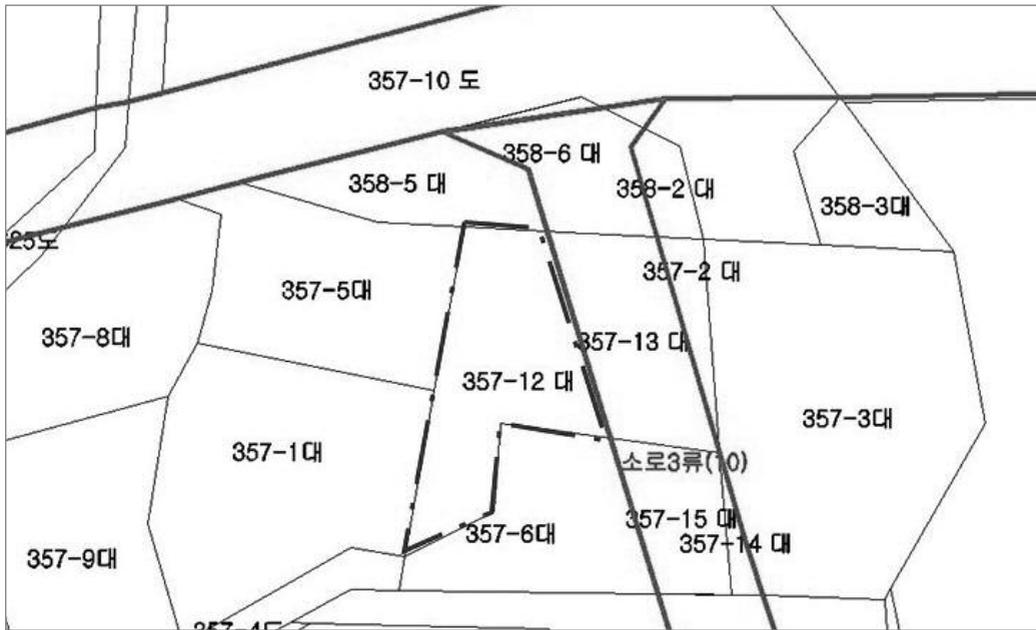
- 피신청인은 '○○동 소3-10호선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민원 도로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울산 동구 ○○동 357-5 대 133㎡ 지상 주택에 연접하고 있는 같은 동 357-12 대 117㎡(같은 동 357-2 대 209㎡ 중 이 민원 도로공사구역에 92㎡가 편입되고 남은 토지. 이하 '이 민원 연접지'라 한다)를 약 2미터 성토를 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없이 행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성토 비탈면을 보강할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민원 주택 및 담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 이를 원상 회복하게 해 달라.
- 울산 동구 ○○동 357-5의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담장(콘크리트 블록)이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인근 토지의 토압에 의해 무너질 우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건설과장)이 약속한 옹벽을 빠른 시일 내 설치해 달라.

2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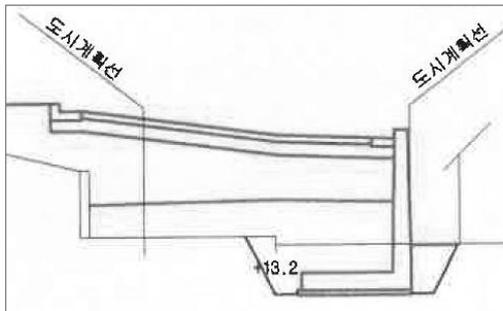
- 추진 경위
 - 1994. 3. 21. : 울산도시계획시설(소로3-10호선) 결정(울산시 고시 제1994-40호)
 - 2018. 5. 31. : 실시계획인가(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8-42호)
 - 2020. 1. 30. : 이 민원 도로공사 착공
 - 2020. 5. 7. :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0-47호)
 - 기간 연장 : 2018. 5. 31. ~ 2020. 12. 31
 - 2020. 7. : 이 민원 잔여지에 성토할 것을 요구(토지 소유자)
 - 2020. 7. 20. : 이 민원 잔여지에 성토
 - 2020. 12. 31. : 이 민원 도로공사 준공(예정)

○○동 소3-10호선 도로개설공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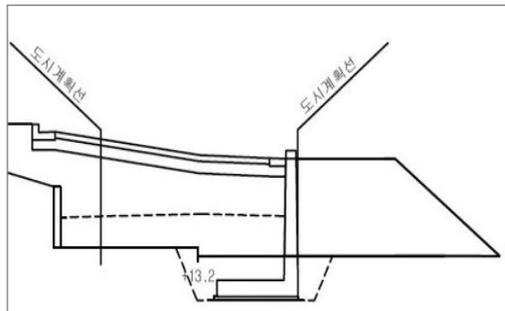
- 위치 : 울산 동구 ○○동 357-12 일원
- 사업개요 : 도로개설 L=100m, B=6.0m(면적 710㎡)
- 공사기간 : 2020. 1. 30. ~ 2020. 12. 31.
- 소요 사업비 : 168,039천 원(도급 125,490, 관급 40,825)



[용지도]



이 민원 분할된 토지부분 횡단면도(당초)



이 민원 분할된 토지부분 횡단면도(변경)

[이 민원 도로공사로 분할된 토지부분 횡단면도(NO.0+13.2)]

3 피신청인 의견

- 이 민원 도로공사구역의 경계부분에 당초에 옹벽을 설치하려던 계획을 성토 비탈면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
 이 민원 도로공사의 구역인 같은 동 357-13 대 76㎡에 길이 20.4m, 높이 3.6~3.7m의 L형 옹벽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 민원 연접지의 소유자로부터 이 민원 연접지를 성토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가목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변경) 없이 2020. 7. 20. 성토 사면(비탈면)으로 변경 시공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이 민원 주택과 담장의 피해는 없었음.
- 이 민원 주택의 담장을 대체할 옹벽 설치 요구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북측에 공용 도로가 위치함으로써 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으로 인하여 이 민원 담장이 기울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이 민원 도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여 이를 전제로 한 이 민원 주택의 담장을 대신할 옹벽의 설치를 약속한 것일 뿐이므로, 신청인이 계속하여 옹벽설치를 요구한다면 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에 따라야 할 것임.

4 판단

- 성토된 이 민원 연접지에 대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여부
 이 민원 연접지의 성토에 대해서는 이 민원 도로공사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민원 연접지의 소유자로부터 이 민원 연접지를 성토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피신청인이 이 민원 연접지를 약 2m 정도 성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상회복하려면 이 민원 연접지의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의뢰하여 실시한 성토 비탈면의 안정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아래의 [표 1] 같이 안전율이 허용 안전율 이상으로서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보이므로, 신청인의 원상회복 요구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임.

*“울산광역시 동구 ○○동 357-12번지 ○○동 소3-10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사면안전성 검토서”(검토자 대성엔지니어링 토질 및 기초기술사 최관희, 2020. 9.)

[표 1] 이 민원 도로공사로 분할된 토지 내 사면안전성 검토결과

구분	건기시 (F.S ≥1.5)	우기시 (F.S ≥1.3)	지진시 (F.S ≥1.1)	비고
A-A 단면	1,824	1,771	1,597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16.)

• 담장의 설치요구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콘크리트 블록 담장은 공용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토압으로 인해 이 민원 주택 담장이 균열과 함께 이 민원 주택 방향으로 기울어졌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민원 주택의 담장이 기울어진 원인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5 결론

- 성토된 이 민원 연접지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는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다만 담장의 설치요구에 대해서는 이 민원 도로공사로 인하여 담장이 기울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다시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함.

9 결혼식장 뷔페 집합금지 행정조치 유예결정 부당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100(2020. 9. 7.) / 2020. 10. 19.
- 신청인/피신청인 : ○○○(동구 ○○로) / 울산광역시(식의약안전과)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권준우)

1 민원취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 8. 23.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고위험시설(유형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뷔페) 중 결혼식장 뷔페에 대해서만 2020. 8. 24. 0시부터 집합금지 조치를 유예하여 시행함으로써, 뷔페 취소 및 환불을 받지 못하고 예식업체와 계약한 최저보증인원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으니, 집합금지 유예결정 특혜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 달라.

2 사실관계

- 그간 추진 경위
 - 2020. 8. 22. 08:30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영상회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0. 8. 22. 11:00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보건복지부장관 담화문 발표
 - 2020. 8. 22. 15:00 :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검토 보고
 - 2020. 8. 23.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1556(2020. 8. 22.)호](이하 '이 민원 중앙본부 조치'라 한다)공문 접수[재난관리과-12519(2020. 8. 23.)호]
 - 2020. 8. 23. 18:37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본격 적용에 따른 행정조치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236호, 이하 '이 민원 행정조치'라 한다)
 - 집합금지 고위험시설(5종) : 유형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2020. 9. 5.(토) 24:00.
- 단, 뷔페는 8. 24.(월) 0시부터 시행

- 2020. 8. 24. 14:42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본격 적용에 따른 행정조치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238호)
 - 집합금지 고위험시설(4종)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9종) :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등
 - 처분기간 : 2020. 8. 24.(월) 00:00 ~ 2020. 9. 5.(토) 24:00까지
- 2020. 8. 26., 2020. 8. 28.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 울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예외 적용에 대한 조사 요구
- 2020. 8. 26.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2020. 9. 1., 2020. 9. 2. : 국민신문고 민원 화신
- 이 민원 중앙본부 조치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피신청인이 2020. 8. 22.(토) 울산광역시시장에게 보고한 ‘코로나19 방역 2단계 격상 검토 보고’에 따르면 적용기간에 “단, 뷔페는 사전 식자재 구입으로 손실 과다 우려 ’20. 8. 24. 00시부터 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민원 행정조치를 2020. 8. 23. 18:37 울산시청 누리집에 게재하였음.
- 신청인은 2019. 12. 7. 울산 ○구 ○○로 303 소재 ‘△△△△ 웨딩 컨벤션’과 ‘본식&촬영계약서’, ‘웨딩연회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으며, 각 계약서에 따르면 예식일이 2020. 4. 5.(일) 12:30에서 2020. 8. 23.(일) 13:00로 변경되었음.
- 신청인은 ‘웨딩연회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0. 3. 3. 식사(뷔페)에 대한 계약금 5,250,000 원(성인 보증인원 150명×35,000원)의 50%인 2,625,000원(75명×35,000원)을 (주)□□□□ 측에 입금하였으며, 2020. 8. 19. 식사 보증인원(성인)이 150명에서 130명으로 조정되었고, 예식일인 2020. 8. 23. 성인 58명이 뷔페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

3 피신청인 의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가능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미 예약되어 2020. 8. 23.(일) 결혼식을 치르는 분들의 혼란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 중 뷔페에 대하여 2020. 8. 24. 0시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결정을 하였음.
- 결혼식장 인원제한 및 뷔페 음식점의 집합금지는 결혼식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뷔페 사업자의 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고, 신청인의 뷔페 취소 및 환불은 업체와의 계약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센터 등을 통한 협의가 필요함.

4 판단

- 이 민원 중앙본부 조치에 첨부된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에는 “적용 대상은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재난관리과장)은 이 민원 중앙본부 조치의 정부 실행방안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되 울산광역시 확진자 발생현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고위험시설 9종 중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은 2020. 8. 23.(일)부터, 4종(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PC방)은 2020. 8. 24.(월)부터 집합금지 하되, 시설별 소관부서 판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음.
- 앞서 살펴본 이 민원 중앙본부 조치의 내용을 보면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시점 등에 대해 지자체의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중앙본부 조치를 바탕으로 울산광역시 확진자 발생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 9종 중 소관시설인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 민원 행정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 민원 행정조치 검토과정에서 다음날 결혼식을 앞둔 시민들의 혼란과 사전 식자재 구입으로 인한 뷔페업체의 손실을 고려하여 뷔페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1일 유예한 피신청인의 결정에서 달리 위법·부당함을 발견할 수 없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행정조치 효력 발생일시 및 신청인의 결혼식 이후에 이 민원 행정조치를 게재하여 신청인에게 혼란을 일으키게 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보여지나 피신청인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긴급히 검토·결정한 후 고시문을 누리집에 게재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아니하였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음. 결국 피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게을리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5 결론

- 신청인이 문제를 제기한 집합금지 유예결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 달리 특혜가 없었으며, 피신청인이 내린 이 민원 행정조치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함

바 | 각하

1 신축아파트 품질검수 시행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004(2020. 1. 7.) / 2020. 1. 21.
- 신청인 : ○○○○ ○○○○ 입주예정자협의회(남구 수암로)
- 피신청인 : 울산광역시(건축주택과)
- 결정결과 : 각하(주심위원 : 김승호)

1 민원취지

- ○○○○ ○○○○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 임시사용승인 전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검수제도를 실시해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민원 공사는 ○○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1층~29층, 9개동, 81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로 2019. 12. 12. 남구청(건축허가과)에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2020. 1. 16. 현재 임시사용승인 적정여부에 대해 검토 중임.
-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는 입주자의 주거편익 향상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검수 위원이 현장에서 건축, 조경, 안전 등 분야별 시공 상태의 주요 결함이나 하자발생원인 등에 대하여 시정·자문하는 행정서비스 제도로써 법률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이 아님.
-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중재를 위해 사업주체인 △△△△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 시도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시공사 □□□□건설 부서장과 통화 연결(2020. 1. 14. 15:05분경) 되어 중재를 위한 회의개최 요청을 하였으나 법적 구비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임시사용승인을 앞두고 있고 입주를 조속히 희망하는 입주예정자가 있는 상황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반대하는 입주예정자 일부가 요구하는 품질검수 시행요청 사항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구두답변을 들었음.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상호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 민원 공사 개요 및 품질검수 추진경위
 - 대지위치 : 아음동 401-1번지 일원
 - 사업주체 : (주)△△△△
 - 시 공 사 : (주)□□□□건설, (주)▽▽▽▽
 - 규 모 : 지하 2층, 지상 21층~49층, 9개동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81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품질검수 추진경위
 - 2019. 11. 01. : 공동주택 품질검수 신청(남구 접수)
 - 2019. 11. 04. : 품질검수 신청서 진달(남구 → 시)
 - 2019. 11. 05. : 품질검수 신청에 따른 의견제출(시 → (주)□□□□건설)
 - 2019. 11. 08. : 품질검수 거부 의견제출((주)□□□□건설 → 시)
※ 거부사유: 입주지연 및 법적 의무대상 아님
 - 2019. 11. 11. : 품질검수 실시 협조요청(시 → (주)□□□□건설)
 - 2019. 11. 13. : 품질검수 거부 의견제출 - 2차((주)□□□□건설 → 시)
※ 거부사유: 법적 의무대상 아님
 - 2019. 11. 13. : 품질검수 실시 불가통보(시 → 남구)
 - 2020. 1. 07. : 진정민원 접수(시 건축주택과 접수)
 - 2020. 1. 08. : 품질검수 실시 협조요청(시 → (주)□□□□건설)
 - 2020. 1. 08. : 품질검수 거부 의견제출-3차((주)□□□□건설 → 시)
※ 거부사유: 법적 의무대상 아님
 - 2020. 1. 14. : 진정민원 회신(시 건축주택과; 품질검수 시행 불가)

3 결론

- 이 민원 공사에 대한 품질검수 시행요청은 당사자간 중재가 되지 아니하므로 합의·조정을 위한 더 이상의 중재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공사로 인한 품질검수 시행 요청 중재는 불가하고 사인간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각하처리 하고자 함.

2 폐쇄명령처분 취소 요구

- 민원표시/의결일자 : 2020-고-0088(2020. 8. 6.) / 2020. 9. 14.
- 신청인/피신청인 : ○○○(울주군 ○○읍) / 울주군(환경자원과)
- 결정결과 : 각하(주심위원 : 김승호)

1 민원취지

- 울주군 지역경제과로부터 신청인의 사업계획이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아 울산 울주군 ○○읍 ○○리 118-2 대 1,283㎡(이하 '이 민원 사업부지'라 한다) 소재에서 사업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사업 영위 중, 2020. 5. 25. 피신청인으로부터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되었고 이 민원 사업부지에서는 시설 입지가 제한되어 청문 실시 후 시설 폐쇄(봉인) 조치가 진행된다고 하니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

2 사실관계

- 행정처분 개요
 - 처 분 명 : 폐쇄명령
 - 처 분 일 : 2020. 8. 12.(위반일 : 2020. 5. 25.)
 - 처분사유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 조치사항 : 위법시설(가열시설 2기, 저장시설 2기) 폐쇄조치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4조
- 추진경위
 -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부지에 운영 중인 주식회사 △△△(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20. 2. 10. 회사성립 되었으며, 2020. 2. 12. 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에는 식물성유지제품 제조업, 지방산계열 제조업이 등록되어 있으나, 2020. 5. 27.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를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업태 : 운수업)으로 변경 등록하였음.

- 피신청인은 약취민원 제기에 따라 2020. 5. 25. 이 민원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을 적발하고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한 후, 2020. 7. 17. 신청인에게 폐쇄명령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고, 신청인은 청문일인 2020. 8. 10. 청문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음. 신청인의 의견제출서 검토 후 피신청인은 2020. 8. 12. 신청인에게 행정처분(폐쇄명령)을 한 후 2020. 8. 13. 이 민원 사업장에 방문하여 위법시설에 대해 폐쇄(봉인) 조치를 하였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폐쇄명령처분에 대해 2020. 8. 19.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영업소폐쇄 처분취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2020. 8. 25.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3 판 단

- 우리 위원회는 본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이 행정처분(폐쇄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현재 소송 및 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음. 본 고충민원은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4호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하여 우리 위원회의 관할 대상에서 제외됨.

4 결 론

- 따라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 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본 고충민원을 각 하함.



2.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결과

주요사례

연번	내용	관계기관	조치의견	주심위원
1	옥동~농소1 도로개설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시정권고	임용균
2	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2단계)	울산도시공사	시정권고	임용균
3	미포국가산단(석유화학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	울산광역시 (환경생태과)	권고	김승호
4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사업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권고	김승호
5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권고	오영은
6	3D프린팅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 건립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권고	오영은
7	성암소각장(1, 2호기) 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울산광역시 (자원순환과)	권고	권준우
8	ICT 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기반조성 사업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권고	권준우

1 옥동~농소1 도로 개설(시정권고)

1 사업목적

- 산업로(국도7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
- 내부순환도로망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2 사업개요

- 사업의 내용
 - 위 치: 남구 남부순환도로 ~ 중구 성안동
 - 기 간: 도로개설 L=8.0km, B=20m(4차로)
 - 내 용: 2009년 ~ 2022년
 - 예산액: 283,114백만 원(보상 96,665, 공사 177,024 기타 9,425)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0까지	2021 예산	2022 이후
계	283,114	257,309	21,169	4,636
국 비	91,898	85,268	5,122	1,508
시 비	191,216	172,041	16,047	3,128

※ 총사업비: 인도교 설치비 포함(시비 6,000백만 원)

- 사업추진 경위
 - 2006. 6.: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사업 선정
 - 2007. 12.: 실시설계용역(부산지방국토관리청)
 - 2009. 12.: 타당성 재조사(기획재정부 B/C=1.0, 타당성 인정)
 - 2013. 1.: 공사 착공
 - 2015. 6.: 업무 이관(건설도로과 → 종합건설본부)
 - 2019. 6.: 성안교차로~북부순환도로 부분 개통(L=4.0km)

- 2020. 6. : 국가정원교 하부 인도교(은하수다리) 개통(L=389m, B=3.0m)
- 2020. 12. : 시점부 토공 및 태화지하차도 구조물 공사 중(현공정 86%)
- 2021. 8. : 북부순환도로 ~ 옥동교차로 구간 개통(예정)
- 2022. 5. : 준공 및 전 구간 개통(예정)

3 감시·평가 활동사항

- 추진경과
 - 2020. 2. 20. : 대상사업 선정 알림
 - 2020. 12. 1. : 청렴계약 감시·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
 - 2020. 12. 4. ~ 12. 14. : 감시·평가 활동
- 활동내용
 - 주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태화지하차도 등 공사 추진사항
 - 공사 추진에 따른 민원사항 확인 등

4 감시·평가 결과

- 건설폐기물 보관 및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발주청인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은 2013. 3. 22. 본 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주)동운과 폐콘크리트 19,178톤, 페아스팔트콘크리트 9,452톤, 건설폐재류 18,673톤, 혼합건설폐기물 2,834톤의 처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용역비 1,010,000천 원) 하였고, 이후 현장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변경 계약(용역비 1,935,229천 원, 증 925,229천 원)으로 폐콘크리트 33,399톤(증 14,221톤), 페아스팔트콘크리트 9,452톤(증·감 없음), 건설폐재류 39,962톤(증 21,289톤), 혼합건설폐기물 1,947톤(감 887톤), 소각류 142톤(증 142톤)을 2021. 5. 31.까지 처리할 계획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분리배출된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립·운반·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라 배출자(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다만,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처리 방법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페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함.
- 그러나, 태화지하차도 시점부(남측 진입부) 주변에 쌓아둔 페아스팔트콘크리트(약 20톤)와 페콘크리트(약 10톤)와 같은 순환골재의 경우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이 없이 각종 건설자재와 혼재된 상태로 관리하고 있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작업 중 불필요한 이동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동원이 발생되거나 후속 공정이나 타 공정에 간섭을 초래함에 따른 공기 지연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 시정 조치 하였음.

[건설폐기물 보관 현황]



태화지하차도 진입부 페콘크리트



태화지하차도 진입부 페아스팔트콘크리트

[사업장(태화지하차도 남측 출입부) 내 각종 건설자재 현황]



태화지하차도 남측 출입부 정리정돈 불량(1)



태화지하차도 남측 출입부 정리정돈 불량(2)



태화지하차도 남측 출입부 정리정돈 불량(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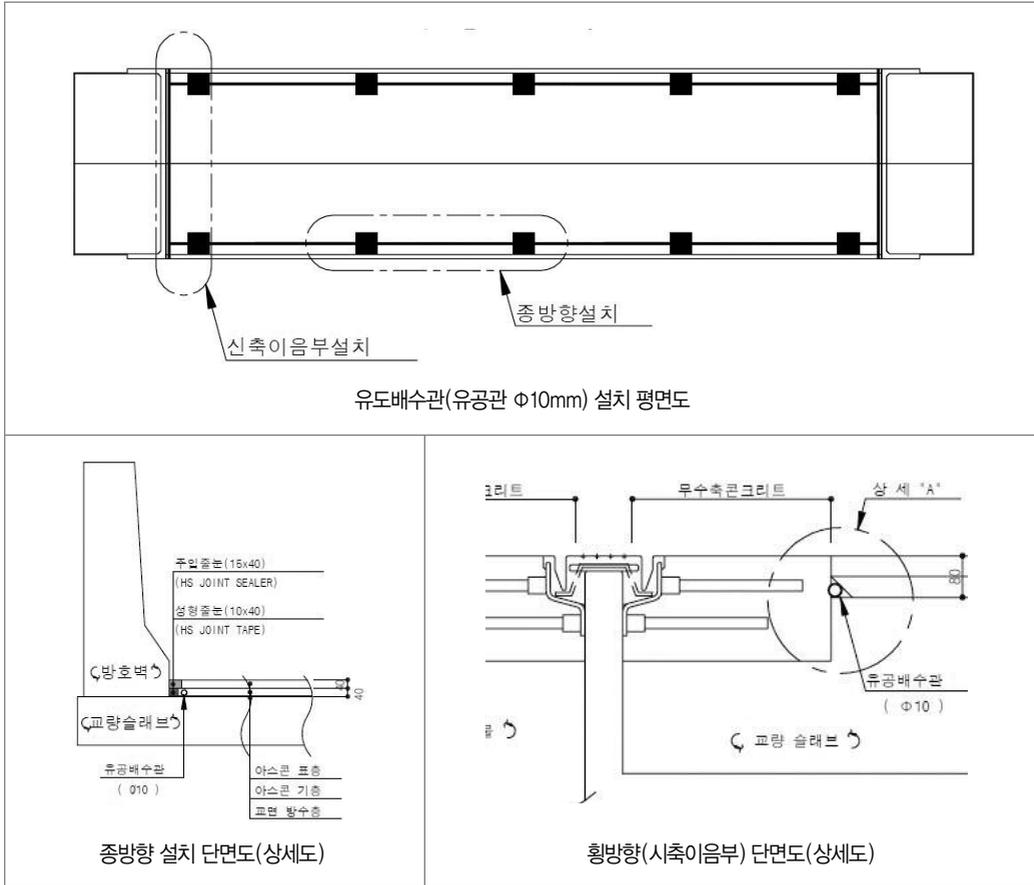


명정천 정비(우안제) 부분 안전펜스 미설치

- 국가정원교* 및 은하수다리(국가정원교 하부 인도교, 연장 389.0m, 폭 3.0m) 시공에 관한 사항
 - 교량의 상판면에서의 배수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수층 상에 우수가 체류하게 되고, 이로 인한 포장이 수침(水枕)상태가 되어 박리가 발생함으로써 손상되는 사례가 있음. 이처럼 교량 상판면에서의 우수배수는 콘크리트 상판 및 포장의 내구성 유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할 것이므로 국가정원교에 반영된 교면포장 하부 체류수 처리를 위한배수시설은 우수받이 77개와 유도배수관(drain pipe, 유공관 $\Phi 10\text{mm}$) 1,101m가 설치됨.

* 상부구조형식[PSC박스거더교(FCM공법, 480m), RPF 빔교(40m)]

[국가정원교 상판 부 교면 포장 하부 체류수 처리시설도]



- 그러나, 교면 포장 시행 후 우수받이 일부가 탈락 또는 파손되었고, 일부 우수받이의 경우 이물질 제거 등을 위한 우수받이 뚜껑의 여닫음이 어렵게 시공된 부분이 있어 이를 현장에서 시정토록 요청하였음.

[국가정원교 상판 부 우수받이 파손 현황]



우수받이(뚜껑) 파손



우수받이(뚜껑) 파손 및 여담음 시공 불량

[국가정원교 상판 부 우수받이 및 유공관 설치 현황]

구 분	수량	규격(치수)	비고
우수받이(TYPE-C)	8개	250×250	6개 파손
우수받이(TYPE-C1)	55개	250×500	
우수받이(TYPE-E)	14개	250×500	
유공관	1,101m	Φ10mm	

- 은하수다리(국가정원교 하부 인도교, 연장 389.0m, 폭 3.0m)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 국가정원교 상판 하부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된 은하수다리는 2018. 1.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공되었고, 2020. 6. 25. 개통되어 중구 측 대나무정원과 남구 측 생태정원을 오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화강국가정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2020. 12. 4. 현장 확인 시 은하수다리의 난간(핸드레일 이탈, 기둥) 저판부 파손과 데크 연결부 보호판을 고정하는 볼트(나사)가 탈락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하자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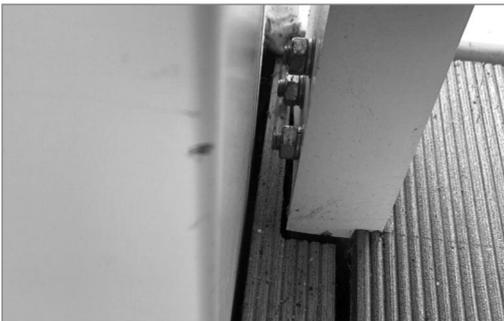
[은하수다리 데크시설 파손 현황]



이음부 보호판 들뜸(고정 나사 탈락)



난간 이음부 · 핸드레일 시공 불량



데크 바닥 처짐



데크 난간 파손

5 조치사항

- 본 사업장 내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 처리방법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태화지하차도 작업장 내 무질서하게 관리되고 있는 각종 건설자재를 정리 정돈할 것을 시정권고 함.
- 국가정원교 상판부 우수받이 및 은하수다리 데크 난간 파손 부분과 시공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 공사를 빠른 시일 내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함.

2 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2단계)(시정권고)

1 사업목적

- KTX 울산 역세권 활성화 및 복합 기능의 신도시 건설

2 사업개요

- 사업의 내용
 - 사업(용역)명 : 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2단계)
 - 위치 : 울주군 삼남면 신화· 교동리 일원
 - 사업면적 : 2단계 100,602㎡(전체 883,415.5㎡)
 - 사업기간 : 2008년 ~ 2023년(1단계 2014년)
 - 사업비 : 66,026백만 원(총사업비 525,715, 1단계 459,689)
- 사업추진 경위
 - 2018. 9. 12. : 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용역 완료
 - 2015. 12. 1. : 2단계 개발사업 사업시행협약 체결(도시공사↔KCC)
 - 2015. 12. 31. : 복합환승센터 사업시행협약 체결(도시공사↔롯데)
 - 2016. 3. 25. : 전지컨벤션센터 토지분양계약 체결(울산시↔도시공사)
 - 2019. 5. 10. : 개발사업(2단계) 환지계획 인가
 - 2019. 12. 20. : KCC 언양공장 건축물 등 철거 완료
 - 2020. 3. 12. :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
 - 2020. 6. 25.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020. 7. 24. : 공사 착공
- 향후 추진계획
 - 2020. 11. ~ : 체비지(2단계) 순차적 매각절차 이행
 - 2021. 6. : 공장부지 토양정화 완료(정화시설 철거 등 2개월 추가 소요)
 - 2022. 9. : 조성공사(2단계) 완료
 - 2022. 10. ~ : 사업 준공(2단계), 환지 처분

3 감시·평가 활동사항

- 추진경과
 - 2020. 2. 20. : 대상사업 선정 알림
 - 2020. 10. 30. : 청렴계약 감시·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
 - 2020. 11. 10. : 감시·평가 현장 확인활동
- 활동내용
 -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잠정 비용(PS)에 관한 사항
 -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
 - 하도급 계약 적정성에 관한 사항
 - 태화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추진에 관한 사항
 -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4 감시·평가 결과

-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 가입 여부 확인 업무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의 보증서를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82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그러나 본 공사의 하도급사인 (주)세경토건이 벌개 체근을 위해 건설기계(굴삭기 등)를 투입한 실지 착공일인 2020. 10. 17. 전까지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고,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보호하여야 하는 발주청인 울산도시공사는 (주)세경토건으로부터 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벌개 제근 현황]



벌개 제근(중)



벌개 제근(후)

[원도급사의 건설기계 대여 대금 보증 가입 현황]

(2020. 11. 6. 현재)

원도급사	도급액 (천원)	공 종	도급율	보증금액 (천원)	가입 여부
(주)경동이앤에스	6,468,451	토공	100%	133,319	가입 (2020. 7. 21.)

[하도급사의 건설기계 대여 대금 보증 가입 현황]

(2020. 11. 6. 현재)

원도급사	도급액 (천원)	공 종	도급율	보증금액 (천원)	가입 여부 (실착공일* 기준)
(주)세경토건	3,456,200	토공사 외	2020. 10. 8.	-	미가입

*실착공일 : 2020. 10. 17.

-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 상의 정보 입력 현행화 필요
 - 「건설기술진흥법」제77조 제3항에 의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함. 이에 따른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4조를 살펴보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³ 이상인 경우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시공과정에

서 발생하는 사토·순성토 현황 등을 숙지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공사 현장 등과 토석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국토 환경훼손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 그러나, 본 사업의 토공사에 대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상의 정보 입력 현황**을 살펴본 바 순성토 364,464㎡(순공사비 기준 낙찰율 96% 적용 시 순성토 운반비 약 3,954백만 원)에 대한 입력 상태가 2020. 7. 24. 착공 이후 2020. 11. 16. 현재까지 「설계단계」로 입력 상태가 갱신되지 않고 있음에도 본 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인 수성엔지니어링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06호, 2020. 3. 31.)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기본 임무로서 토석 물량의 변동 사항 등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관리를 수행하여 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울산도시공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순성토 현황 등을 숙지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공사 현장 등과 토석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국토환경훼손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에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입력 및 갱신 현황 등의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상의 정보 입력 현황(2020. 11. 16.)



5 조치사항

- 울산도시공사는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의 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 권고함.
- 울산도시공사는 인근 건설공사 현장 등과 토석자원을 재활용하여 예산 절감 및 국토 환경훼손 방지를 위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입력 및 갱신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함.

3 미포국가산단(석유화학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공사(권고)

1 사업목적

- 사고·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 및 초기 우수의 하천, 연안 유입 방지를 위한 저류시설 설치로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의 내용
 - 울산 남구 성암동 64-12번지 일원(석유화학단지 내)
 - 사업기간 : 2017. ~ 2021.(공사기간 2019. 1. 8. ~ 2021. 6. 25.)
 - 사업규모 : 완충저류시설 37,000㎡, 전처리 시설, 이송설비 등
 - 총사업비 : 42,927(국비 30,049백만 원(70%), 시비 12,878백만 원(30%))

[위치도 및 조감도]



- 사업추진 경위
 - 2015. 12. ~ 2016. 8. :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 2016. 7. :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6. 12. :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협의완료(환경부)
 - 2018. 9. : 설계승인 및 총사업비 확정 신청
 - 2018. 10. : 일상감사 완료 및 조달청 계약의뢰

- 2018.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9. 1. : 공사 착공
- 향후 추진계획
 - 2020. 12. : 토목공사(저류시설 터파기 등) 완료
 - 2021. 10. : 저류조 구조물 설치완료
 - 2021. 11. : 건축물 및 기계설비 설치완료
 - 2021. 12. : 공사 준공(현 공정 45.07%)
 - ※ 당초 공사 준공예정일은 2021. 6. 25.일이나 한국수자원공사 공업용수 관로 이설 지연 및 레미콘 파업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 필요

3 감시·평가 활동사항

- 추진경과
 - 2020. 2. 20. : 대상사업 선정 알림
 - 2020. 10. 29. : 관련자료 제출
 - 2020. 12. 8. : 감시·평가 활동
- 활동내용
 - 공사장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 하도급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4 감시·평가 결과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항타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건설

사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주청인 울산광역시 환경생태과장은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본 사업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후 2019. 3. 5. 최종적으로 승인 통지를 하였음.

•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

•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도급금액은 42,927백만 원의 대규모 건축공사로 울산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바,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이 떨어지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60%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나 본 공사장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비율이 15.53%로 현저하게 낮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협력업체 선정 시 지역건설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공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임.

5 조치사항

• 사업부서(환경생태과)는 시공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업체의 울산지역 건설업체 선정과 울산지역 장비 및 인력을 본 사업장에 투입되도록 협조 요청하고 다음 사항을 권고함.

- 작업현장에 무재해 현황판을 설치하고 무재해 현황을 작업자들에게 수시로 인식하게 하여 무재해 사업장이 되도록 하시기 바람.

- 작업현장에 근로자 휴게공간을 확보하여 근로자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흡연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 위험성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한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KRAS에 등록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작업자가 위험성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위험을 알리고 개선하도록 하시기 바람.
- 위험기계기구 사용 시 특별 안전장구 보관함을 만들어 작업 시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절단기, 대형그라인더, 둥근톱, 용접기(정격전압 방지장치) 등)
- 경미한 재해 2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해원인 및 재해현황 사진을 게시하여 작업자가 수시로 숙지토록 독려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람.
- 작업장 내 자재 및 운휴장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공사현황 표지판을 설치하며 반드시 표지판에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 토사운반 차량의 관리를 강화하고 주변도로에 작업 차량으로 인한 추가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람. 토사 반출량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4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사업(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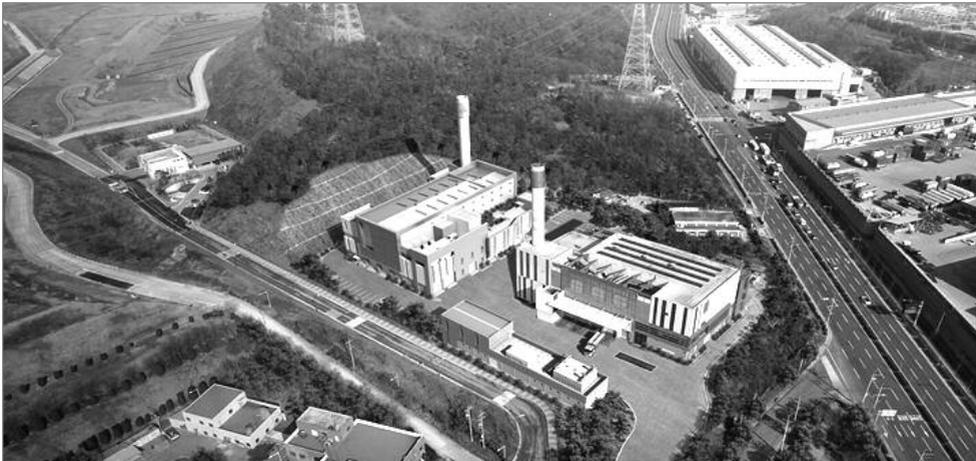
1 사업목적

-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체계 확보 및 처리비용 절감.

2 사업개요

- 사업의 내용
 - 위 치: 울산 남구 처용로 524
 - 사업기간: 2019. 01. ~ 2022. 01.
 - 사업규모: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 200톤/일
 - 총사업비: 49,677(국비 29,438백만 원, 시비 20,239백만 원)

[조감도]



- 사업추진 경위
 - 2015. 12. 5.: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시설 증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 2016. 4. 25.: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착수(2018. 10. 4. 준공)
 - 2016. 10. 14.: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2018. 12. 27. 준공)

- 2017. 4. 6. :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
- 2017. 9. 21. : 설계경제성 검토(VE) 완료
- 2017. 12. 28. : 지방건설기술심의 완료(건설도로과 → 하수관리과)
- 2018. 2. 23. : 재원협의 완료(낙동강유역환경청)
- 2018. 10. 10.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 2018. 10. 18. : 특허공법 기술사용 협약체결
- 2018. 10. 18.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 2018. 10. 23. : 조달청 계약 요청(공사)
- 2019. 1. 4. : 시설공사 착공(2020. 12. 기준 현공정율 67%)
- 2019. 3. 14.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 2020. 1. 8. : 편입토지 보상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21. 10. : 종합시운전 착수
 - 2022. 1. : 종합시운전 완료 및 공사 준공(예정)

3 감시·평가 활동사항

- 추진경과
 - 2020. 2. 20. : 대상사업 선정 알림
 - 2020. 10. 29. : 관련자료 제출
 - 2020. 12. 18. : 감시·평가 활동
- 활동내용
 - 공사장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 하도급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4 감시·평가 결과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5미터 이상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주청인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장은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본 사업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후 2019. 4. 9. 승인 통지를 하였음.
-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도급금액은 42,095백만 원의 대규모 건축·토목공사로 울산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바,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이 떨어지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60%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본 공사장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비율이 69.5%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공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음.
- 2019년 청렴계약 감시평가 점검결과 이행실태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장은 2019년 청렴계약 감시평가 점검결과 약취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반입장의 밀폐방안 및 약취제거설비 사양 검토, 기계장비의 사양 확인 및 시운전 등 검수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행실태 확인 결과 슬러지반입장 밀폐를 위해 추가적으로 스피드셔터 2개, 저정조포집구 2개, 후드 10개, 댐포 14개, 덕트 50미터 설치 등 기자재 배치를 고려하여 변경 시행중에 있고 약취저감을 위한 적절한 형식과 용량으로 반영하였고 기자재별로 사양확인, 공장검사, 반입검수, 설치검사 및 종합시운전을 거쳐 최종 성능 확인할 예정임에 따라 2019년 청렴계약 감시평가 권고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하였음.

5 조치사항

- 사업부서는 향후 설치하는 기계장비에 대한 반입, 설치검사, 종합시운전(무부하, 부하, 단동, 연동 운전 등) 과정 검수와 작업장 내 자재 및 운휴장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다음 사항을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함.
 - 현장에 투입되고 작업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크레인 등)에 대해 작업반경에 대한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시기 바람.
 - 현장 이동사다리에 대한 안전장치(삼각발판 의무설치)를 부착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는 사다리를 전부 철거하고 안전기준에 맞는 사다리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실 것.
 - 현장에 작업자 이동통로의 작업발판이 미고정 상태로 작업자가 이동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됨, 전부 고정용 발판으로 교체하여 설치하시기 바람.
 - 철골 거푸집 작업현장의 안전발판에 개구부가 열려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곳이 있으므로 반드시 덮고 작업자를 투입하도록 하실 것.
 - 작업현장의 안전난간대의 간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60cm 이내로 하여야 하나, 난간대의 간격이 기준에 맞지 않는 곳과 누락된 곳이 있어 반드시 보강하여 작업자를 투입하시기 바람.
 - 공사현장 전반에 걸친 운휴자재, 잉여자재 등이 혼재하고 현장의 정리정돈 상태가 현저히 불량하니 대대적인 정리정돈을 하시고 작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람.
 - 2019년 감시평가에 대한 유효성은 충족하나, 개선되는 악취제거 시설에 투입되는 자재의 내부 식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자재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투입되는 레미콘의 인장, 압축강도를 기준에 맞추어 철저히 검수하시기 바람.(품질검사 성적서를 문서로 보관요망)
 - 공사현장에 작업현황판을 작업현장에 게시하고 위험성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평가결과서를 현황판과 함께 게시하시기 바람.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증빙을 첨부하시고 집행 시 적절성을 검토 후 안전관리비 사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토목·건축·기계설치 공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공정관계상 작업스케줄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상호간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시기 바람.

5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권고)

1 사업목적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주변에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오염원의 도심생활권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폭염 발생 예방 및 기후위기에 선제적 대응

※ 2019년 범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의 내용
 - 위 치: 북구 연암동 957-3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0. 2. ~ 2021. 3.
 - 내 용: 차단숲 조성 5ha(1단계 3.2ha, 2단계 1.8ha)

	1단계(주요내용)	2단계
토공	흙깎기 외 3종 4,702㎡, 노상준비공 1,201㎡	-
배수공	저류지 조경석 572.6t, 배수관부설 311.5m	
포장공	콘크리트 포장 외 3종 2,454㎡, 경계석 57m	
식재공	교목 7,019주, 관목 62,900주, 지피류 28,360본, 초화파종 122,331㎡	교목 1,700주, 관목 41,100주, 지피류 6,560본, 초화파종 7,857㎡
식재부대공	숲가꾸기 1,280㎡, 식재면고르기 17,628㎡	식재면고르기 9,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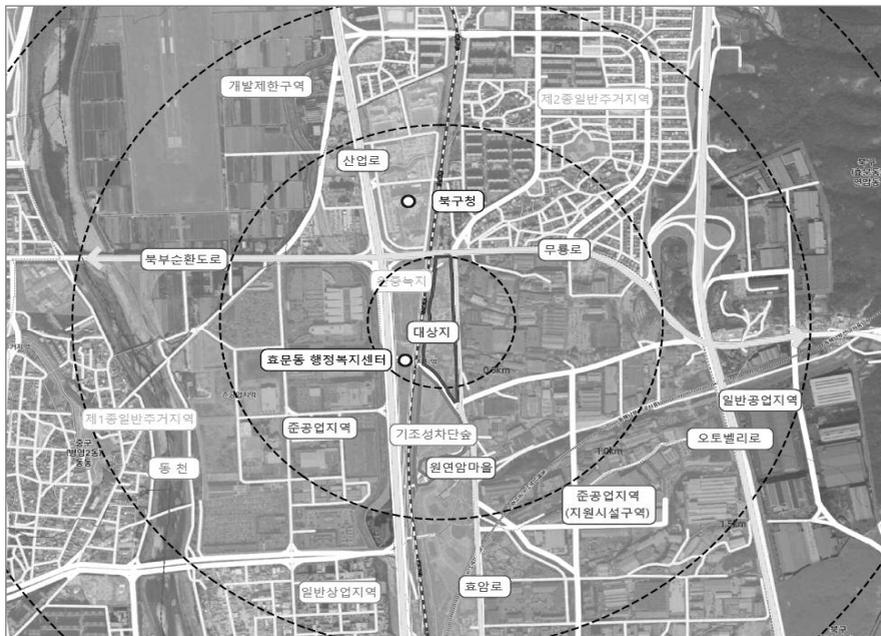
- 사업비 : 5,000백만 원(설계 70백만 원, 공사 4,930백만 원)

* 국비 2,500백만 원 / 시비 2,500백만 원

- 사업추진 경위
 - 2019. 12. : 당초예산 편성(국비 25억 원, 시비 5억 원)
 - 2020. 2. 4. : 사업계획 수립
 - 2020. 3. 13. : 실시 설계 용역(6. 10. 완료)
 - 2020. 5. 12. : 지방비 확보(2회 추경, 5억)

- 2020. 9. 8. : 지방비 확보(3회 추경, 6억)
 - 2020. 9. 18. : 국고보조사업 내용 변경 승인(단계적 분할 발주)
 - 1단계 : 3.2ha, 3,200백만 원 / 2단계 : 1.8ha, 1,800백만 원
 - 2020. 9. 18. : 단계적 사업시행 추진계획 보고
 - 2020. 9. ~ 10.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020. 10. 12. : 계약심사 결과 반영 및 계약 의뢰
 - 2020. 11. 17. : 1단계 공사 발주 및 계약
 - 2020. 11. 20. : 공사 착공
- 향후 추진계획 : 2021. 2. 17. 공사 준공

[위치도]



3 감시·평가 활동사항

- 추진일정
 - 2020. 2. 20. : 대상사업 선정 알림
 - 2020. 12. 11. : 관련자료 제출
 - 2020. 12. 18. : 감시·평가 활동

- 활동내용
 - 공사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 공사현장 환경점검 사항
 - 기타 계약 조건 이행에 관한 사항

4 감시·평가 결과

- 2단계 사업 추진 예산 미확보
 - 본 사업은 2019년 범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총예산 5,000백만 원(국비 50%, 시비 50%) 규모로 계획 수립하여 2020. 1. 31. 국비 2,500백만 원을 확보하고 2020. 6.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 긴급예산 편성에 따라 시비 2,500억 원 중 1,600백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당초 사업을 2단계로 나누어 전체 5ha 중 3.2ha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만을 실시하고 국비 9억은 반납할 예정임. 2020년도 편성예산으로 기초 토공, 배수공, 포장공은 시공 할 수 있으나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식재공 및 식재부대공 등 이후 사업진행의 추진은 어려움이 예상됨.
- 주민 참여형 공간으로 조성 및 관리 방안 모색
 - 본 사업의 시설물 계획도 및 식재 계획도를 살펴보면 연못, 산책로, 벤치 등 주민 친화적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미세먼지 저감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경관 조성에도 효과적인 가시나무, 메타세쿼이아, 이팝나무, 아왜나무, 동백나무 등 40종의 다양한 수종이 식재될 예정으로 본 사업이 완공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앞서 기술한 부분사업 추진으로 인한 2단계 사업이 완공이 조기에 어려운 사정을 보완하고 본 사업 부지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여 본 사업 1단계 완공 이후 식재 및 관리 등 주민 참여형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5 조치사항

- 2단계 사업부지 조성 후 잔여 부지에 주민참여형 사업추진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부분사업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내 도로확장 및 개설, 공사 등에 따른 이식 수목이 발생할 경우 식생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 사업부지에 이식할 것을 권고함.

6 3D프린팅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 건립(권고)

1 사업목적

- 제조공정의 혁신을 가져올 3D프린팅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테크노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설립으로 소규모 창업에 적합한 3D프린팅 관련 벤처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청·장년 일자리 창출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의 내용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79-10(두왕동)
 - 사업기간 : 2017. 12. ~ 2020. 12.
 - 내 용
 - 주요시설 : 공장, 회의실(5), 교육실(2), 3D프린팅 장비실 등
 - 용도별 면적 : 14,480㎡(공장 14,172㎡, 근린생활시설 309㎡)
 -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최고높이 19.93m)
 - 예산액 : 28,317백만 원(국비 55%, 시비 45%)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28,317	1,900	9,580	5,920	10,000
국 비	13,550	1,000	2,880	4,420	5,250
시 비	12,767	900	4,700	1,500	5,667
특별교부세	2,000	2,000			

• 위치도 / 내·외부 사진 등



위치도



센터 외부 전경

• 사업추진 경위

- '18. 3. 9.: 설계용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신청
- '18. 3. 16.: 설계공모완료(선정기업 : (주)서인종합건축&MPT종합건축)
- '18. 4. 10.: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신청
- '18. 4. 26.: 설계용역 계약
- '18. 5. 30.: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선정기업 : (주)대흥종합건축)
- '18. 7. 25.: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 '18. 10. 24.: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 '18. 10. 31.: 공사 용역(건축·전기·통신·소방)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신청
- '18. 11. 8.: 녹색건축 예비인증
- '18. 12. 1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 '19. 3. 19~ 4. 16.: 전문공사 계약(건축·전기·통신·소방)
- '19. 4. 21.: 공사 계약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 재개
- '19. 4. 22.: 건립공사 착수
- '20. 10. 14.: 건물사용승인
- '20. 11. 13.: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20. 11. 20.: 녹색건축 인증

- 향후 추진계획
 - '21. 1. 15. : 사업정산 및 수행상황보고서 제출

3 감시·평가 활동사항

- 추진일정
 - 2020. 2. 20. : 대상사업 선정 알림
 - 2020. 12. 4. : 관련자료 제출
 - 2020. 12. 9. : 감시·평가 활동
- 활동내용
 - 공사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 임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기타 계약 조건 이행내용

4 감시·평가 결과

- 분양 임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필요 등
 - 3D프린팅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센터'라 한다)는 2020. 10. 14. 건물사용승인을 받고, 2020. 12. 9. 기준 총 56실(9,062㎡) 중 38실(6,910㎡)로 임대면적 기준 76%가 입주신청 완료되었음. 입주 신청 대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입주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지역내외 중소기업 중 1년 이상 3D프린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므로 관내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관외 3D프린팅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입주 기업을 유치하여 이 센터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업협의체 구성 지원 및 주기적 소통 실시 요청
 - 이 센터는 준공 이후 2020. 12. 9.까지 현재 쓰리디팩토리 등 20개사가 입주하여 있으며, 임대료 인하 및 임대면적 조정(다양화)을 요구하는 등의 민원이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제기되고 있음.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입주기업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입주기업 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입주 기업들의 권익보호와 애로사항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신산업 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조치사항

- 현재 이 센터 임대면적 기준 76%가 입주하였는바, 향후 입주 완료 및 이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및 이 센터 이용대상의 만족도 제고하여 당초 이 센터 건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센터 홍보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7 성암소각장(1, 2호기) 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권고)

1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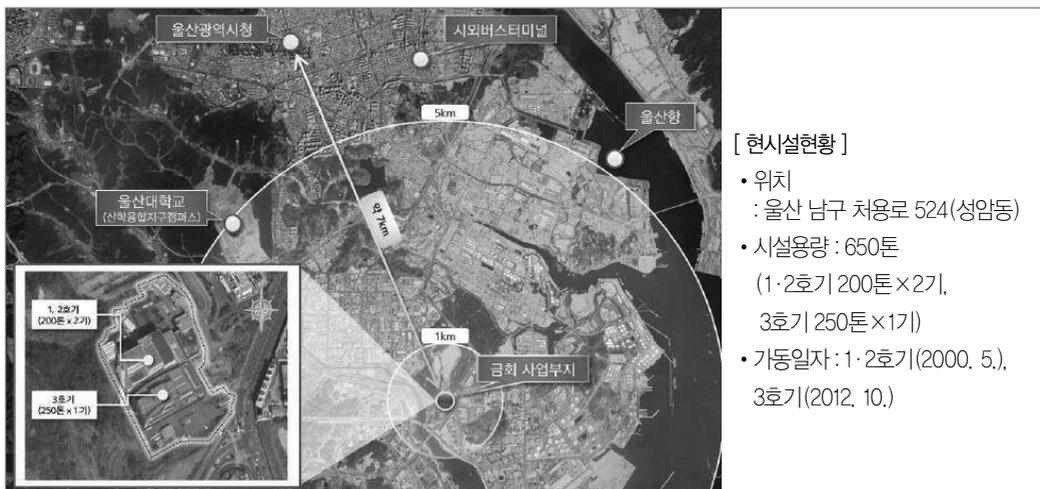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소각처리시설 확보
- 사용가능 연한(15년)이 지난 성암소각장 1·2호기에 대해 우리시 도시환경에 적합한 최적 소각 시설 재건립 방안 도출

※ 2016년도 한국환경공단단의 기술진단 결과 잔여수명 5년(2022년), 신규 건립 타당 의견

2 사업목적

- 사업의 내용
 - 위 치: 울산 남구 처용로 524(성암동)
 - 용역기간: 2019. 5. 24. ~ 2020. 2. 28.
 - 사업내용
 - 일반현황, 폐기물성상조사, 건설부지 조사, 소각시설·용량 선정
 - 토목·조경·건축·재정·운영관리계획, 구조안전진단 등
- ※ 소각로 1·2호기 재건립: 200톤/일×2기 ⇒ 250톤/일×2기(증 100톤)
- 용역비: 259,400,000원

[사업부지 위치도]



[현시설현황]

- 위치 : 울산 남구 처용로 524(성암동)
- 시설용량 : 650톤 (1·2호기 200톤×2기, 3호기 250톤×1기)
- 가동일자 : 1·2호기(2000. 5.), 3호기(2012. 10.)

- 사업추진 경위
 - 2016. 11. ~ 2017. 6. : 소각장 기술진단 실시(한국환경공단)
 - 2018. 8. 24. : 소각장 재건립 계획 수립(시장님 방침결정)
 - 2018. 10. 22. :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가결)
 - 2019. 1. 25. : 용역설계 완료
 - 2019. 1. 31.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
 - 2019. 4. 22.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심의 완료(감사관)
 - 2019. 5. 24. : 용역 계약
 - 2020. 2. 28. : 용역 준공
 - 2020. 8. 28.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정부예산안 제출
 - 2020. 9. 28. : 공유재산심의(가결)
- 향후 추진계획
 - 2021. 6.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 2021. 7. : 중앙투자심사 신청
 - 2021. 7. ~ 2022. 3. : 기본설계, 실시설계 수행
 - 2022. 4. ~ 6. : 설치계획 승인 등 인· 허가 수행
 - 2022. 7. ~ 2025. 10. : 시설공사 및 시운전(2025. 10. 준공)

3 감시·평가 활동사항

- 추진경과
 - 2020. 2. 20. : 대상사업 선정 알림
 - 2020. 10. 23. : 관련자료 제출
 - 2020. 12. 14. : 감시·평가 활동(사업부서 의견 청취)

4 감시·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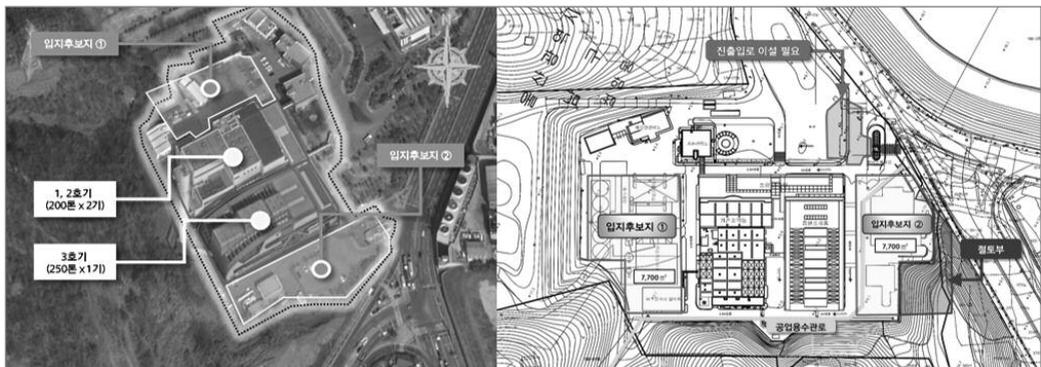
• 사업의 타당성

- 본 사업(용역)은 2000년도에 설치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인 성암소각장 1·2호기 소각시설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서 2016. 11. 15. ~ 2017. 6. 14. 실시한 기술진단 결과, 사용 가능 연한(15년) 초과 운영으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으므로 소각장 신규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진되었음.
- 2017. 6.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결과, 설비가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오염물질 제거 효율이 우수하여 향후 5년간 소각장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용 가능 연한이 지남에 따라 급격한 성능 저하가 우려되므로 기존 소각시설 1·2호기를 가동해야 하는 기간 동안 철저한 시설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설입지의 타당성

- 본 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존 소각동을 철거하고 재건립하는 사업으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현재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에서 폐기물소각시설 철거 및 재건립에 대한 제약이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내 여유 부지를 활용하여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여유 부지를 활용한 배치계획은 아래와 같음.

[배치 계획]



구 분	입지후보지 ①	입지후보지 ②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치공간 여유, 300톤×2계열까지도 배치 가능 2안 대비 기존 진출입로의 변경, 수도공급시설 이전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소각동이 폐쇄되면 향후 부지활용도가 높음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지 내 지장물(침출수 차수벽, 해수관로 등) 이설 가능성 있음 기존 소각동이 폐쇄되면 2안 대비 향후 부지 활용도가 다소 낮음 기존시설(주차장) 이설 필요 주차장 이설비용 약 7억 원 소요 지장물 저축 시 이설비용 약 13억 원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0톤×2계열 기준 배치공간 협소 수도공급시설이 부지를 가로지르고 있어 이설 필요(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진출입로 위치 변경 필요 수도공급시설 및 진출입로 이설비용 약 40억 원 소요
선 정	◎	

- 위 배치계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지후보지 2안은 부지공간이 협소하여 절토부가 발생하고 공업용수 관로 이설 등 추가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을 볼 때, 입지후보지 1안을 선정한 용역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조치사항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이 2025. 10. 준공으로 계획되어 있어 신규 소각시설 가동 전까지는 기존 소각시설 1·2호기를 계속하여 가동하여야 하므로, 사업부서는 기존 소각시설 1·2호기가 성능 저하 등의 사유로 대기오염물질 제거 효율이 저감되지 않도록 유지·보수 및 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8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기반조성사업(권고)

1 사업목적(ICT융합 장비 구축)

- 조선해양 실선 시뮬레이터, 조선해양 Digital Twin, SW품질검증, IoT 등 조선해양 ICT융합 기술 품질·성능 검증 장비를 구축하여 미래 선도 신산업 창출 및 경쟁력 향상 지원 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의 내용

- 사업기간: 2020. 1. 1. ~ 2020. 12. 31.
- 사업내용: 3D스캐너, 센서융합현실 연구실 등 총 9종 장비 구축
- 사업비: 820백만 원(국비 75%, 시비 25%)

※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의 개념

- ICT융합 Industry 4.0^s란
 - 제조업과 ICT융합을 접목한 독일의 'Industry 4.0' 정책에 ICT·SW 신기술(IoT, 빅데이터, Cloud, SW)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 분야에 맞도록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한국형 Industry 4.0^s의 개념을 도출함
 - ICT·Software 융합으로 스마트 Ship/Shipyare/Service 구현
- 이를 통해 **新사업, 新시장, 新서비스, 新일자리** 창출
- 향후 **울산의 전략산업(자동차, 화학, 환경) 국가 제조 산업 전체 적용·확산**

- 장비(물품) 구축 현황

No.	장비명	예산 (천원)	용도	구매방법	시감사	구축현황
1	센서융합현실 현실 연구실	399,630	조선해양 VR 콘텐츠(일반, 상황, 공간체험 등) 8종	용역/ 협상에의한계약 /조달청	일상감사 (‘20.8.28.)	구축 중 (12월 말 구축예정)
2	초정밀 레이저 3D스캐너	209,000	중대형 제품 초정밀 레이저 트러커 (타겟, 무타겟 지원)	물품구매 /조달계약 /조달청	일상감사 (‘20.8.12.)	구축완료 (‘20.10.29.)
3	초고속 광대역 3D스캐너	76,498	초고속(2분 내외) 광대역 3D 레이저 스캐너(공간 구성 용)	물품구매 /조달계약 /조달청	일상감사 (‘20.8.12.)	구축완료 (‘20.10.29.)

※ 비중측정기 등 6종은 구축완료(예산 100,478,560원, 각 장비별 5천만 원 미만의 물품구매에 해당)

• 사업추진 경위

- 2020. 1. : 2020년(5차년도) ICT융합 Industry4.0[®](조선해양) 기반조성사업 협약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문기관), 울산광역시(주관지자체), 울산정보산업진흥원(주관기관)
- 2020. 3. 25. : 2020년(5차년도) 운영계획 보고
- 2020. 6. 1. : 장비심의위원회 개최
- 2020. 8. 12. : 일상감사 완료(3D스캐너)
- 2020. 8. 28. : 일상감사 완료(센서융합혼합현실 연구실)
- 2020. 8. 28. : 긴급공고 요청(초정밀 레이저 3D스캐너)
- 2020. 9. 17. : 구매입찰 긴급공고(부산지방조달청, 초정밀 레이저 3D스캐너)
- 2020. 9. 19. : 구매입찰 공고(부산지방조달청, 센서융합혼합현실 연구실)
- 2020. 9. 25. : 구매입찰 공고(부산지방조달청, 초고속광대역 3D스캐너)
- 2020. 10. 29. : 물품검수(3D스캐너)

3 감시·평가 활동사항

• 추진경과

- 2020. 2. 20. : 대상사업 선정 알림
- 2020. 12. 14. : 관련자료 제출
- 2020. 12. 15. : 감시·평가 활동(현장점검)

4 감시·평가 결과

• 계약의 적정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규격입찰 중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규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규격입찰이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 118호) 제11조 제9항은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은 최종연도 협약기간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부서는 2020. 8. 28. 초정밀 레이저 3D스캐너 구매사업에 대해 긴급공고를 요청하였고, 부산지방조달청은 2020. 9. 17. 이 물품에 대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2020. 10. 6.로 명시하여 구매입찰 긴급공고를 하였음.
- 사업부서는 본 사업 협약기간 2개월 전(2020. 10. 31.)까지 물품 검수를 완료하기 위해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공고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시행하였다면 참여업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긴급공고를 하지 않고도 납품기한 내 검수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5 조치사항

- 긴급공고를 할 경우 입찰 공고기간이 단축되어 참여업체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부서는 향후 각종 용역·물품구매 등을 시행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사전에 사업 시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가능하면 긴급공고를 지양하여 통상적인 공고로 진행할 것을 권고함.



3. 기획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주요사례

연번	내 용	관계기관	조치의견	주심위원 (조사관)
1	도로 영조물로 인한 피해배상 제도개선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구·군 (도로관리부서)	권고	김소영 (김현수)
2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울산도시공사	권고	김소영 (김현수)
3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제도개선	울산광역시 (자원순환과)	권고	김승호 (김상혁)



1 도로 영조물로 인한 피해배상 제도개선

- **의안번호/의결일자** : 제2020-442호 / 2020. 2. 17.
- **관계기관** :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 구·군 도로관리부서)
- **결정결과** : 권고

1 추진배경

- (배상제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배상을 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시민·방문객 우선의 신속한 구제 제도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 지구별 배상심의회(지방검찰청 소관)의 분기별 개최로 신속한 처리 곤란
- (시민불편) 특히, 피해 구제를 위한 심의기관(배상심의회-울산지방검찰청 소관)과 피해 배상기관(도로 관리청)이 달라 시민·방문객의 혼란과 불편이 초래됨
- (우리시 현황)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국가배상청구 및 민사소송에 따른 피해 배상액(2018년 기준 252백만 원)이 늘어나고 있음
 - ※ 민원 현황: 2018년 기준, 신청 67건 중 32건 배상 결정
- 따라서, 도로 관련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배상사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효율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영조물(도로) 피해배상제도 운영 현황

- 도로관리청
 - 시장(종합건설본부): 폭 20m 이상 도로연장 685km 정도
 - 구청장·군수(도로부서): 폭 20m 미만 도로연장 1,806km 정도
- 배상제도 운영 현황
 - 근거: 「국가배상법」 제12조(배상신청)
 - 방법: 울산지구배상심의회(울산지방검찰청)로 배상 신청

세부절차

국가배상 신청(시민→지방검찰청) ▶ 심의·결정(배상심의회/분기 1회 개최) ▶ 배상금 지급 신청(시민→도로관리청) ▶ 배상금 지급(도로관리청→시민)

- ※ 처리기간: 법정 심의·결정 처리기간은 4주(법 제13조)이나 조사 등 절차를 거쳐 배상심의회(지구심의회)가 분기 1회로 개최되는 등 많은 기간(12주 내외)이 소요됨
- ※ 민사소송: 국가배상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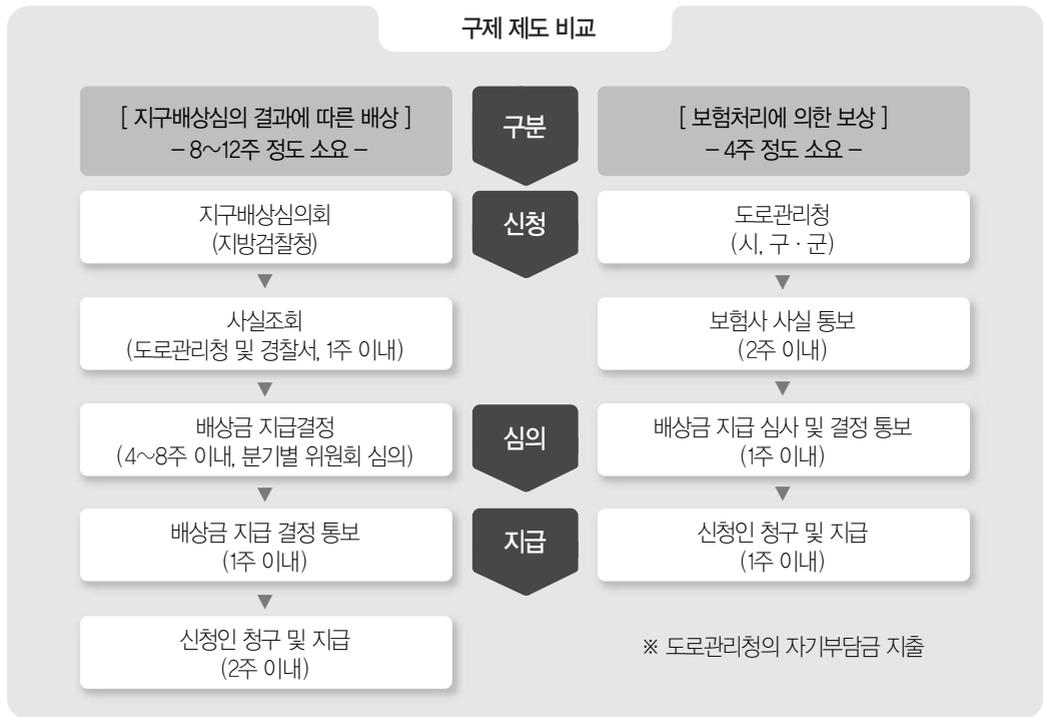
• 우리시 배상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 원/ 종합건설본부)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확보예산	100	100	100
지출예산	10	59	252

3 문제점

- (국가배상제도) 피해 구제 기관과 절차가 이원화 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국가배상 신청 및 심의기관: 울산지구배상심의회(울산지방검찰청)
 - 배상결정에 따른 배상기관: 도로관리청(시, 구·군)
 - ※ 운영실태: 피해 배상심의회(지방검찰청)가 분기별로 개최되어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배상심의회의 심의·결정 이후에도 도로관리청(시 또는 구·군)으로 또 다시 피해 시민이 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 남구: 책임보험 가입으로 피해구제를 도로관리청(남구)으로 일원화함 ('12. 9. 최초가입/ '19. 12. 현재 가입액 25백만 원/ 배상액 44백만 원 지급)
-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우리시) 남구는 도로 영조물 피해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체도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 및 남구를 제외한 구·군은 국가배상제도를 권장하고 있음



- (타 특·광역시 사례) 우리시를 제외한 타 특·광역시 모두 도로 영조물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피해 배상을 위해 배상공제(책임보험)를 가입하여 국가배상제도에 우선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있음

타 특·광역시 사례

구 분	도로연장 (km)	배상방법	배상건수	자기부담금	배상금액 (백만 원)	보험료 (백만 원)
서울시	1,183	배상 공제 (책임보험)	280	30만원/건	273	1,074
부산시* (구·군 포함)	100		72	10만원/건	43	35
인천시 (구·군 포함)	1,257		602	10만원/건	579	457
대구시 (구·군 포함)	815		411	10만원/건	292	194
광주시 (구·군 포함)	732		205	50만원/건	106	320
대전시 (구·군포함)	580		164	10만원/건	147	349
우리시	685	국 가 배상법	9 (신청 34)		3	-

[출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9년 9월 기준 / * 부산시 : 시설관리공단 위탁 도로임

- (예산의 효율성) 영조물(도로) 배상공제 가입(공제회)에 따른 예산낭비 등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우리시에 대한 배상금 결정액*과 보험가입(예상)액(1억 원 정도)을 비교하면, 시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효과뿐만 아니라 금액면에서도 예산낭비 우려는 없음
 ※ 우리시 최근 3년간('16.~'18.) 평균 배상결정액 : 1억 7백만 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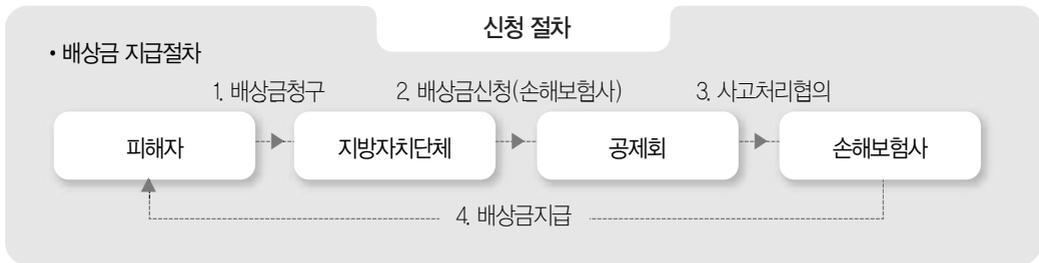
4 조사결과

- 영조물(도로) 배상공제 가입 검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영조물(도로) 배상공제에 가입(공제회*)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처리토록 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설립근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주무기관 : 행정안전부)
- 설립목적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1964. 9. 12. 설립)
- 회원자격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등
- 공제사업 :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영조물(營造物)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회원의 공공청사의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용자사업, 회원의 기금 위탁관리 사업,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영조물(도로) 배상공제 가입 현황(2019. 11. 25. 현재)
 - 광역단체 : 서울, 부산(시설공단),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울산 미가입
 - 기초단체 : 울산 남구 등 전국 134개(59%) 기초단체 가입
- 배상금 신청 절차



- 보험금 산출기준(울산시)

보 상 한 도	산 출 기 준	비 고
사고당 1,000만원 연간 2,000만원 경우	Km당 141,600원 정도	적용시 1억 원 정도
사고당 2,000만원 연간 5,000만원 경우	Km당 199,700원 정도	적용시 1.3억 원 정도
사고당 3,000만원 연간 5,000만원 경우	Km당 218,800원 정도	
사고당 5,000만원 연간 1억 원 경우	Km당 283,200원 정도	

[출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19년도 기준) ※ 구·군: 별도기준 적용

- 검토결과

-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시 절차간소화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업무 간소화로 행정효율 증대
- 우리시의 경우 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 가입 시 예상 보험금(96~136백만 원)이 최근 3년 평균 배상액(107백만 원)과 비슷하거나 상회할 수 있지만 예산 투입으로 시민과 방문객이 누리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5 제도개선 권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도로) 배상공제에 가입 권고
- 권고대상기관 :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중구청장(건설과장), 동구청장(건설과장), 북구청장(건설과장), 울주군수(도로과장)

조치결과

- 종합건설본부 2021년 당초예산 반영
- 중구 건설과 - 24310(20. 9. 3.)호, 2021년 당초예산 반영
- 동구 건설과 - 18395(20. 6. 11.)호, 2019. 12. 23. 가입(2020. 1.부터 시행)
- 북구 건설과 - 26636(20. 6. 26.)호, 2020. 5. 29. 가입(2020. 6월 1.부터 시행)

2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 의안번호/의결일자 : 제2020-532호 / 2020. 7. 20.
- 관계기관 : 울산광역시(건축주택과), 울산도시공사
- 결정결과 : 권고

1 추진배경

-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직접 추진,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간소한 절차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 토지 확보, 법 위반자 처벌 등 규제가 약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조합업무대행사와 조합원간 잦은 분쟁으로 서민의 내집마련이 무산되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
- 정부는 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주택법 개정안」이 2020. 7. 24. 시행됨.
- 이에 조합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조합원 참여 및 행정청의 관리·감독 강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시민 피해 예방과 주거안정 지원 필요

2 지역주택조합제도 현황

- 지역주택조합제도 개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 세대주들이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합을 결성,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제도임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과 조합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므로 사업시행비용(토지 금융비, 시행사 수익, 기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 마련 가능하나
 - 토지확보, 사업계획 미확정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및 조합 설립으로 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지연 또는 좌초될 위험 존재함

[지역주택조합 장단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등장 불필요 •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함 • 일반분양분 보다 양호한 동호수 배정 • 사업추진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조합 가입요건 구비(지역, 거주기간) • 토지매입비 상승, 사업지연에 따른 이차발생 등 추가 부담금 발생 가능 • 이해관계자(조합, 조합원, 시공사, 대행사 등)간 갈등 및 조합내부 비리 위험

• 지역주택조합 추진과정

① 조합원 모집

- 자 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85㎡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 인 원 : 주택건설예정세대수 1/2이상 조합원 구성(최소 20명)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

- 제출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토지확보서류(동의 80% 이상) 등

③ 등록사업자(시공사)* 협약체결

- 협약내용 : 대지 및 주택의 사용·처분, 사업비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 상 각종 책임 등
- *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공사 시공 및 업무대행 역할

④ 사업계획승인 신청

- 제출서류 : 주택건설사업 설계도서, 등록사업자 관련서류, 토지확보서류(소유권 95% 이상) 등

⑤ 착공신고, 사용검사 및 입주, 청산 및 주택조합 해산

지역주택조합 추진과정

사업대상지 물색·선정 → 주택조합추진위원회 구성 → 주택조합규약 작성 → 조합원모집 신고 → 조합원 공개모집 → 주택조합 창립총회 → 주택조합 설립인가 →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 사업계획승인 →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 착공신고 → 분양신고(일반분양) → 사용검사 및 입주 → 청산 → 주택조합 해산

-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조
 - 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
 - 주택조합과 조합원은 주요사안을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
 - 주택조합은 계약을 통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를 위탁하고, 업무대행사는 토지매입, 조합원 모집·관리, 사업계획 수립, 준공까지의 인허가 절차 등 사업추진 전반을 지원
 - 등록사업자(시공사)는 업무협약·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 따라 공사를 시행·준공
 - 신탁사는 조합과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분담금, 일반 분양분 분양대금 등을 관리
 - 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이후 금융기관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3 문제점 및 검토의견

- 토지소유권 미확보
 -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이 좌우됨.
 - 조합·대행사의 토지확보율 거짓·과대 광고로 조합원 피해 가중
 - 사업지연 및 토지매입비 상승에 따른 조합원 추가부담금 발생
 - 과다한 추가부담금으로 사업성 결여, 사업추진 동력 상실
- 투명한 토지확보율 공개로 거짓·과대 광고 원천 차단
- 조합 운영정보 미공개
 - 지역주택조합 운영 관련자료 정보 미공개
 - 조합원 자격기준, 사업개요, 분담금, 토지확보현황, 조합탈퇴 및 환급금 지급 등
 - 거짓·과장된 내용으로 홍보 및 조합원 모집
 -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 승낙서) 확보를 토지소유권 확보로 홍보
 - 시공사 확정 전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한 조합원 모집 행위
 - 조합원 모집 시 동·호수 사전 지정 행위

- 조합원 탈퇴 및 분담금 환급 요청에 대한 조합의 소극적 대처
 - 탈퇴에 따른 환급금 산정방식 및 공제금액 차이로 조합원 반발
 - 무자격 조합원 모집 행위로 인한 취소 시 환급 지연
 - 탈퇴 및 환급사항을 조합규약에 명시토록 규정하여 분쟁 발생
-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불신에 따른 조합원간 갈등
 -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교체 등으로 사업기간 지연
 - 배임, 횡령 등으로 고소, 고발행위 증가
 -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주택조합사업 중단
- ➡ 조합운영 정보 공개 및 조합운영에 조합원 참여방안 마련
- 불투명한 자금운영 등 회계부정
 - 토지매입 대행, 분양 홍보 등 추진과정 중 대행수수료 부정 사례
 - 업무대행사의 수수료에 대한 법적 기준 미비, 자료공개 의무 없어, 사업기간에 따른 수수료 부담 증가
 - ※ 조합원 1인당 15백만 원 정도 부담, 사업기간에 따른 부담금 증가 등 잦은 분쟁 발생
 - 시공사 선정 시 시공단가 변동 조항에 따라 추가분담금 발생
 -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주택조합·시공사)간의 갈등으로
 - 불투명한 자금 운영으로 조합·조합장·조합원·대행사 간 분쟁 발생
- ➡ 자금운영 정보 공개, 업무대행사·시공사의 법적 기준 마련
- 법 위반자에 대한 약한 처벌
 -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비교 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약하여 사업추진자의 법 준수의식 저조
 - 관리감독기관은 지역주택조합을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관리감독 소홀
 - 제도 이해부족 및 정보 미공유로 인한 일반조합원의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 미비
- ➡ 사업추진 중 적극적인 관리감독 강화, 위반자 법적조치 이행,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4 제도개선 권고

1. 울산광역시(건축주택과장)

■ 지역주택조합 관련 홈페이지 운영

- 권고사유
 -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재산권 보호
- 주요내용
 - 지역주택조합 제도, 조합원 자격, 추진절차 안내
 - 추진단계별(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준공) 주요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안내
 - 지역주택조합제도 관련 법령개정사항 안내
 -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세부추진사항 안내
 - 지역주택조합제도 Q&A 제공(법제처 유권해석, 국토부 질의회신 등)
 - ※ 예)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서울 「동작구청 홈페이지」 참고
- 행정사항 : 광역시 통합 사이트 또는 구·군 사이트 개설 검토

■ 지역주택조합 회계처리 점검 외부 전문기관 위탁

- 권고사유
 - 전문가에게 회계처리 점검을 위탁하여 내실있는 점검 추진
 - 주택업무 담당자의 과도한 업무부담 방지 및 효율성 제고
- 위탁기관 : 한국감정원, 공인회계사 등 전문기관
- 점검내용
 - 연간 자금 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적정여부 검토
 - 회계감사보고서 적정여부 검토
- 행정사항 : 외부 전문기관 지정 및 검토예산 확보(구·군과 협의)

■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점검

- 권고사유
 -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 시행여부 지도 및 점검 필요
- 점검내용 : 주택조합 운영관련 위법사항 여부 확인
 - 울산광역시 주택조합업무처리요령 준수여부 확인
 - 조합원 자료공개 의무이행 여부 확인
 - 조합원 모집 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등 홍보내용 확인 등
 - 조합원 모집 사전분양, 허위광고(불법현수막 등) 여부 점검
- 행정사항 : 점검계획 수립 후 구·군 합동점검 및 위반사항 행정조치

2. 울산도시공사 사장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 관련근거 : 주택법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 권고사유
 - 공공기관 업무대행에 따른 조합운영 신뢰성 확보
 - 투명한 자금 운영에 따른 조합원 재산피해 사전 예방
 -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도시공사 신사업 발굴로 재정 확충
- 업무대행자 업무범위
 -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업무
 -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 사업계획승인 신청,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업무 지원 등

- 행정사항
 - 울산도시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조직 및 인력 확보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홍보 등 사업시행 준비

부서 조치결과 → 일부수용

- **건축주택과** – 15892(2020. 9. 18.) 추진계획 제출
 - ① 지역주택조합 관련 홈페이지 개설 : 반영(시, 구·군)
 - 시, 전 구·군 홈페이지 개설 운영
 - 분기별 1회 입력 수정(구·군 입력 및 시에 통보)
 - ② 지역주택조합 회계처리 점검 외부 전문기관 위탁 : 자율반영(구·군)
 - 연간 자금 운용계획서 등은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회계감사는 동일 사안에 대해 재차 외부 회계 감사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업무권한이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자율 결정할 사항임.
 - ③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 자율반영(구·군)
 -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점검관련 등은 구·군의 민원사안별, 점검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군에서 자율 결정함이 타당함
 - ④ 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 전담팀 구성 및 인력확보 : 전담팀 및 인력확충 필요(시, 구·군)
 - 향후, 지역주택조합 관련 전담팀 또는 인력확충 시 주택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 **도시공사 미래전략팀** – 1455(2020. 9. 8.) 검토의견 제출
 -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은 도시공사 사업추진 방향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사업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불가’ 유권해석에 따라 추진 곤란. 다만, 조합설립 준비 단계에서 사업 계획의 검토, 사업타당성 검토 등 일반적인 컨설팅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함

3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제도개선

- 의안번호/의결일자 : 제2020-576호 / 2020. 9. 25.
- 관계기관 : 울산광역시(자원순환과)
- 결정결과 : 권고

1 추진배경

- (재활용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과 택배 등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배출량이 늘어난 반면, 수출저하 및 국제유가 급락으로 재활용품 단가가 하락하면서 재활용업체들이 수익 저하로 수거 거부
 - ‘수거~선별~재활용’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간선별업체 및 공공선별장의 재활용품 매각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재활용품이 적체됨으로 인해 악취 등 환경민원 유발
- (음식물류폐기물) 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어 강력 대응 불가피
 - 행정처분 누적으로 인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민간 처리업체의 시설운영 중단 등에 따른 대응책 마련 필요

2 일반현황

- 폐기물 분류(폐기물관리법 제2조)
 - 폐기물은 “사람의 소비활동이나 생산과정에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쓰레기·폐유·동물의 사체 등을 말하며, 발생 원인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
 - 생활폐기물은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중 일반가정쓰레기(음식물쓰레기 포함), 시장쓰레기 등을 통칭
 - 사업장폐기물은 공장 등 폐기물, 5톤 이상 건설폐기물 등을 말하며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금번 제도개선 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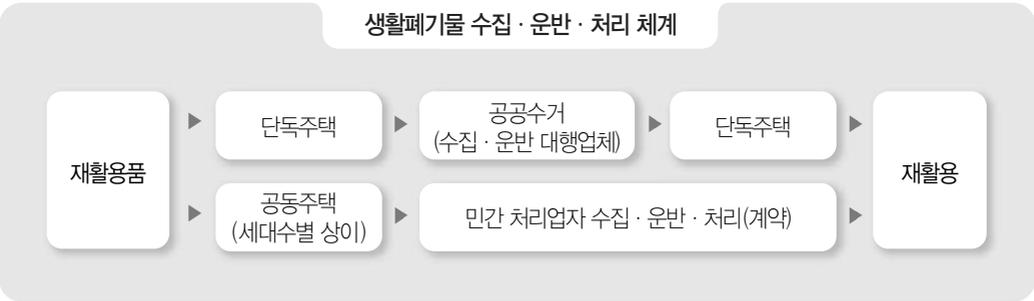
■ 배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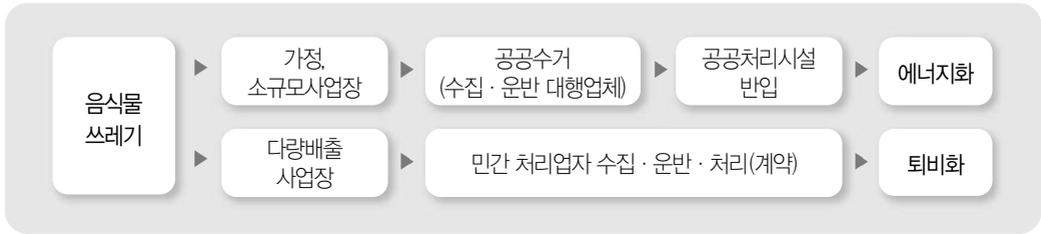
- (재활용품) 각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장소에 무료로 배출
 - 현 배출체계: 비닐류 1회/주, 기타 재활용품 2회/주 배출수거
 - 일정세대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민간 수거업체와 자율계약 후 배출
 - ※ 중구·동구·울주군: 150세대 이상, 남구·북구: 100세대 이상
- (음식물)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및 납부필증 구입 후 배출
 - 다량배출업소를 제외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음식점
 -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업소는 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배출

※ 울산시 전 구·군의 경우 조례로 3,000㎡ 이상(또는 초과)의 일반음식점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규정(완화적용)하고 있어, 타 특·광역시(기준 200~600㎡ 이상)에 비해 일반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공공 반입률이 높음.

■ 수집·운반과정

-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무는 지자체가 직접 직영하는 체계와, 민간업체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체계로 구분
 - ※ 동구, 북구 일부지역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직영)을 제외한 각 구·군은 민간업체 대행
- 민간대행은 계약을 통해 업체가 일정지역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자체가 별도로 허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 ※ 지자체별로 계약방식, 비용정산, 처리지역 분배 등을 각기 달리 적용하고, 허가권한도 시·도지사에서 기초지자체로 위임
- 단독주택지역은 문전 수거, 공동주택은 컨테이너 수거방식을 채택





■ 처리과정

- (재활용품) 중·남·동·북구는 민간위탁, 울주군은 자체 선별장 운영

[재활용 선별장 현황]

구·군	위탁업체	소재지	처리용량(톤/일)	운영방법
중 구	대영기업	남구 여천로 174	180	민간위탁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	울주군 온산읍 화산로 113-11	9	직 영

※ 선별작업을 거친 재활용가능 자원은 민간(재활용사업자 등)에 매각

- (음식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에서 수거 후 공공처리시설 반입
 - 다량배출업소는 민간 처리업체와 별도 계약체결 후 위탁 처리
 -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가축사료로 사용되던 다량배출업소의 음식물류폐기물을 공공처리로 일부 전환(공공반입량 증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및 민간처리시설 현황]

구·군	시설명	처리규모	운영주체	비고
공공 시설	용연SBK 음식물자원화시설	180톤/일	(주)SBK	2011. 3. 7. 가동 ※ 바이오가스 생산·판매
	남구시설		(주)SBK 통합운영	2002. 3. 23. 준공·가동
	온산바이오 에너지센터	음식물 150톤/일, 가축분뇨 50톤/일	한라산업개발 외 1개사	2014. 1. 28. 준공 ※ 바이오가스, 스팀 생산·판매
민간 시설	(주)두전	60톤/일	-	2006. 9. 1. 준공·가동 ※ 퇴비화시설, 울주군 소재
	대건자원화(주)	43톤/일	-	2009. 10. 9. 가동 ※ 퇴비화시설, 울주군 소재

※ 처리비 : 공공시설 79,894원/톤, 민간시설 180,000~200,000원(수집·운반비 포함)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단독주택 재활용품 통합수거

-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품목별 구분하여 배출하더라도, 수거과정에서 폐비닐류를 제외한 기타 재활용품(병, 캔, 플라스틱 등)은 통합수거

- 자원재활용 효율 저하
- 압착차량 통합수거 과정에서 병류 파손으로 기타 재활용품 훼손
- 선별장에서 선별작업 시 유리파편에 의한 작업자 안전 침해 우려

🔍 선별인부 안전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단독주택 병류 분리배출

■ 공동주택 재활용품 민간수거업체의 수거 거부 우려

- 각 지자체별 일정세대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재활용품 민간수거업체 간 계약을 통해 처리
- 통상 계약기간 동안 계약 시의 재활용품 매각(수거) 대금을 재활용품 시장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민간수거업체에서 공동주택에 지급
- 재활용품 가격 하락시 민간수거업체에서 수거거부, 무상수거 또는 공동주택에 수거비를 요구하는 사례 발생

🔍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계약 시 재활용품 시장가격 지속반영 유도, 공공수거·처리를 위한 광역 선별시설 확충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단가 조정현황]

구·군	공공수거 공동주택 수	민간수거 공동주택 수거대금 조정 현황			
		민간수거 공동주택 수	조정 전 평균단가 (원/세대)	조정 후 평균단가 (원/세대)	평균 인하율 (%)
중 구	1,115	110	370	240	35.1
남 구	938	165	430	230	46.5
동 구	745	86	260	162	37.7
북 구	239	112	440	196	55.5
울주군	565	101	410	183	55.4
평 균	3,602	1,574	382	202	47.1

※ 현재 민간수거 공동주택 574개소에 대해 수거단가 조정(인하) 100% 완료

■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 가동중단 시 대응 방안 부재

- 가민간처리시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퇴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으로 주민 피해가 수인한도에 도달
 - 민간처리업체의 불법 행위 단속 강화에 따른 행정처분 누적으로 영업정지, 허가취소 우려
 - 민간처리시설의 가동중단 시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 우려 (적기 수거 곤란)
- 🔍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 가동중단’ 위기대응 방안 수립,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유도 강화

[민간처리시설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현황]

(2020. 7. 31. 기준)

수탁업소	구 분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관외
두 전 (주)	반입량 (톤/일평균)	27.75	2.09	9.26	3.67	6.56	6.17	-
	위탁 업소수 (개소)	285	28	105	12	12	108	-
대 건 자원화(주)	반입량 (톤/일평균)	15.3	1.07	6.97	2.13	2.43	1.67	1.03
	위탁 업소수 (개소)	198	25	61	32	48	27	5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과다

- 2019년 기준 음식물류폐기물 일일 발생량은 공동주택이 54.5%로 최다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RFID, 무인인식) 설치률 25.3%
 - 공동부담이 아닌 배출자(세대별) 부담원칙 확립 필요
-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RFID) 등 설치사업 지속 추진, 낭비적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홍보 강화

4 제도개선 권고(자원순환과)

■ 광역 공공선별시설 확충(중장기 대책)

- 권고사유
 - 재활용품 단가 하락에 따른 공동주택 재활용품 민간수거업체의 수거 거부에 대응해 공공 체계로 전환 필요
- 주요내용
 - 구·군별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울주군 직영) 운영 방식에서 광역 선별시설을 확충하여 공공운영 방식으로 전환 검토
- 행정사항 : 사업방식 및 검토예산 확보(구·군과 협의)

■ 단독주택 병류 분리배출 추진

- 권고사유 : 병류 파손방지로 선별인부 안전과 재활용률 제고
- 주요내용
 - 페비닐류를 제외한 기타 재활용품 일괄 혼합투입 배출방식에서 병류는 별도 분리배출 방식으로 개선
 - 구·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관계를 고려하여 2021년부터 추진 검토
- 행정사항 : 각 구·군 및 생활폐기물(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 등 협의 및 주민 사전홍보

■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 가동중단' 위기대응 방안 수립

- 권고사유
 - 민간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불편 최소화
- 적용범위
 -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 주요내용
 - 위기 상황(가동중단 예고 시, 가동중단 발생 시 등)의 구분
 - 위기 상황에 따른 시·구·군별 대응방안 마련
 - 위기 상황 우려 시 위탁처리 가능한 민간처리시설 현황 전달 체계 마련
 - 위기 상황 시 공공처리시설 반입 허용 여부
- 행정사항: 구·군 협의, 위기대응 방안 수립 후 구·군 전파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 지속 추진
- 권고사유: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
- 주요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RFID) 등 설치사업 지속 추진
 - 신축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 RFID 설치 유도
 - 낭비적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홍보계획 수립
 -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유도 강화
- 행정사항
 - RFID 등 확대 설치를 위한 소요예산 확보(구·군 담당부서 협의)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홍보 계획 수립

부서 조치결과 → 수용

- **자원순환과** - 10974(2020. 10. 27. 제도개선 추진계획 제출)
 - 광역 공공선별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2022년)
 - 단독주택 병류 분리배출 추진: 2021. 3.부터 시행홍보
 -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 가동중단' 위기대응 방안 수립: 2020. 12.
※ 자원순환과 - 12832(2020. 12. 14.)호 의거 대응방안 제출 완료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 지속 추진: 2021. 3. 결과 제출 예정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2020 시민신문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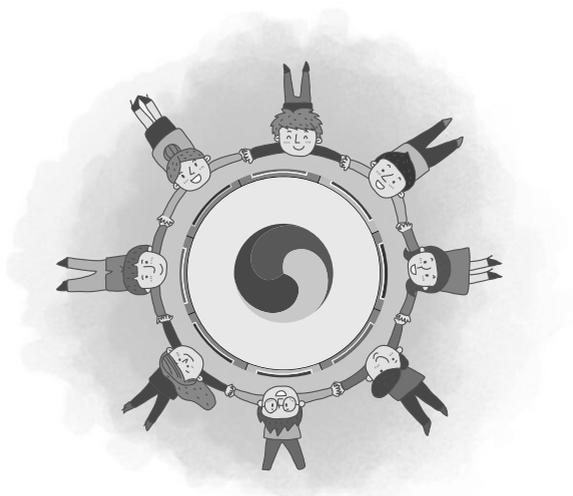
운영보고서

V

참고

1. 주요 언론 보도사례
2. 시민이 바라는 시민신문고 “시민신문고에 바란다”
3.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1. 주요 언론 보도사례

“울산매일

도로 피해 보상 간소화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권고

시민신문고위 제77차 회의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역 내 도로의 설치와 관리 하자(흠)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도로) 배상공제’에 가입하도록 시청과 구·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는 지난 17일 ‘제77차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최근 3년간 울산시의 도로에 의한 피해 배상은 2016년 13건 1,000만원, 2017년 15건 5,900만원, 2018년 32건 2억 5,2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로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례로 도로의 부실관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우선 울산지구배상심의회(울산지방검찰청에 두고 있음)에 배상신청을 하고, 배상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하면 그때에 비로소 도로관리청(시, 구·군)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상심의회가 분기별로 개최돼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배상심의회 심의·결정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도로관리청에 심의·결정된 배상금을 다시 신청해야만 비로소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국가배상청구 절차

2020년 2월 20일 목요일 009면 사회

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8주에서 12주나 소요되는 등 시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이에 신문고위원회는 시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울산시와 타 광역시 배상제도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세종시를 제외한 서울특별시·광역시 모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해 국가배상제도에 우선해 피해를 구제하고 있고, 울산의 경우 남구청만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와 다른 구군에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배상공제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배상공제제도를 운영할 경우, 피해자는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만 피해 배상 신청을 하면 되고 배상금을 수령하는 기간도 4주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강태아가자

울산신문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007면 사회

“市 누리집 등 온라인 활용을”

시민신문고위원회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으로 시민들의 고충민원 상담과 접수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울산시 누리집 등 온라인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청을 직접 방문해 상담·신청하는 대신 시 누리집이나 국민신문고,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줄 것을 권장했다.

민원 접수 방법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이나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또는 팩스(052-229-3919), 우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우)44675, 울산시청 시민신문고위원회)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겪은 경우 신문고 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며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온라인 등을 이용해 접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울산시민신문고위, 민원·옴부즈맨 부문 최우수기관 선정



제1회 울산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

2019년 9월 울산시의사당 시민홀에서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 주관으로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송철호 시장이 신문고를 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시민신문고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8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 기념 민원·옴부즈맨 단체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국민 고충 해결과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등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과 단체를 뽑아 상을 준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난해 제7회 국민 권익의 날 민원·옴부즈맨 개인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 올해는 단체 부문 최우수상인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울산시는 시민신문고위원회가 다른 시·도 고충 민원 해결 기구와 차별되는 직무 전문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 관계자는 "올해도 고충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원에 대한 기획조사,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경상일보

2020년 3월 4일 수요일 008면 사회

울산시민신문고위, 민원·옴부즈맨 부문 최우수기관에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8회 국민권익의 날(2월27일) 기념 민원·옴부즈맨 단체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3일 시민신문고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국민고충 해결과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등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과 단체를 뽑아 상을 준다. 시민신문고위는 지난해 제7회 국민 권익의 날 민원·옴부즈맨 개인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 올해는 단체 부문 최우수상인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다른 시·도 고충 민원 해결 기구와 차별되는 직무 전문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신문고위 관계자는 “올해도 고충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원에 대한 기획조사,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한기자

경상일보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012면 사람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가 지난 13일 시청 위원회 사무실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에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특특 지방자치] 전국 최고 음부즈맨 기구 인정받은 '울산신문고위'



장영은 기자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출신 민선 7기 송철호 시장 '1호 행정'
시민 행정 참여·권익보호 넘어 민생문제 해결사로 자리매김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출범

2018년 9월 10일 울산시의사당에서 시민 고충을 구제하고 권익을 보호할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조선 시대 신문고가 시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듯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조선 태종 때부터 대궐 문루(門樓)에 달아, 백성이 원통한 일을 하소연할 때 치게 하던 신문고(申聞鼓).

600년 전 생긴 이 북이 울산시민의 권익보호자 역할을 하고자 시간을 거슬러 울산 민의의 전당인 시의사당 시민홀 앞에 다시 등장했다.

이 북은 국민고충처리위원장(현 국민권익위원장) 출신 민선 7기 송철호 시장이 자신의 국민고충위 행정 경험을 울산의 지방정부에서도 실현해보겠다며 발족한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의 상징이다.

울산시정 역사에서 처음 선보인 신문고위는 출범 2년째 시민이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주며 권익 보호와 더불어 행정감시 기능을 하는 동시에 하는 울산시민 민원해결사로 안착하고 있다.



[발언대] 차태환 울산신문고위원장 "경제위기, 민생 문제도 다를 것"

"전국 최우수 음부즈맨 기구 인정받아...다른 지자체 컨설팅 역할도 수행" 2020/03/16 07:03



인터뷰하는 차태환 울산신문고위원장
[촬영 장영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시민 고충을 좀 더 가까이서, 좀 더 쉽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울산에서 처음 선보인 행정기구인 신문고위원회.

이 신문고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차태환 위원장은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음부즈맨 기구"라고 자랑했다.

차 위원장은 1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울산에서 신문고위가 출범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전과 달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현재 전국지방음부즈맨협의회 회장직까지 수행하며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혼신을 다하고 있다.

그는 "모든 행정은 법에 근거해 행해지고 있지만, 때로는 법을 위반하거나 주어진 재량을 그려쳐서 처분(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신문고위가 '시정 권고'로 이를 구제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법에 위반된 사실이 없거나 재량을 그르친 경우가 없더라도 '권고'라는 방법으로 시민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는 울산 신문고위는 권익보호자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기관은 울산 신문고위의 시정 권고 취지 등을 살려 행정을 펴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앞으로 신문고위 운영 방향과 관련해 "경제 불황이 계속되는 만큼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도시 울산과 지역민을 위한 민생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2020년 4월 2일 목요일 015면 기획특집

전문가들 뚝뚝 뚫힌 '현대판 신문고'... 울산 고충민원 해결사로

출범 2년 '시민신문고위원회' 성과

울산시민 고충민원 해결사인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출범 2년째를 맞아 시민 권익보호와 행정감시, 관행 개선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민선 7기 출범 후 울산시장이 국민고충처리위원장으로 활동할 때의 경험을 울산시에서 살린다고 취임 1호 결제로 도입했다. 조선 태종 때 백성의 억울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대갈 박 등목에 설치했던 '신문고'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합동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까지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지방 울부즈면 중 유일하게 최우수 울부즈면 표창을 받기도 했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2018년 9월 10일 출범한 시민신문고위는 시장 직속 위원회 체계 기구로 독립된 자위에서 업무처리를 한다. 차태연(63)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전문가 위원과 2개 팀 8명의 직원을 구성했다. 신문고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총 625건의 고충민원 가운데 396건을 조사했다. 이는 37.9%를 처리했고, 17건은 조사하고 있다.

● '밤이 끝내지 않아야' 민선 7기 1호 결재
 승 시장은 2018년 7월 29일 민선 7기 시장 취임식을 가진 직후 결재 1호로 민선 8호 문책을 지시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10일 시장 직속 협의체 제정 및 시민신문고위가 출범했다. 신문고는 '시민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 줘야' 합법과 제도도 오히려 공짜가 되는 일은 없어야 했다'는 승 시장의 철학이 반영됐다. 신문고위에서 자위장관을 비롯한 임원급 전 직



2018년 9월 10일 울산시의사실에서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출범식이 열렸다. 울산 울주군에서는 통상연세가 신문고를 치고 있다. 울산시 제공

구 건설도시국장, 감순호 전 글로벌출판사 대표, 오영은 전 울산시민연대 사무국장, 권운수 변호사 등 5명의 전문가 위원과 실무자를 들은 8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시민 고충 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시민이 항구적인 행정 감시도 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청렴계약 감시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 장애인 불법시요금 단절의 등실적 '최우수'
 신문고위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총 625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396건(처리율 17건 포함)을 처리했다. 나머지 229건은 다른 기관 관련 업무로 확인돼 아님·인내하거나 취하하기도 했다. 시민신문고위에 해결한 고충 민원 가운데 장애

송철호 울산시장 취임 1호 결재로 도입
 출범 후 접수 민원 625건 중 37.9%인 처리
 행정서 즉시 해결 '찾아가는 신문고' 호응
 국민권익위 주관 최우수 울부즈면 표창

인 불법시요금 단절화가 가장 눈길을 끈다. 장애인 불법시요금 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순회 지역이 읍주군이나, 중남·동·북구 지역이 나에 따라 요금이 달랐다. 이는 울산시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읍주군 지역을 운영하는 장애인 클럽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운영 요금을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문고위는 구군 간 요금을 단일화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지역차등제를 폐지했다. 또 산악도로로 개발되지 않은 재 장기간방지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던 읍주군 반송리 일대 산악단지 예정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것도 고충 민원처리와 우수 사례로 꼽힌다.

신문고는 행정을 찾아가 민원을 상담·해결하는 '찾아가는 신문고'도 분기별로 운영해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 3월 북구청은 시초로 지금까지 총 5차례 찾아가는 신문고도 열렸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해결해 주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금융, 노동, 환경, 법률 등의 전문가가 '찾아가는 신문고'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고위 관계자

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동행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풀이 주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울산 신문고위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함께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울부즈면 운영 활성화를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열린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행사에서 '민원-울부즈면' 단체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코로나19 및 경기 불황에 힘겨워하는 시민의 목소리와 고충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민 권익보호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시민 고충 민원을 토대로 이뤄지는 신문고위원회의 '시장 권고'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시민 권익 보호 효과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고충 민원을 넘어 경기 불황으로 빚어진 각종 민생 애로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 도로의 하자 및 부실 관리를 손해를 입은 시민이 입고 배쓰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에도 '도로 보행' 가담을 권고한 게 좋은 사례다. 그동안 도로 하자로 손해를 입은 시민은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상당가액)을 청구했지만, 받기 쉬운 절차와 긴 시간 소모로 어려움이 컸다. 이 문제를 접한 신문고위는 도로 하에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라고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하면서 운영하는 '영조도로' 배상금에 대해 시·군·구별로 배상금에 대해 시·군·구에도 권고했다. 신문고위는 최근 전 시군을 순회해 배반된 코로나19 및 경기 불황에서 비롯된 소상공인과 일용직 근로자의 경영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계획이다. 울산 박영홍 기자 jph@sool.co.kr

울산제일일보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013면 오피니언

주택조합 문제 겨냥한 시민신문고위의 권고

시민신문고위원회가 28일 울산시와 울산 도시공사에 쓴 소리를 던졌다. 집값의 온상이 되고 있는 주택조합들이 운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관리감독과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충고였다. 이는 조합과 업무대행사, 조합원 사이에서 자주 분쟁이 일어나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재산피해까지 끼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달라는 조언이기도 하다. 늦은 감은 있으나 당연한 지적이라고 본다.

시민신문고위가 조합 운영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그런 민원이 적잖이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운영주체인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업무대행사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은 대부분 금전 문제에 기인한다. 사업의 특성상 금전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말썽은 언제든 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시민신문고위는 이 점에 주목하고 다수 조합원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단속을 제대로 하라고 경고를 날린 셈이다.

시민신문고위의 말대로, 주택조합 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토지소유권도 확보하지 않은 채 거짓·과대광고로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일이다. 이럴 때 토지매입비가 오르면 추가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 조합의 운영 정보를 비공개로 덮어 두거나, 조합원 탈퇴와 환급에 소극적이거나, 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하는 것도 문제다.

시민신문고위는 결론적으로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더 야무지게 하라고 시에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조합 추진 절차와 유의사항, 사업장 세부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회계감사는 외부 전문가관에 맡기는 한편 운영 내실화와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을 넉넉하게 충원하라고 충고한 것이다.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합 업무대행을 제대로 하라고 권고했다. 두 기관이 귀담아들을 일이다.

울산제일일보

2020년 9월 7일 월요일 002면 종합

신문고위, 코로나 대응 일환 거리두기 2단계 해지까지 시민 고충민원 전화접수 가능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최소화를 위해 시민 고충 민원을 전화로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그동안 시민이 직접 방문하거나 시·군·구 또는 국민신문고, 우편, 팩스 등을 활용해 고충 민원을 받아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으로 대면 상담이나 접수에 어려움이 커지고,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전화(☎ 052-229-2908)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전화 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상길 기자

『울산매일』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003면 종합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 소통·협치기구로 자리매김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출범 후 지난 2년 동안 시민의 고통해결과 권익향상을 위한 소통과 협치 기구로 작살히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신문고위(위원장 차태환)는 10일 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제2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송철호 시장과 시민단체 대표, 구·군 관계자 등 최소한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충민원 처리 유공자 포상, 시민신문고의 2년차 활동보고,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울산시 교통기획과 운지용 주무관, 북구 농수산과 김상배 주무관, 울주군 환경자원과 임재철 주무관 등이 시민신문고의 날 우수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우수부서는 중구 건축과와 남구 건축과가, 등구 건설과가 선정됐다. 신문고위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특히 울산시정에 있어 처음으로 독립된 부서가 고충민원을 전문적·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읍부조반 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신고민원에 대한 조



10일 의사당 시민홀에서 열린 '제2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에서 송철호 시장이 고충민원 처리 유공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성민 기자 smwoo@usm.co.kr

'제2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유공자 포상·우수사례 발표 2018년 9월 출범후 고충민원 691건 접수...직접조사 426건

사 및 처리 △정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이다. 신문고위는 지난 2018년 9월 10일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691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직접조사 426건, 이첩 156건, 단순안내 49건, 취하 등 43건 등으로 처리했다.

주요 고충민원처리 사례를 보면, 하

천구역 내 편입토지 보상관련 등 시정 권고 22건, 차량탈소등특신청 수리 거부에 대한 권고 등 24건, 상수도 인입 요청에 대한 조정 등 36건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올해는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35개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울산시민단체가 청구한 '세창남 동창고 리모델링 사업과정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로 영초물로 인한 피해배상제도 개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2건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차태환 위원장은 "울산시 최초로 도입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지방읍부조반 기구로서 위원의 독립성·전문성·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고통해결과 권익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jh74@usm.co.kr

울산신문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008면 사회

시민신문고위, '재활용품·음식물 처리 개선' 권고

공공수거 광역선별시설 확충 요청 민간처리시설 가동 중단시 대책도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자원 재활용 효율을 높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체계 제도의 '개선'을 울산시에 권고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난날 27일 '제110차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울산시의 현행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의 이번 제도 개선 권고 결정은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로 배달음식과 택배 등이 늘어나서 일회용품 배출량이 증가한 반면, 수출 감소와 국제유가 급락으로 재활용품 단가가 떨어지면서 재활용 업체들이

수익 저하로 수거를 거부하는 등 자원 재활용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재활용품이 적체되고 결국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민간 처리업체와 별도의 계약체결 후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민간 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영업금지 등 시설 운영이 중단될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거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중장기 대책으로 재활용품 공공수거·처리를 위한 광역선별시설 확충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 병류 분리배출 추진과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 가동 중단' 위기대응 방안 수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 지속 추진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대란 위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이 필요하며 구·군에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정 구내시당의 음식물쓰레기부터 시가 앞장서 줄여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자체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중·남·동·북구는 민간시설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국가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2개소, 울주군 삼동면에 민간시설 2개소가 운영 중이다.

최성환기자 cst8659@usarpress.net

“울산매일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007면 사회

시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북구민 가려운 곳 긁어줬다

법률상담·지역 민원 등 13건 접수
9건 현장 처리·4건은 조사키로

울산시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시민신문고가 5일 북구에서 열려 법률상담부터 각종 민원을 가진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다. 시민신문고 측은 시민들의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더 힘쓰겠다는 각오다.

이날 오전 10시 북구청 2층 대강당에서는 ‘2020년 제2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가 열렸다.

울산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시민신문고는 구군을 돌아가며 주민 불편과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하고자 운영하는 현장 중심 민원 서비스다. 워킹·부담한 행정차분, 불합리한 제도 등 고충민원과 생활 법률, 노무, 금융, 세무, 소상공인 창업 등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5일 북구청 대강당에서 시민의 생활 현장 속을 직접 찾아가는 ‘2020년 제2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를 열고 고충민원 및 법률·세무·노무·금융·창업지원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우성만 기자 smw00@usm.co.kr

다. 울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날 1호 민원인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듯 북구 양정동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얼마인

30대 전업주부 A씨다.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는 최근 집주인에게 집을 팔겠다는 연락을 받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지와 복잡한 부동산 세법에 대해 도움

을 받고 싶어 이날 신문고를 찾았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A씨는 “아파트 방 송을 듣고 오게 됐는데, 어려운 세법과 그간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기분이 다”면서 “오늘 설명을 바탕으로 남편과 잘 상의해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민원도 접수됐다.

북구 매곡동에 거주하는 60대 B씨는 울산시 도시철도망 구축사업(트램) 2노선 구간(송정역~아음사거리)을 북구 중산동 이화마을까지 연결해 달라고 요구 하는 민원과 북구 쇠부리체육관 앞 도로가 복잡해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커 직선화 및 도로 확장 민원을 접수했다. B씨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트램 노선이 설치돼야 지역도 발전되고,

사고가 나지 않게 도로가 잘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민원들은 담당 부서에 전달될 예정이다.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보니 울산시 업무 밖의 민원을 가져오는 시민도 있었다. 한 중년의 남성은 자신의 동네 주변 불명확성들을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원칙적으로는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업무다.

신문고 관계자는 “종종 이러한 민원들도 있는데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지만 오죽 답답하면 여기까지 찾아왔을까 싶어 접수를 받는다”면서 “순수하게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시민신문고에서 나서 조정을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나 관계부처에 민원을 이첩해 처리가 될 수도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찾아가는 시민신문고는 총 13건의 민원을 접수해 법률이나 세무상담 등 9건은 현장 처리했고, 아파트 하자과 7번국도 조기 완공 등 4건의 민원은 접수해 조사하기로 했다.

제3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는 다음달 남구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차태환 시민신문고 위원장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길을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금융감독원 협력관,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재현 기자 w08147@usm.co.kr

2. 시민이 바라는 시민신문고 “시민신문고에 바란다”



적극 행정으로 열린
행정문화 조성자 역할을 기대 합니다.

박장동(울산YMCA 사무총장)

시민 가까이에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 시민신문고 2년 활동을 격려합니다.

그동안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해결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시민신문고의 적극 활동은 울산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민원 해결에 대해서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을 펼치면 열린 행정문화로서의 큰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신문고 화이팅!



낡은 관행들을 혁파하는 단단한 각오로
고충민원 처리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태근(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울산시민들이 요구하는 고충처리와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시민감사 청구 등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민신문고가 발족한지 2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2주년을 돌아보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부족한 것들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감사 청구와 관련해서는 울산시의 낡은 관행들, 공무원들의 낡은 관행들을 혁파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시민신문고위원회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시민신문고 화이팅!



초심, 역지사지 잊지말아요~

주세민(30대 직장인 / 울산 남구)

시민신문고가 울산에 생긴 지 2년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처음 생겼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선시대 백성들이 억울함을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 신문고를 울렸잖아요.
시민신문고가 현대판 신문고로 늘 시민들 곁에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구요.
시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토로했을 때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준
다면 시민신문고를 더 신뢰하고 앞으로도 계속 찾을 거 같아요.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민원을 넣은 개인뿐만 아니라 여기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나
그 가족, 친구 등등 모두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역지사지로 민원을 응대해준다면 아마 울산에서 시민들한테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울산시민신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울타리 같은 내 편 ~

황혜민(30대 직장인 / 울산 북구)

시민신문고 설립 2주년을 축하합니다~

처음에 시민신문고가 생겼다는 뉴스를 보고 “내 편이 하나 더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 방법도 같이 고민해주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내 편이요~

다행인지는 몰라도 아직 한 번도 민원 신청한 적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찾아갔을 때도 역시 그때 생각처럼

“든든한 내 편 시민신문고” 였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좋지 않아서 시민들의 걱정거리가 늘어가는 요즘인데 시민신문고가 있어서 억울한 것이나 답답한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소가 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는 모든 분들~ 시민들, 시민신문고 관계자들 모두 힘내세요~(화이팅!)

3.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07-26 조례 제 1874호
(일부개정) 2020-10-29 조례 제 2244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 감사 및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시 및 구·군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청렴계약”이란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금품·향응 등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정을 감사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하며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시민신문고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 한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위원장은 시장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따른다.
-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⑥ 시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의 궐위 시에는 후임자를 임용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제4조(직무권한 및 관할) ① 위원회의 직무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시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2.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위원회가 발의한 사안의 조사 및 감사

4. 시장 또는 시의회에서 발의한 시안의 조사 및 감사
 5. 청렴계약에 관한 감사·평가 및 청렴계약 부조리 사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7.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8. 행정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및 권고
 9. 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공표
 10. 위원회가 처리한 조사·감사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11.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12.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1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4.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속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된 사항
- ②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본청 및 소속기관
 2. 구·군(시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지방보조사업자

제5조(결격사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각 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고,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채용 계약 해지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③ 위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채용계약 해지 또는 해촉한다.

제7조(겸직금지) ① 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직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결위된 경우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사 및 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렴계약에 관한 감사·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회의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직무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시민의 감사청구

제12조(시민의 감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에 감사를 청구(이하 “시민의 감사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2. 시민단체의 대표자(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감사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1. 시의회(의회사무국 직원의 시 보조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청구인은 별지 제호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이름·생년월일 및 연락처)
 2.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와 감사청구의 내용 및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감사청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명칭 및 직원의 이름
 4.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5.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제13조(시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① 위원회는 시민의 감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감사의 실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 종료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에게 기간의 연장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직권에 의한 감사) 위원회는 시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청렴계약에 대한 감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의뢰 또는 요청에 의한 감사) ① 시장 또는 시의회는 공정성·객관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항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을 감사 또는 조사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 또는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① 민원인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항에 따라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가 고충민원의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고충민원의 조사·처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 및 시 소속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시 및 시 소속기관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시 및 시 소속기관의 장은 제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 관계기관·관계부서의 장 및 감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청렴계약 감시·평가

제20조(청렴계약 감시·평가대상) 위원회가 감시·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서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감시·평가한다.

1.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2. 2억5천만원 이상의 용역
3. 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4. 그 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21조(자료제출 및 요구) ① 제20조의 감시·평가 대상에 대하여 실·본부·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 ② 제20조의 감시·평가대상인 공사, 용역,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위원회에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감시·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협조와 지원

제22조(의견제출의 기회부여)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공무원은 위원회에 감사청구사항 또는 고충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조치계획 또는 결과의 회보 등) 관계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③ 자문위원은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 생활환경, 도시교통(도시계획), 교육문화 6개 분야의 전문가로 시민단체, 학계,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따른다.
-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 ⑥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 ⑧ 자문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전문가의 감사 등 참여) ① 위원회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 이외의 분야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공표) 위원회는 민원사항 조사결과와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보호 하여야 한다.

제27조(사무기구 설치·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서 등에는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에 따라 별도의 공인을 새겨 사용한다.

제28조(인력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위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위원회 규정)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위원회의 감사업무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운영실적의 보고) 위원회는 매년 2월, 9월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규 문서 및 그 밖의 공부에 시장, 구청장·군수의 명의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구청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구역으로 한정함)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뒷면〉

작성요령

1. 감사청구인

〈개인〉 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① 청구인 : 외 명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 대표자이름을 씁니다.

※ 감사청구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50명 이상

※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③ 주소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를 씁니다.

④ 연락처(전화) : 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를 씁니다.

〈단체〉 개인(50명 이상 연서)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⑤ 단체이름 :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공식명칭을 씁니다.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

-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⑩ 단체설립 목적 : 정관에 있는 설립목적을 요약하여 씁니다.

⑪~⑫ 주무관청 이름과 허가번호 등을 씁니다.

2. 청구 동기 : 감사를 청구하게 된 동기, 취지, 이유 또는 감사청구를 하게 된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요약하여 씁니다.

3. 감사청구 사항 : 감사청구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기재하되 청구사항이 2건 이상일 경우 각기 구분하여 씁니다.

※ 난이 모자랄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4. 관련 증빙자료 :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제목을 쓰고 첨부합니다.

5. 기타 : 감사청구와 관련된 행정기관 명칭 또는 직원의 이름을 쓰거나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등을 씁니다.

※ 시민(50명 이상)이 연서한 서류 : 개인이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날인) 등이 있는 원본을 첨부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접수번호	제 호	접수년월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민원제목				
민원내용 -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원인이 된 사실내용 - 고충민원 신청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부서명 및 직원명				
기타참고사항 • 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년 월 일 </div>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고충민원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서면, 인터넷 접수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의 당사자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고충민원 신청일로부터 처리 완료일 및 문서 보존연한까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고충민원 신청자의 당사자 적정여부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 (인)

2020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보고서

발행일 2021년 2월

발행처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http://www.ulsan.go.kr>

편집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052. 229. 3960~5

디자인·인쇄 디자인전문회사 씨디에스 052. 914. 7800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울산광역시에 있습니다. <비매품>

